
2021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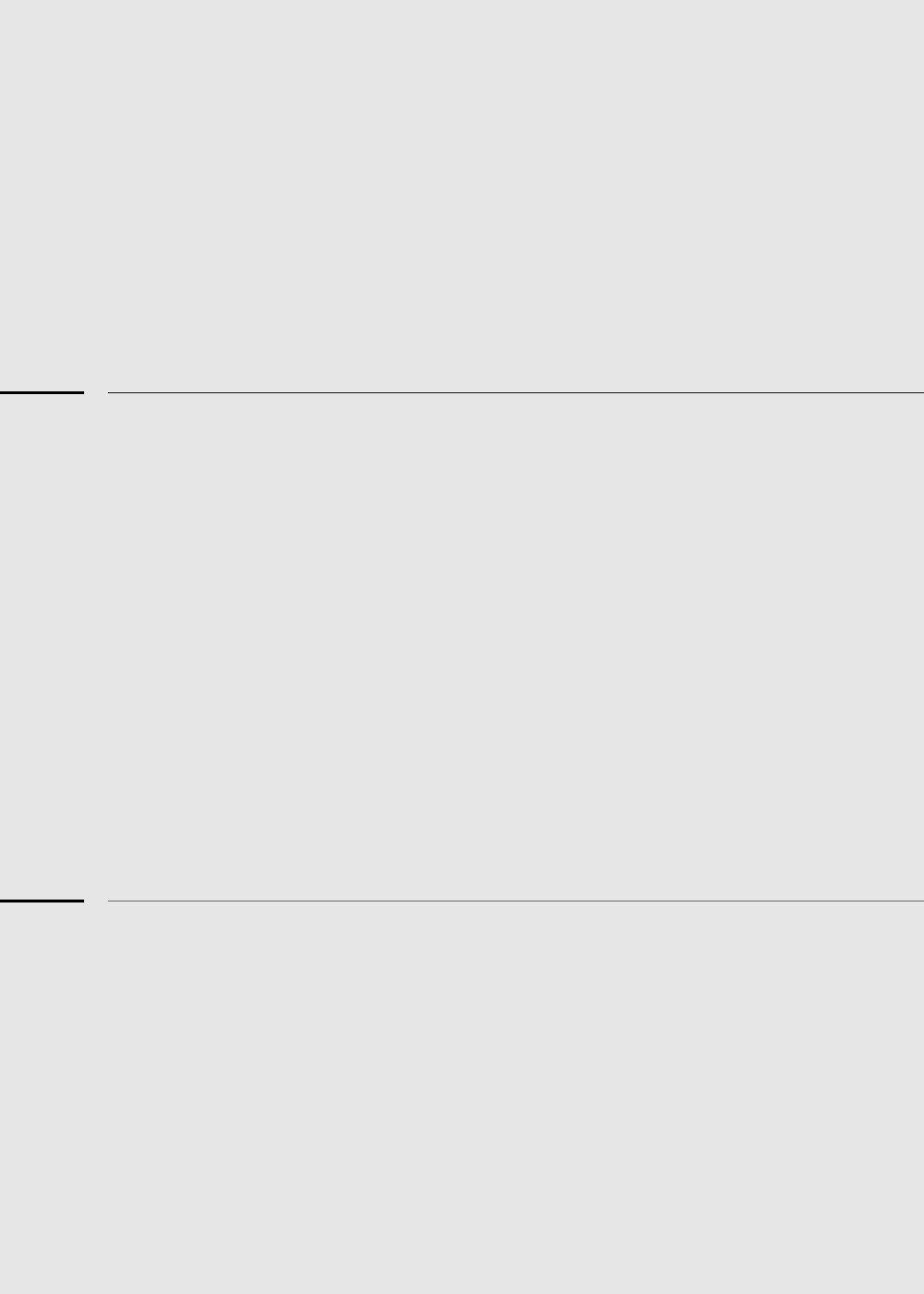
정책제안 발표회 자료

2021. 12. 21.(화)

목 차

• [제안 1팀]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정책	
정책제안 발표자료	2
최종 정책제안서	26
진행경과 대조표	60
• [제안 2팀] 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대상 사회성 및 진로교육 정책	
정책제안 발표자료	64
최종 정책제안서	70
진행경과 대조표	89
• [제안 3팀]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 및 보호자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정책 : MYC(Mind Yourself Connect)	
정책제안 발표자료	92
최종 정책제안서	101
진행경과 대조표	124

• [제안 4팀] 장애인 보호자의 비장애인 자녀 통합 지원 서비스	
정책제안 발표자료	128
최종 정책제안서	143
진행경과 대조표	171
• [제안 5팀]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정책제안 발표자료	176
최종 정책제안서	192
진행경과 대조표	220
• [제안 6팀]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 장애인의 일상적 대중교통 이용 보장 정책	
정책제안 발표자료	222
최종 정책제안서	240
진행경과 대조표	264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정책

제안 1팀

정책제안 발표자료



※ 본 게시물은 한국장애인재단의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에 참여한 제안팀의 저작물로 무단 수정, 복제, 공유 및 배포를 금합니다.

목차

CONTENTS

01



정책제안 배경

1. 정책의 필요성
2. 개념정리
3. 현황
4. 문제점

02



정책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1.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03



정책제안 내용

1. 정책의 대상
2. 적용방안
3. 고려해야 할 사항
4. 재원의 조달방법

04



기대효과

I. 정책제안 배경

I. 정책제안 배경

1. 정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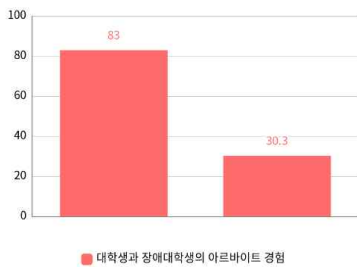


대학생의 6개월 이내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83.0%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이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30.3%

I. 정책제안 배경

1. 정책의 필요성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하나의 문화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경험은 성인으로서 경제적
부분의 자립 기회를 갖을 수 있는 첫 관문
(심인옥, 송건우, 2016)

그러나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음

I. 정책제안 배경

1. 정책의 필요성



UNCRPD와 정상화(normalization)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활 영위

I. 정책제안 배경

2. 개념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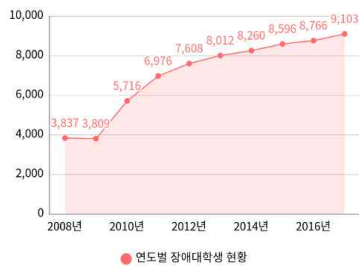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개념 정의

직종, 근무조건, 연령 등 달라 적절한 용어 찾기 어려움

방과 후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

I. 정책제안 배경

3. 장애대학생 및 취업지원체계현황



장애대학생 연도별 현황

장애대학생은 꾸준히 증가
최근 10년간 약 2.4배 증가

I. 정책제안 배경

3. 장애대학생 및 취업지원체계현황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체계의 현황

대부분 장애대학생에 초점이 아닌
장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함
장애대학생은 장애학생의 일부로서 포함

I. 정책제안 배경

4. 연구문제



장애대학생들이 겪는 아르바이트 문제 표적집단면접법

(FGI: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1. 장애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부당한 차별
2. 고객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발언
3. 장애를 이유로 한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

I. 정책제안 배경

4. 연구문제

검색키워드: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검색결과 2건) [유해문서신고하기](#)

- 내배너 | [상세페이지](#) | [연결도움](#)
- 1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근거이론 접근
 박민진 | 중앙대학교 대학원 | 2011 | 국내학사
[원문보기](#) | [국문검색결과](#) | [음성듣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substantial theory to describe the kind of experiences and change processes in a university environment. This research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f a total of 12 junky and seniors with disability area.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 (Glaser & Strauss, 1985). The grounded theory first on the disabled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through change flow and which change processes do they go through? This research explored the change processes along the time flow. The results were presented as the following 135 concepts.
- 2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정보에 대한 실적 연구
 박민진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2011 | 국내학사
[원문보기](#) | [국문검색결과](#) | [음성듣기](#)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은 남한사회에서 적응할 혹은 사회적 변화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험하는 진로 정보의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 진로 정보 접근성에 관한 연구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 대하여는 진로정보의 양방향, 질적 접근과 양방향의 양방향으로 진로정보의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진로정보의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3 무용전문 남자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박민진 | 중앙대학교 대학원 | 2011 | 국내학사
[원문보기](#) | [국문검색결과](#) | [음성듣기](#)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문 남자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진로 및 교육, 문화정책의 현상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의 부재

장애 패러다임
전통적 의료적 패러다임 - 자립생활 패러다임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 사업 없음

I. 정책제안 배경

4. 연구문제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방안이 필요한 이유

1. 장애대학생의 수 증가



2. 장애대학생의 특성
최상위 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을 할 만큼
고기능 비장애 대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
수행가능

3. 대학생의 특성
대학생은 학문적 탐구가
주 역할임
기존의 장기적 고용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정책을
적용할 수 없음

II. 연구방법

II. 연구방법

1. 연구 목적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식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욕구와 실태를 조사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1.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욕구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장애대학생과 전문가와의 인터뷰

III. 연구결과

III. 연구결과

1.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대학생 필수앱
에브리타임

한신대학교
HANSHIN UNIVERSITY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한신대학교
HANSHIN UNIVERSITY

K-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사회복지계
우리의 기쁨, 당신의 기쁨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남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
우리의 기쁨, 당신의 기쁨

탐구 토론 중점 국제 사랑 비전도 리더십 보람

III. 연구결과

1.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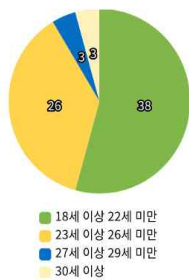
설문 구성 항목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아르바이트 관련 특성
3.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관련된 현황,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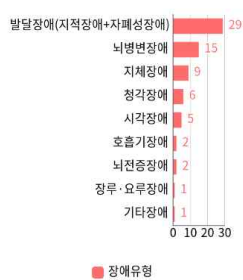
III. 연구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의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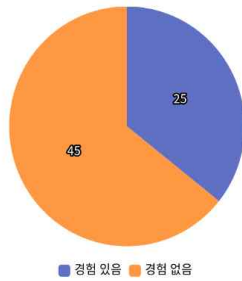
응답자의 최종학력



III. 연구결과

아르바이트 관련 특성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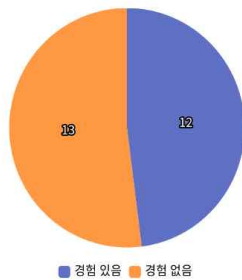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유형



III. 연구결과

아르바이트 관련 특성

아르바이트 중 장애를 이유로 겪은 차별 경험 유무



겪은 차별의 유형



III. 연구결과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관련된 현황, 욕구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할 때
어려움 정도



아르바이트 욕구



확대 방안 실용성



III. 연구결과

2. 장애대학생 인터뷰 결과



III. 연구결과

2. 장애대학생 인터뷰 결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는 장애유형이나
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여건만 갖춰진다면 저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큼니다." - 장애대학생 2

"사무직이 저의 장애유형에서는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했습니다." - 장애대학생 3

III. 연구결과

2. 장애대학생 인터뷰 결과

**장애유형, 장애 정도가 아르바이트
경험에 영향을 미침.**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대
학생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한적 있고....(중략) 아르바이트
지원해도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 장애대학생 2

"사무직이 저의 장애유형에서는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했습니다" - 장애대학생 3

Ⅲ. 연구결과

2. 장애대학생 인터뷰 결과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 대부분이 장애를 이유로 어려움을 겪음

"장애를 이유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까 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할 때 위축된 기억이 있습니다" - 장애대학생 4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제 편의를
제공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아쉬웠습니다"
- 장애대학생 2

Ⅲ. 연구결과

2. 장애대학생 인터뷰 결과

장애 유형이나 정도의 차이로 아르바이트 경험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대해 걱정했으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말함

III. 연구결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자 인터뷰 결과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주 업무는
장애학생의 취업지원과 학습권 보장**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아직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III. 연구결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자 인터뷰 결과

실무자 입장에서 확대방안에 대한 조언

장애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 인식개선, 사업주 입장에서의 이익 등 많은 부분이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방안의 적용방안과 일치

III. 연구결과

인터뷰 최종정리

재활복지 특성화 A대학

인터뷰이는 모두 A대학 재학생

이들이 겪고 있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나 부정적 경험은 타 대학이나 타 지역에서의 장애대학생에 비해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없음을 확인

IV. 정책제안

IV. 정책제안

1. 정책대상

**본 정책의 대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노동자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말한다.

사업주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의지가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주로 한다.

IV. 정책제안

2. 실행방안

**교내 장애대학생 단계별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Arbeit Free(알 · 프)**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참고
장기적 고용이 목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장애대학생의 접근이 유리한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취업지원센터에서 단계적 프로그램 진행

IV. 정책제안

2. 실행방안

Arbeit Free(알·프) 흐름도

단계	내용
1단계	상담 및 아르바이트 계획 수립
	초기상담, 장애대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용, 개인별 아르바이트 계획수립
2단계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장애대학생 전용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노동·인권 교육
3단계	알선 및 유지
	면접 동행, 아르바이트 연계 및 알선, 구직 후 적응지도

IV. 정책제안

2. 실행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기업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2021년 법정 의무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항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가 아닐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약식 진행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IV. 정책제안

2. 실행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대학생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의지가 있는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때도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IV. 정책제안

2. 실행방안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1항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가능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1년 기준
공공 3.4%, 민간 3.1%을 초과로 고용(소수점 이하 올림)한
대상자의 명수만 장려금을 지급

IV. 정책제안

2. 실행방안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상시근로자 100인의 민간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야
장애인 5명을 고용했을 때 의무고용률 초과인 4명을 뺀 1명분의 장려금 지급

현재 기준으로는 소규모 사업체는 장려금을 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사업주에게 이익이 없음)

확대 방안을 통해 장애대학생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려금 지급기준(의무고용률
초과 고용)을 완화해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에도 장려금을 지원

IV. 정책제안

3. 고려사항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속해서 감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부정수급액 환수, 장려금 지급제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음

IV. 정책제안

3. 고려사항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속해서 감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부정수급액 환수, 장려금 지급제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음

IV. 정책제안

3. 고려사항

중증장애인 배제 가능성

강점 중심의 접근 필요
뇌성마비 장애대학생 - '휠체어 이용 장애인'
가벼운 수준의 작업강도를 수행할 수 있음
장애의 특성상 육체적인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컴퓨터를 다루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강점
콜센터 전화상담과 같이 실내에서 진행하는 아르바이트
중증장애인이라고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맞는 아르바이트와 연계시켜주는 것이 목적

한국직업사전 기준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 최고 4kg 들고, 장부와 소도구 등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IV. 정책제안

4. 자원 조달 방안

Arbeit Free(알·프)

대학 내 예산 + 고용노동부 지원금
대학 내에서 70%,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30%로 재원을 조달

IV. 정책제안

4. 자원 조달 방안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행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프로그램의 자원 조달 방법을 따른다.

IV. 정책제안

4. 자원 조달 방안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자원 조달 방법을 따름

V. 기대효과

V. 기대효과
기대효과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방안 기대효과

1. 장애대학생의 생활양식 다양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정상화의 실현
3. 장애대학생의 자립
4. 장애 인식개선

VI. 참고문헌

VI.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덕순, 이명숙 (2002).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복지실태와 대안 = The Research on Working Students` Well-being. 학생생활연구지 : 오산대학(제7호), 33-57.
- 심인옥, 송건우 (2016). 간호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의사소통능력, 자기 효능감,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123-133.
- 유은주, 최보라, 하은희 (2017). 장애대학생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장애대학생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알바일기 (<https://www.20slab.org/Archives/28541>)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아르바이트 경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E074&conn_path=12)
「UN 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Thanks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정책제안 발표회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정책

제안 1팀

〈제안 개요〉

제안자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은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다른 비장애 대학생들과 동일하게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안자들은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 현황과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참여자의 70%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어려움'(어려움 + 매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으며 평균값 또한 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장애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욕구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의 64.29%가 '높음'(높음 +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했으며 평균값 또한 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제안자들은 장애대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안자들이 겪은 간접적인 경험을 더 구체화하고자 했다. 장애대학생들은 장애를 이유로 아르바이트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실무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정책의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등록 장애인과 이를 고용할 의지가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주로 했다.

제안하는 정책은 교내 장애대학생 단계별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행,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이다. 정책을 통한 기대 효과는 장애대학생의 생활양식 다양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정상화의 실현, 장애대학생의 자립, 장애인식개선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제안자들은 00대학교에서 00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00대학교는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으로 장애당사자인 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교이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00학에서 '재활'은 '신체적 재활'이 아닌 '직업재활', 더 나아가 전(全) 인격적인 '통전적 재활'이다. 통전적 재활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립'이다. 자립이란 사회복지의 수동적 수혜자인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직업 능력, 사회적 경쟁력을 갖추어 복지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장애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학교와 학과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장애당사자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은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다른 비장애 대학생들과 동일하게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와 SKT의 공동기획 프로젝트인 와이T연구소에서 발간한 「알바일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대학생의 6개월 이내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83.0%이다. 그에 반해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한 「장애인의 삶패널조사 :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 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이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30.3%밖에 되지 않았으며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69.7%다.

심인옥, 송건우(2016)에 의하면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경험은 성인으로서 경제적부분의 자립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첫 관문이다. 최근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위한 구직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검색, 지인, 동료 소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영역의 특성은 대부분 한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감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학업과 동시에 단 시간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방학을 활용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로는 주로 중고등학생 과외를 비롯하여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를 하게 된다. 서울 YMCA에 조사 [1]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86%이며, 백지숙의 연구보고[2]에서는 67%, 최혜영과 백유경, 김태훈, 최상준의 연구[3]에서는 59.3%로 전체 대학생의 절반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하나의 대학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p. 124)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는 많았

다. 하지만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장애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논의가 없는 사회적인 상황과 다르게 우리가 학교생활에서 겪었던 장애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려 했지만, 장애에 대한 차별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고, UN 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하면 장애인도 완전한 사회참여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대학생들은 장애라는 이유로 같은 대학생들과 다르게 아르바이트라는 대학문화에서는 소외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을 통해 장애대학생들도 비장애대학생과 동등한 대학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개념 정의

김택순, 이명숙(2002)에 의하면 “아르바이트(Arbeit)’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일반적인 노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일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학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이민경, 2000).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떤 경우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을 통념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한다. 근래에는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part-time employment)’으로 표기한 연구들도 있다(장원섭 외, 2001 ; 옥경희, 1993).”(p. 36)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기를 한다. 관련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ttps://terms.naver.com/>).

1) 아르바이트(Arbeit)

독일어로 근로, 노동으로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

2)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임시직근로자

임시직근로자는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근로자이다. 일반적으로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다른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된 자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다. 임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됨은 물론 계약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된다. 법에 정한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통상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다.

(2) 일용직근로자

일용직(日傭職, 영어: day labor)은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품삯을 받는 직위나 직무, 직종을 가리킨다.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이다. 임시직, 계약직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고용이다.

3)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

근로시간이 짧은 비상근 파트 타임 근로자.

4)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를 말한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직종이나 근무 조건, 연령에 따라 해당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에서는 대학생들이 방과 후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로 명하기로 한다.

3. 장애대학생 및 취업지원체계 현황

현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진행한 장애대학생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유은주 등 2017)을 인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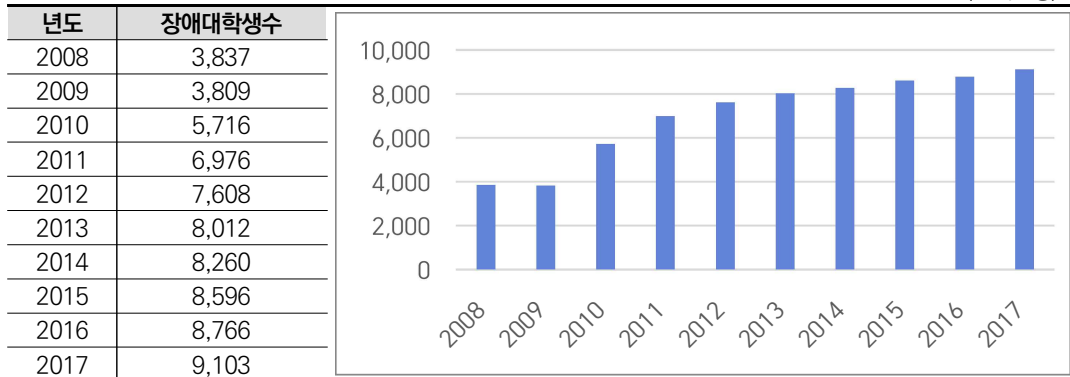
1) 장애대학생 현황

2017년 기준 장애대학생은 10월 기준 전국의 장애대학생은 9,103명이다. 1995년 장애학생 특별전형이 실시된 이후로 장애대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2>는 최근 10년간 전

문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연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10년간 장애대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8년 3,837명이었던 장애대학생 수가 2017년 9,103명으로 최근 10년간 약2.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연도별 장애대학생 현황

(단위: 명)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7.07.10.); 국립장애인도서관 (<https://goo.gl/7hhjyj>, 검색일: 2017.10.10.);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2013) 보도자료; 교육부(2014) 보도자료; 교육부(2015)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2) 장애대학생 취업지원체계

우리나라의 부처별 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정책은 대부분 비장애학생 및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장애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또한 일부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장애대학생 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정책은 대부분 장애대학생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장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일부로서 장애대학생을 포함시키고 있다. 장애학생 중에서도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제도, 정책은 매우 드물게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대학생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¹⁾」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장애인 취업 지원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제21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

1)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7.05.30.)

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의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의 2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를 목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표 2〉 장애인일자리사업 주요 내용

유형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모집기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참여기관	1월~12월(12개월)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고등부 3학년 및 전공과 학생	만 18세 이상 안마사자격을 취득한 시각 장애인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 등록 장애인
주요 업무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원, 환경정리, 디엔디 케어, 우편물분류요원, 룸메이드, 급식도우미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수행		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업무보조
근무 장소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 등		도서관, 우체국, 숙박시설, 학교, 복지관 등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
근무시간 (1월-11월)	주 5일(40시간)	주 20시간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주 5일(25시간)	
인건비(월)	1,353,000원	676,000원	363,000원		1,066,000원	844,000원
근무시간 (12월)	주 5일(38시간)	주 19시간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주 5일(23.5시간)	
인건비(월)	1,282,780원	642,190원	363,000원		1,001,730원	793,180원
지원인원	4,746명	1,525명	9,044명		760명	277명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서울 30% 지방 50%		80%	서울 30% 지방50%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https://www.koddi.or.kr/service/work_intro.jsp, 검색일: 2017.06.01.); 보건복지부(<https://googl/sthxP8>, 검색일: 2017.06.01.)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²⁾」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직업지도)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직업적응훈련)는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제13조(지원고용), 제14조(보호고용), 제15조(취업알선 등),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제17조(자영업 장애인 지원),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제19조의 2(근로지원원 서비스의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학력 장애인 취업확대를 위해‘장애대학생 취업확대 Project’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장애대학생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등 구직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고용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담당한다. 장애대학생의 취업 희망수요에 대해 84개 대학에서 344명의 취업희망자를 조사하였고, 이들에게는 공단을 통해 지속적인 취업알선이 제공된다. 업무추진은 대상자선정,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시험고용(취업연계), 적응지원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졸업예정자(4학년)를 대상으로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공단의 시험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여기에서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에게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통해 구직동기와 구직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시험고용은 장애인에게 사업체 현장 연수를 통하여 직장체험이나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장애재학생(1~3학년)

2)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7.05.30.)

대상의 취업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방학기간동안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방안을 구상하며, 이를 위해 장애대학생 대상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 이외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까지 장애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2011).

〈표 3〉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추진 흐름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3~2017)에서 장애인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장애인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체계 재설계(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인원 확대(12년 3,500명→17년 5,000명)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훈련 참여시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함께 레고형 ³⁾ 으로 지원 장애인고용공단의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제도화하여 참여 고객 확대 및 취업성과 제고
장애 학생에 대한 직장 체험 기회 확대	재학 단계 (1~3학년)	인턴십 프로그램	현장직무 체험을 통해 희망일터나 적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연간 600명 이상의 장애대학생과 특수학교(급) 학생에 대한 기업연수 확대 실시
	졸업 및 취업단계 (4학년)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면접요령·인사담당자 강의 등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대학생 커리어캠프' 개최
		시험고용	사업체 현장 연수를 통하여 직장체험이나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2a), 관계부처 합동(2012b)

3) 훈련을 받으면서 생활비, 보육 등 타부처·타기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 (전 부처 지원사업 리스트 및 연계방안 포함)(관계부처 합동, 2012)

이밖에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장애대학생 전담 취업지원관 배치를 추진하여, 장애대학생 구직자 확보, 기업연수제 참여 대학생 모집,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2).

4. 연구문제

1) 장애대학생들이 겪는 아르바이트 문제

00대학교는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교로 우리나라 대학교 중 장애대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이다. 제안자들은 00대학교 00학과에서 재활학을 전공하면서 장애인의 직업재활, 자립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되었다.

학교와 학과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장애당사자인 학생들과의 교류가 많았다. 대부분의 장애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했다. 드물게 아르바이트를 구한 학우들도 있었는데, 그들조차 사업체에서 장애 장벽을 경험하였다. 또한, 사업주의 차별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안자들이 겪은 장애대학생들은 다른 비장애 대학생들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하지만 비장애 대학생들처럼 대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인 아르바이트를 수월하게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안자들의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장애대학생들이 실제로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겪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표적집단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했다.

표적집단면접 면접자는 00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시각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대학생 2(뇌병변장애, 심한 장애), 대학생 3(지적장애, 심한장애) 대학생 4(뇌병변장애, 심한 장애)가 참가했다. 면접은 2021년 10월 9일 00대학교 정남수관의 강의실에서 진행했으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자들이 겪은 아르바이트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장애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대학생 1은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고깃집에서 약 한 달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구직 과정에서 고용주에게 시각장애인임을 설명하고 근로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를 통보받았다. 대학생 1은 높은 작업 수행능력을 인정받았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했다. 해고의 원인을 물어보았는데 장애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 같다고 했다.

두 번째, 고객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발언을 들었다. 대학생 2는 시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차별은 없었다. 하지만 민원인들에게 ‘아픈 친구가 고생하네.’, ‘장애인이 왜 구청에 있어.’와 같은 장애인을 대상화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세 번째, 장애를 이유로 한 구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다.

대학생 3은 편의점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대학생 3은 구직 과정에서 고용주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자주 경험했다고 한다. 대학생 3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은 대학생 3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이다. 고용주들의 편견으로 대학생 3은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4는 자신과 같은 뇌병변 장애대학생은 학기 중에는 학교 생활을 하지만 방학 때는 재활치료를 위해 집과 병원만을 오고 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대학생 4는 이런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더 활동적인 생활로 변화하고 싶은 욕구 또한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특성상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FGI로 알 수 있는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장애를 이유로 아르바이트에 접근이 어렵거나 고용 이후에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두 번째, 가정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자립 욕구가 있었다.

세 번째,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장애대학생들이 더 수월하게 아르바이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의 부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많이 발전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대한 법률 제정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을 기점으로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은 기존의 전통적 의료적 모델에서 자립생활 모델로 변화하였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사업은 다른 장애인 일자리 정책, 사업보다 부족했다. 심지어 제안자들이 제안하는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나 관련 사업은 없었다.

하지만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첫 번째 장애대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대학생 현황표 2-2를 보면 장애대학생의 수는 2008년 3,837명에서 2017년 9,103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점점 많아지는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이 필요

하다.

두 번째 장애대학생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대학생들은 최상위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영위할 만큼 고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비장애 대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수 있다.

세 번째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 고용보다 학업을 탐구하는 것이 주 역할인 대학생의 특성상 이들에게는 기존의 장애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장기적 고용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애대학생들이 학업을 탐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3. 연구 방식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욕구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 현황 파악은 실행되는 실태조사가 없어 장애대학생의 관련 욕구는 물론 직종의 형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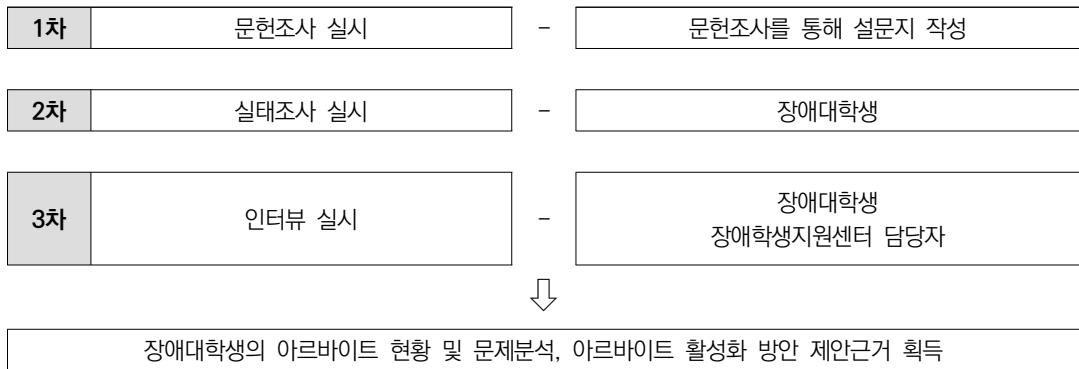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가지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와 현황 파악했다. 두 번째

장애대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자 등 당사자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안자들은 당사자와 전문가가 아니다. 00대학교에서 재학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장애대학생과의 교류가 있었고 그들이 받은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제안자들이 받은 간접적인 경험은 재학학도의 관점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당사자와 전문가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 파악했다.

〈표 5〉 정책 연구 흐름도



Ⅲ. 연구결과

1.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본 장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0명의 응답을 받았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진 소개와 에브리타임(00대학교, 대구대학교, 한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등), 페이스북(그룹 사회복지계 등) 등의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구성 항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장애유형, 최종학력), 아르바이트 관련 특성(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유형, 아르바이트 중 장애를 이유로 당한 차별의 유무와 유형),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관련된 현황, 욕구(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할 때 어려움 정도, 아르바이트 욕구,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 실용성)로 구성하였다.

1) 일반적 특성

〈표 6〉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 장애 유형, 최종학력 등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22세 미만은 38명(57.29%), 23세 이상 26세 미만은 26명(37.14%), 27세 이상 29세 미만은 3명(4.29%), 30세 이상은 3명(4.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지적장애 + 자폐성장애)는 29명(41.43%), 뇌병변장애는 15명(21.43%), 지체장애는 9명(12.86%), 청각장애는 6명(8.57%), 시각장애는 5명(7.14%), 호흡기장애와 뇌전증장애는 2명씩(2.86%), 장루·요루장애와 기타(뇌병변, 지적 중복장애)는 1명씩(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장애유형의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 이상은 63명(90%), 전문대 재학 이상은 4명(5.71%), 대학교 졸업 이상은 2명(2.86%), 전문대 졸업은 1명(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N=70)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연령	18세 이상 22세 미만	38	57.29
	23세 이상 26세 미만	26	37.14
	27세 이상 29세 미만	3	4.29
	30세 이상	3	4.29
장애유형	지체장애	9	12.86
	뇌병변장애	15	21.43
	시각장애	5	7.14
	청각장애	6	8.57
	언어장애	0	0
	안면장애	0	0
	신장장애	0	0
	심장장애	0	0
	간장애	0	0
	호흡기장애	2	2.86
	장루·요루장애	1	1.43
	뇌전증장애	2	2.86
	발달장애(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29	41.43
	기타	1	1.43
최종학력	전문대 재학 이상	4	5.71
	전문대 졸업	1	1.43
	대학교 재학 이상	63	90
	대학교 졸업 이상	2	2.86

2) 아르바이트 관련 특성

〈표 7〉은 응답자들의 아르바이트 관련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경험 없음이 45명(64.29%), 경험 있음이 25명(35.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유형의 경우 식당 6명(20%), 편의점 5명(16.67%), 물류 3명(10%), 주점과 PC방이 1명씩(3.33%), 기타 14명(46.67% - 재택근무, 공공기관, 카페, 과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중 장애를 이유로 겪은 차별의 유무를 살펴보면, '차별을 받은 적이 없음'이 13명(52%), '차별을 받은 적이 있음'이 12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중 장애를 이유로 겪은 차별의 유형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부당해고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6건(37.5%), 따돌림 5건(31.25%), 폭언 4건(25%), 기타 1건(6.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아르바이트 관련 특성

(단위: 명, %)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경험 있음	25	35.71
	경험 없음	45	64.29
아르바이트 유형	PC방	1	3.33
	편의점	5	16.67
	식당	6	20
	주점	1	3.33
	물류	3	10
	기타	14	46.67
아르바이트 중 장애를 이유로 겪은 차별 유무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12	48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	13	52
아르바이트 중 장애를 이유로 겪은 차별의 유형	폭언	4	25
	폭행	0	0
	따돌림	5	31.25
	임금체불, 부당해고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6	37.5
	기타	1	6.25

3)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관련된 현황, 욕구

장애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할 때 어려움,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에 대한 실용성 등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통해 측정했다.

〈표 8-1〉은 장애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할 때 어려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매우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3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쉬움'이라는 응답이 1.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70%가 '어려움'(어려움 + 매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으며 평균값 또한 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장애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8-1〉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할 때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 N=70)

항목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평균
어려움 정도	2 (2.86)	1 (1.43)	18 (25.71)	23 (32.86)	26 (37.14)	4

〈표 8-2〉은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욕구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매우 높음'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낮음'이라는 응답이 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64.29%가 '높음'(높음 +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했으며 평균값 또한 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8-2〉 아르바이트 욕구

(단위: 명, % / N=70)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
욕구 정도	0 (0)	3 (4.29)	22 (31.43)	17 (24.29)	28 (40)	4

〈표 8-3〉은 장애대학생들이 생각한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이 실현됐을 때의 실용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3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낮음'이라는 응답이 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의 60%가 '높음'(높음 +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했으며 평균값 또한 3.88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장애대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의 실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8-3〉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 실용성

(단위: 명, % / N=70)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
어려움 정도	0 (0)	2 (2.86)	26 (37.14)	20 (28.57)	22 (31.43)	3.88

4) 장애대학생들이 생각한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의 고려해야 할 점

설문의 마지막에는 개방형 질문으로 ‘귀하가 생각하는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라는 문항을 구성했다.

장애대학생들의 응답으로는 외관상 보이는 장애특성(보행 여부) 이외의 장애특성(예)-경련을 보이는 신체장애(뇌병변)등을 고려한 직무환경 조성 필요, 장애 아르바이트를 확대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장애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차별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아르바이트가 필요합니다. 또 초반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장애대학생들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아르바이트 개발, 사업주의 인식개선, 접근성 등의 다양한 고려사항을 원하고 있었다.

(1) 장애대학생 인터뷰 결과

본 장에서는 장애대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자 등 당사자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안자들이 겪은 간접적인 경험을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본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 인터뷰가 꺼려지는 인터뷰 대상자와는 전화통화나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00대학교의 장애대학생 4명과 00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자 1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애대학생의 경우 제안자들의 지인으로 쉽게 인터뷰 일정을 정하고 대면 또는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무자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뷰 질문지와 중간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인터뷰 일정을 정하고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표 9〉 인터뷰 대상자

구분	참여자	세부유형별	특징
장애대학생	1	4년제 사립대	시각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남
	2	4년제 사립대	뇌병변장애/심한 장애/남
	3	4년제 사립대	뇌병변장애/심한 장애/남
	4	4년제 사립대	시각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남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자	1	4년제 사립대	취업지원 및 교육 담당자

〈표 10〉 인터뷰 질문지

장애대학생용 인터뷰 질문지

1. 일반적인 사항
 - 장애대학생 특징(장애유형, 정도, 가정환경 등)
 - 생활비 출처
2.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 아르바이트 관련 욕구
 -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질문(경험한 아르바이트 유형, 기간, 경험한 아르바이트에서 겪은 차별,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
 -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인한 영향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자용 인터뷰 질문지

1. 일반적인 사항
장애대학생 현황(수, 유형, 정도, 경제적 상황 등)
2.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질문(경험한 아르바이트 유형, 기간, 경험한 아르바이트에서 겪은 차별,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
3. 기타
장애학생지원센터 내 관련 프로그램
실무자가 생각하는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1) 인터뷰 결과

(1)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에서는 장애유형이나 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생활비 또는 개인적 이유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저는 좀 강한 편인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심한 장애를 갖고 있고 보행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더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조금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못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건만 갖춰진다면 저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큼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주로 이제 생활비를 주시고 '주로 생활을 하는 게 병원이랑 집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험적인 측면에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대학생 2)

네 있습니다, 그냥 보통 엄청 활동적인 아르바이트보다 문서처리 같은 사무직이 저의 장애 유형에서는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했습니다.

(장애대학생 3)

일반적 사항의 내용을 더했을 때 장애대학생들의 장애유형, 정도가 아르바이트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장애유형의 낙인이 강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일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적 있고 제가 그런 뭐 대외활동이 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는 1학년, 2학년 때 지원을 했었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있나 뭐 컴퓨터활용능력 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아르바이트에 지원해도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2)

저는 20살 때 짧게 알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 식당 고깃집인데 거기서 한 달 정도 했었습니다.

(장애대학생 1)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는 장애대학생 대부분이 장애를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제 편의를 제공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아쉬웠습니다.

(장애대학생 2)

확실히 제가 다리가 불편해 보통 약간 사무직이나 이런 아르바이트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제 너무 활동적인 약간 택배나 음식점 같은 이런 경우에는 힘들었습니다.

(장애대학생 3)

장애를 이유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까 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할 때 위축된 기억이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4)

장애대학생들은 장애유형이나 정도의 차이로 아르바이트 경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모든 장애대학생이 장애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걱정했으며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2)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자 인터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아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장애대학생의 현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00대학교의 장애대학생의 현황은 알 수 있었으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현황은 조사된 바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아직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에 고려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조언해주셨다. 장애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 인식개선, 사업주의 입장에서의 얻을 수 있는 이익 등 우리의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의 적용방안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 조언을 해주셨다.

장애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사업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실제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 사업주들의 '장애인은 일을 하지 못할 거야.' '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어.'와 같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고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사업주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 이익이 있어야 장애대학생들을 고용할 것 같습니다. 인식개선과 더불어 지원금과 같이 금전적 이익이 있어야 사업주도 고용을 할 것입니다.

장애대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직무를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접근 방법도 필요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예시로 들면 포스기 사용이 미숙하더라도 진열대에 진열하는 것을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포스기를 잘 다루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실내에서 하는 사무직이 잘 어울리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실외에서 활동적인 아르바이트가 더 잘 어울리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인터뷰 최종 정리

인터뷰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인 00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이들이 겪고 있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나 부정적 경험은 타 대학이나 지역에서의 장애대학생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장애대학생들은 장애를 이유로 아르바이트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장애인식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모든 장애대학생이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다.

실무자와의 인터뷰의 경우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을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관련 연구나 자료가 없었던 것처럼 현장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 장애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볼 수 있었다.

IV. 정책제안

1. 정책대상

본 정책의 대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첫 번째, 노동자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말한다.

두 번째, 사업주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의지가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주로 한다.

2. 실행방안

1) 교내 장애대학생 단계별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 Arbeit Free(알·프) -

장애대학생의 경우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참고했다. 장기적 고용이 목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장애대학생의 접근이 유리한 교내 장애학생 지원센터나 취업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단계별 프로그램은 1단계 상담 및 아르바이트 계획 수립, 2단계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3단계 알선 및 유지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표 11〉 교내 장애대학생 단계별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 Arbeit Free(알·프) - 흐름도

단계	내용
1단계	상담 및 아르바이트 계획 수립
	초기상담, 장애대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용, 개인별 아르바이트 계획수립
↓	
2단계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장애대학생 전용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노동·인권 교육
↓	
3단계	알선 및 유지
	면접 동행, 아르바이트 연계 및 알선, 구직 후 적응지도

1단계는 상담 및 아르바이트 계획 수립 단계이다.

1단계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장애대학생과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의 특성, 희망하는 아르바이트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라포를 형성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아르바이트 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는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장애대학생 전용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등 구직기술을 향상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는 단계이다.

장애대학생 전용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사업체를 탐색하는 방법이나, 구직 정보 수집, 채용정보 탐색,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기술 등 구직기술을 향상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노동·인권 교육에서는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안전교육, 작업 에티켓 교육, 근로계약 교육(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3단계는 알선 및 유지 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장애대학생이 희망하는 아르바이트에 연계, 알선을 통해 장애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며 구직 이후 아르바이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응지도를 한다.

2)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기업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2021년 법정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항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가 아닐 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6항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에 따라 약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을 통해 장애대학생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의지가 있는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때도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

3)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⁴⁾을 초과로 고용(소수점 이하 올림)한 대상자의 명수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 - 상시근로자 100인의 민간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 5명을 고용했을 때 의무고용률 초과인 4명을 뺀 1명분의 장려금이 지급)

현재의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는 소규모 사업체는 장려금을 받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을 통해 장애대학생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려금 지급기준(의무고용률 초과 고용)을 완화해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에도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4) 2021년 기준 공공 3.4%, 민간 3.1%

3. 고려사항

1)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제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속해서 감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액 환수, 장려금 지급제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에서 제안하는 고용장려금 기준 완화의 경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정해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제의 기준을 따르고 관리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

2) 중증장애인 배제 가능성

강점 중심의 접근을 통해 장애당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연결해주려 한다. FGI를 시행한 학생 4는 뇌성마비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이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고 아주 가벼운 수준⁵⁾의 작업강도를 수행할 수 있다. 장애의 특성상 육체적인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학생 4의 경우 컴퓨터를 다루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강점을 보였다. 강점 중심의 접근을 통해 학생 4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와 연결 지으려 했고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나 콜센터 전화상담과 같이 실내에서 진행하는 아르바이트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중증장애인이라고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맞는 아르바이트와 연계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다.

4. 자원 조달 방안

1) 교내 장애대학생 단계별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 Arbeit Free(알·프) -

대학 내 예산 + 고용노동부 지원금 : 교내 장애대학생 단계별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 Arbeit Free(알·프) - 에 필요한 예산은 대학 내에서 70%,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30%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한다.

⁵⁾ 한국직업사전 기준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 최고 4kg 들고, 장부와 소도구 등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2)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 조달 방법을 따른다.

3)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 사업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재원 조달 방법을 따른다.

V. 기대효과

1. 장애대학생의 생활양식 다양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FGI와 장애대학생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대학생의 생활은 가정에서만 생활하거나 재활 치료를 위해 통원하는 등 단조로운 생활양식이 많았다.

장애대학생들은 이런 단조로운 생활양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녔다.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을 통해 집 또는, 집-병원의 단조로운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활양식을 영위할 수 있고 이는 장애대학생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2. 정상화의 실현

정상화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의 규범과 행동 양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장애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당연한 규범과 행동 양식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장애대학생들은 장애를 이유로 대학생들의 문화에서 배제되어왔다.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장애대학생들은 앞으로 더 수월하게 아르바

이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애대학생도 대학생의 문화에서 더는 배제되지 않고 같은 수준의 규범과 행동 양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은 정상화의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장애대학생의 자립

장애대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대부분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은 가정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다.

장애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가정에서 만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장애대학생이 스스로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은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장애인식개선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으로 장애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고용한 사업주, 함께 일하는 동료, 장애인을 직원으로 접하게 되는 소비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지만,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은 장애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고문헌

- 김덕순, 이명숙 (2002).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복지실태와 대안 = The Research on Working Students` Well-being. 학생생활연구지 : 오산대학(제7호), 33-57.
- 심인옥, 송건우 (2016). 간호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의사소통능력, 자기 효능감,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123-133.
- 유은주, 최보라, 하은희 (2017). 장애대학생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장애대학생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알바일기 (<https://www.20slab.org/Archives/28541>)
-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아르바이트 경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E074&conn_path=I2)
- 「UN 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근로기준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록 1]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설문조사

이 설문은 한국장애인재단의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에 참가한 00대 학교 00학과 재학생이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은 대학, 국가, 사업주 간 연계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이 더 수월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입니다. 이 설문에서는 장애대학생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현황 및 욕구를 수집하려 합니다. 설문에는 이름이나 학교를 적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외부에는 노출되지 않으며, 연구 목적과 설문 참가자의 사은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가면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귀하의 나이를 선택해주시시오. (주민등록 상 만 나이)

- 1) 18세 이상 22세 미만
- 2) 23세 이상 26세 미만
- 3) 27세 이상 29세 미만
- 4) 30세 이상

2. 귀하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유형에 해당하십니까? (아니요-설문종료)

- 1) 네 2) 아니요

3. 귀하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유형의 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중복장애의 경우 ()에 기입해주세요.)

()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안면장애	7) 신장장애	8) 심장장애	9) 간장애	10) 호흡기장애
11) 장루·요루장애	12) 뇌전증장애	13)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		14) 정신장애

4.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1) 전문대 재학 이상 2) 전문대 졸업 3) 대학교 재학 이상 4) 대학교 졸업 이상

5. 귀하는 대학 생활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까? (본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이 방과후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로 정의합니다.)(2. 아니오의 경우 9번으로)

- 1) 네 2) 아니요

6. 귀하가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이하 아르바이트 생략)

- 1) pc방 2) 편의점 3) 식당 4) 주점 5) 물류 6) 기타()

7. 귀하는 아르바이트 중 사업주, 직장동료, 소비자 등에게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및 혐오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2. 아니오의 경우 9번)

- 1) 네 2) 아니요

8. 귀하가 아르바이트 중 장애를 이유로 겪은 차별은 무엇입니까?

- 1) 폭언
2) 폭행
3) 따돌림
4) 임금체불, 부당해고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5) 기타()

9. 귀하가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할 때 어떠셨습니까?

- 1) 매우 쉬움 2) 쉬움 3) 보통 4) 어려움 5) 매우 어려움

10. 귀하가 생각했을 때 장애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욕구는 어느정도 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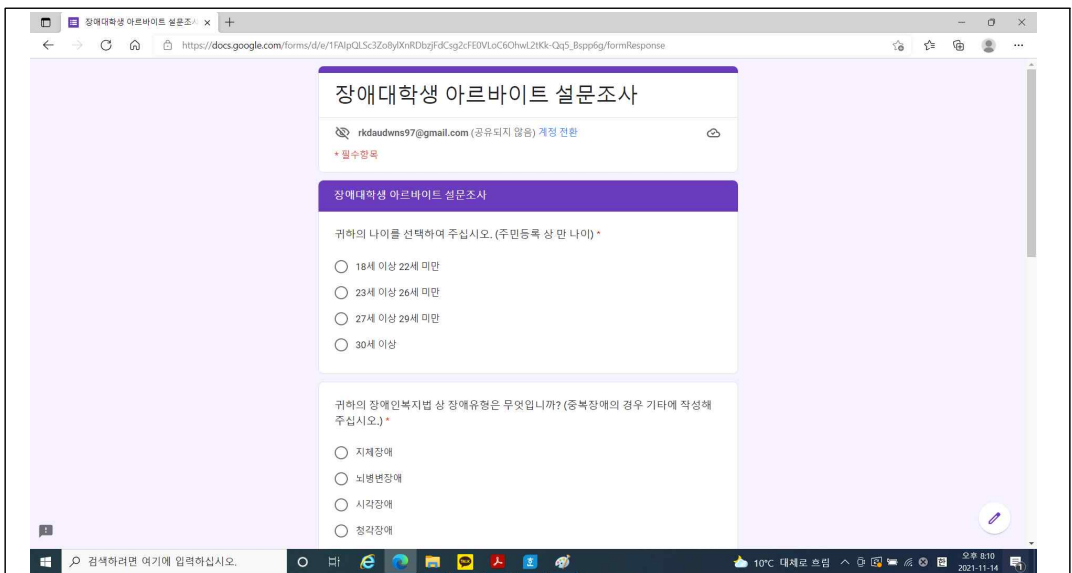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11. 귀하가 생각 했을 때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이 실행된다면 그 실용성은 어떻게 같습니까?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12. 귀하가 생각하는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에 대한 생각,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고려되었으면 하는 부분 등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접속 화면



[부록 2]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설문조사(발달장애인 용)

이 설문은 한국장애인재단의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에 00대학교 00학과 재학생이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은 장애대학생들이 더 쉽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설문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름이랑 학교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들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쓰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핸드폰 번호는 선물을 드리는 곳에만 쓰고 지울 것입니다.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해당 설문지는 정도가 정말 심한 장애인을 고려해 만든 설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지 내용이 간략하고 쉽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양해 부탁드립니다. 꼼꼼히 읽고 열심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몇 살인가요? (주민등록 상 만 나이) / ()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골라주세요.

- 1) 만 18세 ~ 22세 (2003년 ~ 1999년에 태어났어요.)
- 2) 만 23세 ~ 26세 (1998년 ~ 1995년에 태어났어요.)
- 3) 만 27세 ~ 29세 (1994년 ~ 1992년에 태어났어요.)
- 4) 30세 이상 (1991년 전에 태어났어요.)

2.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편의점, 식당, pc방 같은 곳)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의 경우 5번)



- 1) 네
- 2) 아니요

3.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봤나요?

<p>1) 피시방</p> 	<p>2) 편의점</p> 	<p>3) 식당</p> 
<p>4) 술집</p> 	<p>5) 택배회사</p> 	<p>6) 기타</p>

4.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별당한 적이 있나요? (차별이란 욕, 때리기, 따돌림 등을 말합니다. 당한 적이 있는 것을 골라주세요. 없다면 기타에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p>1) 폭언(욕, 나쁜 말)</p> 	<p>2) 폭행(때리기)</p> 	<p>3) 따돌림</p> 
---	---	--

<p>4) 임금체불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함)</p>  <p>밀린 임금 주세요</p>	<p>5) 부당해고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미리 얘기해주지 않고 갑자기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하는 등)</p> 
---	---

6) 기타 ()

5.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할 때 어떠셨나요?

- 1) 매우 쉬움 2) 쉬움 3) 보통 4) 어려움 5) 매우 어려움

6.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장애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하고 싶어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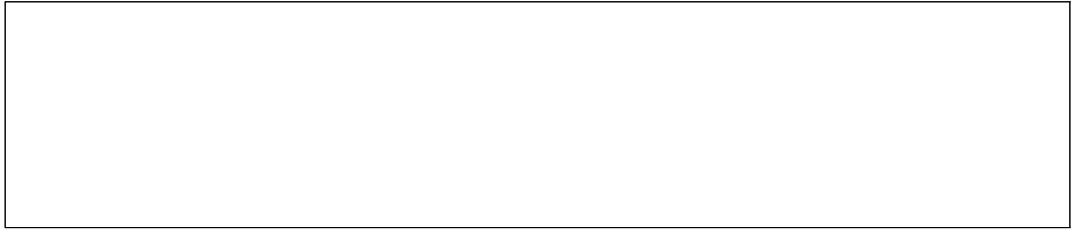
- 1) 매우 하기 싫음 2) 하기 싫음 3) 보통 4) 하고 싶음 5) 매우 하고 싶음

7.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이 생기면 아르바이트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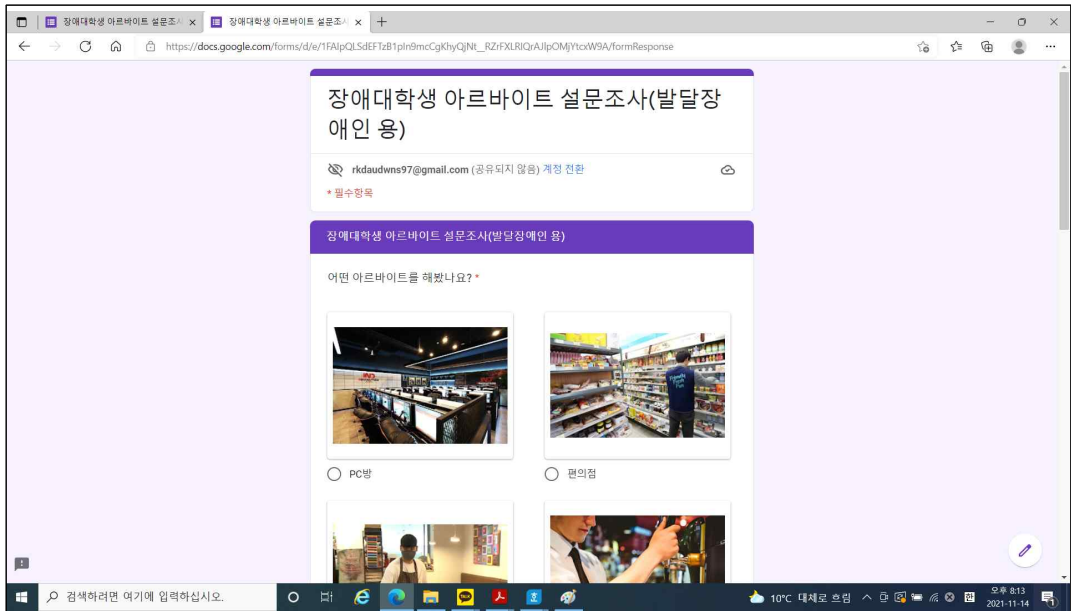
- 1) 매우 어려움 2) 어려움 3) 보통 4) 쉬움 5) 매우 쉬움

8. 스스로 생각하는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써주세요.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에 대한 생각,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신경 써주었으면 하는 부분 등 자유롭게 써주세요.)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정책



접속 화면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장애대학생 단기일자리 정책
결과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방안

2. 연구방법

계획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계획(양적조사)
결과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예정(양적조사)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심층면접 실시 예정(질적조사) 장애대학생 표적집단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3. 정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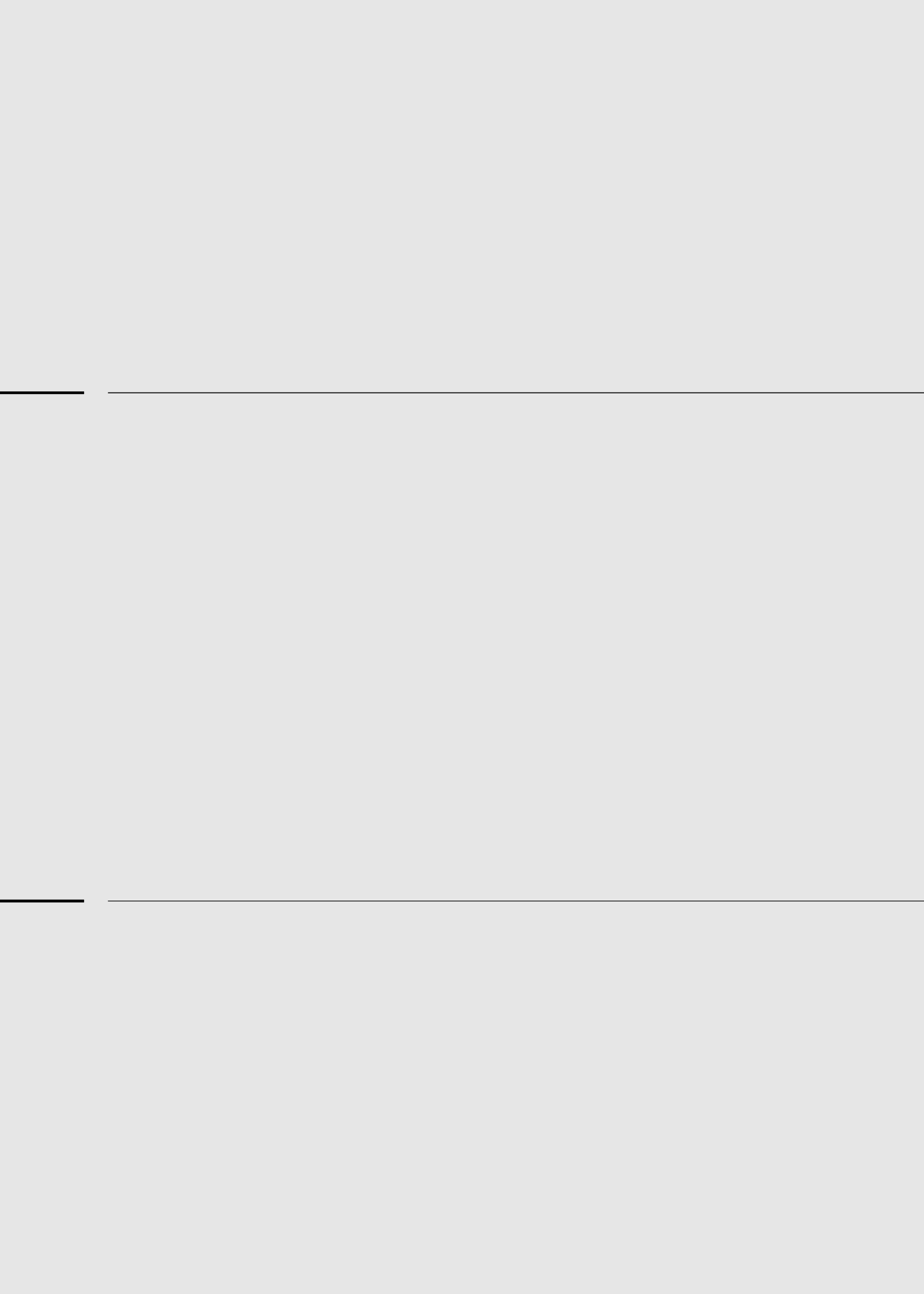
계획	아르바이트 욕구가 있는 장애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결과	아르바이트 욕구가 있는 장애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적용방안

계획	근로장학생 제도를 참고해 아르바이트와 접목하려 함.
결과	<p>교내 장애대학생 단계별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 Arbeit Free(알·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의 아르바이트 버전 <p>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방안 사업주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프로그램 기준 완화(기준 5인 이상 300인 미만 -> 5인 미만 가능) <p>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방안 사업주 재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방안으로 장애대학생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의무고용률 초과 고용)을 완화해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에도 장려금 지원.

5. 기대효과

<p>계획</p>	<p>장애대학생 입장에서 기대효과 기초적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경험을 통한 넓은 의미에서 자립, 탈시설, 정상화의 시작 기업 입장에서 기대효과 사업주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안. 장애인 고용의 적극성 증진, 노동유연성 확보 등 사회적 입장에서 기대효과 장애인식개선, '고등 교육을 받은 장애인'이라는 인적자원의 활용</p>
<p>결과</p>	<p>장애대학생의 생활양식 다양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FGI와 장애대학생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대학생의 생활은 단순로운 생활양식이 많았다.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방안을 통해 다양한 생활양식을 영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p> <p>정상화의 실현 비장애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당연한 규범과 행동 양식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런 문화에서 배제되었던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의 문화에서 배제되지 않고 같은 수준의 규범과 행동 양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p> <p>장애대학생의 자립 가정에서 만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장애대학생이 스스로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p> <p>장애인식개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지만,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방안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p>



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대상
사회성 및 진로 교육 정책

정책제안 발표자료

해커톤 대회 정책발표

※ 본 게시물은 한국장애인재단의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에 참여한 제안팀의 제작물로 무단 수정, 복제, 공유 및 배포를 금합니다.

작성일 2021.11.18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대상 사회성 및 진로교육해커톤 대회 정책발표

발표내용

01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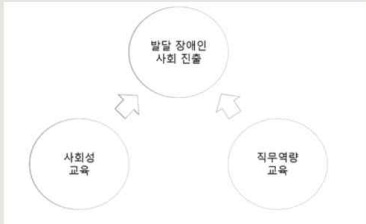
02 정책 연구 방법

03 정책 제안 내용

04 기대효과

05 참고문헌 / 부록

01. 배경 및 필요성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 체계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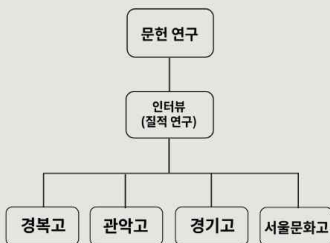
발달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사회성

발달장애 학생들이 취업 이후 사회성으로 힘들어하지만 이 부분을 케어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

학생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무직이 되거나 재교육을 받기 위해 다시 교육기관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현실

따라서 본 정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부족한 사회성을 교육하고 직무능력을 함께 길러줌

02. 정책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및 다양한 발달장애인 관련 논문과 학술지 분석

2. 대면 인터뷰 (질적 연구)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기반으로 서울시 내에서 '통합형 직업거점 교육학교'를 운영 중인 6곳의 고등학교 중 인터뷰를 승낙한 4곳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

작성일 2021.11.18 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대상 사회성 및 진로교육 해커톤 대회 정책발표

인터뷰 질문 목록

1. 교내 발달장애 학생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발달장애 학생들의 사회성은 어떠한가요?
3. 일반 학생들의 교내 발달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4. 교내 발달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5. 진행되고 있다면 성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6. 발달장애 학생 대상의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나요? 만약 학교 주권이 아니라면, 위탁으로라도 진행되고 있나요?

《시행되고 있다면 발달장애 학생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유지취업률 조사용 필요 있다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만약 유지취업률이 낮다면 왜 낮은가요? 만약 높다면 어떤 원 때문일까요?》

7. 장애학생들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당시 사용된 질문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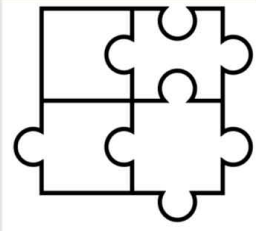
1. 상기 인터뷰 내용에 의거하여 인터뷰를 진행

2. 질문지 이외의 추가적인 내용은 별개로 정리

작성일 2021.11.18 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대상 사회성 및 진로교육 해커톤 대회 정책발표

사회성교육 **03. 정책 제안 내용** 진로교육

대상 범위	적용 내용	자원 조달 방법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의 발달장애 학생들	1. 사회성 교육 (1-2학년) 1) 기본예절 2) 자존감 3) 의사소통 2. 진로 교육 (3학년)	서울시 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 고용노동부 그 외 (고용공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적용 내용

기본 예절

1. 인사 예절
2. 업무 중에 하면 안 되는 행동
3. 기본적인 옷차림을 포함한 청결

자존감

1. 장애인 관련 영화, 드라마 등 시청
2. 봉사, 기부와 같은 자선활동 참여

의사소통

1. 상황극
2. 교내 일반 학생과의 소통시간

재원 조달 방법

(단위: 월, 원)

구분	호봉	근무기간	지급금액
인건비	1	1년 미만	2,285,180
	3	2년 이상 3년 미만	2,399,240
	5	4년 이상 5년 미만	2,495,470
	7	6년 이상 7년 미만	2,669,320
	9	8년 이상 9년 미만	2,777,750
	11	10년 이상 11년 미만	2,884,710
	13	12년 이상 13년 미만	2,968,900
	15	14년 이상 15년 미만	3,092,870
	17	16년 이상 17년 미만	3,198,320
	19	18년 이상 19년 미만	3,312,470

<한국장애인개발원 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기준표>

구분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최신편 참여자 월 28.4만원)	
훈련장려금	교통비	월 5만원	
	식비	월 6.6만원	
교사수당(공공훈련기관에 한함)			훈련생 1인당 2만원(최고 10만원 한도)

<고용노동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비 지급표>

작성일 2021.11.18 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대상 사회성 및 진로교육 해커톤 대회 정책발표

재원 조달 방법

○ 단계별 프로그램

1단계	상당 및 취업계획 수립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 상담 (최소 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권리강화·직업평가 ·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용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수립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요시 (5만원 또는 10만원) 추가지급
↓		
2단계	직업능력 향상	
12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 직업훈련 · 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등 장애 특화과정 훈련 ·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내일배움카드 발급연계 	훈련참여수당 일 18,000원 월 최대 264,000원
↓		
3단계	집중 취업지원	
3개월 ~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적부분석 및 직활인자관 동행 면접 · 2유형(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 	취업 후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일정요건 충족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작성일 2021.11.18 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대상 사회성 및 진로교육 해커톤 대회 정책발표

정책 제안 시 고려사항

- 1) 교내 프로그램과의 충돌
- 2) 교외 프로그램과의 중복
- 3) 특수교육 전담 교원 수 부족



04. 기대 효과

1.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도 증진

2. 장애인들의 사회진출 영역 확장으로
일반인들의 장애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3. 발달장애학생 사회 유능감 향상

감 사 합 니 다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정책제안 발표회

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대상 사회성 및 진로교육 정책

제안 2팀

〈제안 개요〉

본 정책은 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성 및 진로 교육을 진행을 통해 사회 진출과 더불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발달장애인 관련 논문 분석과 더불어 서울시 내 직업교육 거점학교 6곳 중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인 4곳의 거점학교에서 대면으로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토대로 발달장애 고등학생들을 위한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발달장애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또한 본 정책을 시행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 서울시 내 기존 정책과의 충돌 및 학교 외 기관에서의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그리고 특수교사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한 고찰을 서술하였다.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여가 가능한 각종 기관의 지원 사업들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들의 능력향상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사회적 화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장애대학생의 자립, 장애인식개선이다.

I.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개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자아, 즉 자기 자신의 우선성이 강조된다(Lukes, 1973). 당연하게도 이런 개인주의는 단순히 사회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내에서도 보인다. 그렇다 보니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교내에서도 발달장애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 개인의 안위만 걱정하게 된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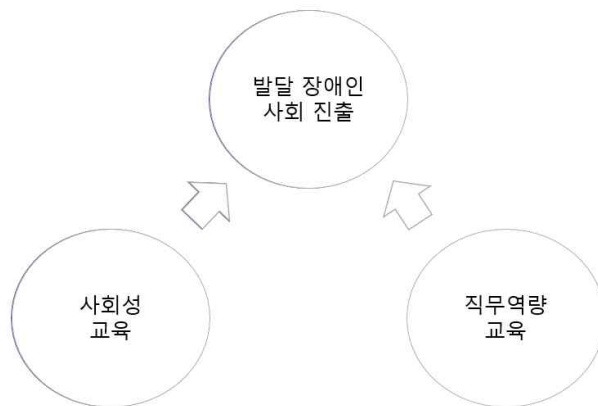
개인주의로 인해 장애인들이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프로그램들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재활센터 운영, 장애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여러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만 한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6년에 공공기관 고용률은 2.96%, 민간기업 고용률은 2.56%였다. 20년에는 공공기관 고용률은 3.52%로, 민간기업 고용률은 2.91%로 소폭 상승했다(국가통계포털 KOSIS, 2021).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석한다면, 개인주의가 만연해져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의 기반이 잘 되어있어서 장애인들이 무관심과 상관없이,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발달장애인이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힘들게 얻은 직장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으며 임금도 적다. 그리고 직무역량 및 사회성이 일반적으로 낮다 보니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김민영, 2016). 사회로 갓 나온 발달장애인들의 직무역량과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되어왔다. 시도교육청과 장애인고용공단이 연계하여 추진하였던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직무역량이 낮다는 지적을 했으며 또한 사회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서화자, 2014). 서화자(2014)의 연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실태 연구에서도 사회성은 문제로 꼽았다(황윤의, 2016). 이와 같은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회로 나왔을 때 사회성과 직무역량의 부족 때문에 직장을 얻거나, 얻은 이후에도 직장 내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에 할당된 예산은 21년 기준 약 3조 6천억 가량 된다. 그중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금액은 약 2

천억 정도 된다. 장애인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로 진출하였을 때 일반 학생들처럼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준비가 되고 참여한다면,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장애인들을 부양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사회적 비용으로 돌보는 존재가 아닌 경제를 같이 이끌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본 정책에서는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사회성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역량이다. 이전 연구에서 지속해서 지적받아온 사회성과 일반인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직무역량이 보완된다면 발달장애 학생들이 사회 진출 이후 충분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급한 두 가지 역량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그림 1〉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 체계도안

현재 많은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발달장애학생들로만 이루어진 특수학교 또한 통합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일반 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중이다. 통합교육은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통합교육 이후 지적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 향상 및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긍정적인 변화 등이 있다고 한다(천안인애학교, 2001). 최근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장애학생의 사회성 증진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황인선, 2019). 하지만 이런 통합교육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지는 않는다. 통합교육이 확대되면서 학급 내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일반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발달장애학생들에게 통

합교육은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된다(손영화, 2012). 이렇게 단순히 통합 환경에 아무런 준비 없이 놓인 발달장애학생들은 통합학급이 무섭게 느껴질 것이다(서희, 2010). 일반인들과 학교 내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존재로 인식한다고(김경민, 2021; 김예성, 2021)하여도 장애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회성을 통합교육으로 신장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에 따라 국내 학교에서는 발달장애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단순노동 및 간단한 사무 행정에 국한된 일들만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1> 서울특별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학교

연번	관할청	학교명	운영프로그램
1	서부	상암고	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운동화발래방
2	중부	경복고	대인서비스, 바리스타, 제과제빵, 디저트과정, 가죽공예
3	강동송파	문현고	제과제빵, 플로리스트, 진로설계, 도예
4	북부	서울문화고	바리스타, 전환교육, 제과제빵, 캘리그래피
5	강남서초	경기고	바리스타, 사무보조, 진로직업프로그램, 귀금속공예
6	남부	관악고	바리스타자격증, 목공, 자전거정비, 랩카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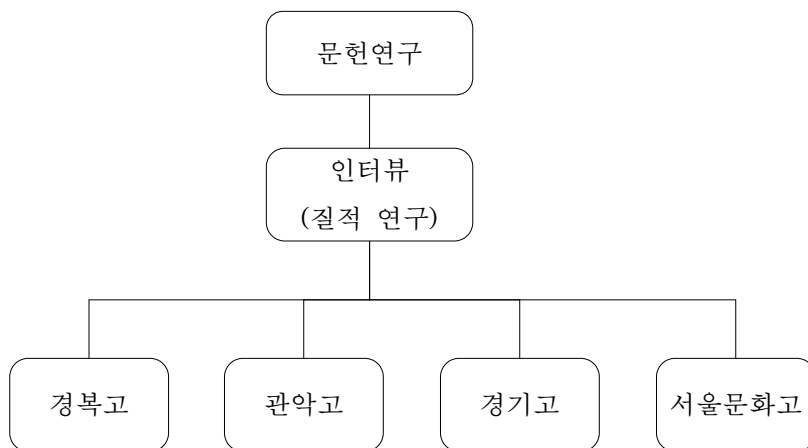
자료출처: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20. 9.)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활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능력이 일반인보다 못하다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현 교육과정에서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하나, 그러기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현 교육과정에 사회성 증진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환경에 놓여도 일반인처럼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 키워줘야 한다. 대부분 학교는 이 사회성 통합교육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물론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이 증진되어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발달장애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증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통합교육 내에서 소외된 채로 시간을 보낸다. 모 고등학교 참관수업 시간을 통해 지켜본 통합교육의 모습은 장애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개별 지도사와 함께 블록 놀

이를 하였다. 중증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이 듣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단순 이론 수업에만 국한되어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 실험과제나 조별 과제 등 아이들과 함께 모여 활동하는 시간에도 발달장애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지도사와 함께 다른 시간을 보냈다. 이런 통합교육이 과연 올바른 사회성 함양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과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다른 수업을 제공하던지, 혹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는 방향을 학교에서는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달장애학생들에게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제한되기에 그들이 사회로 나가서 즉각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성을 함께 배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성이 좋아진다면 장애학생들도 사회로 나가 더욱 다양한 경험을 얻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금처럼 단순노동에 국한된 직업만이 아닌 더욱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은 곧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개선에도 큰 도모가 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본 정책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II. 정책연구 방법

본 정책연구는 문헌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교육부에서 발행한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명시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운영학교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들 대상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그림 2〉 연구 진행 방법 체계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 중인 각 학교의 특수교사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인터뷰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정을 맞추었다. 표 2의 학교들 중 연락이 닿았던 학교는 경북고, 관악고, 경기고, 그리고 서울문화고 이렇게 네 군데였으며 이 중 경북고는 운영되고 있는 통합형 직업교육 관련 행정 업무가 경기고에의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고 인터뷰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이 결정이 된 학교는 경북고, 관악고, 경기고, 서울문화고 이렇게 총 네 곳이었으며 각자 8월 25일 경북고, 8월 27일 관악고, 9월 1일 경기고, 그리고 9월 7일 서울문화고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 목록

1. 교내 발달장애 학생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발달장애 학생들의 사회성은 어떠한가요?
3. 일반 학생들의 교내 발달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4. 교내 발달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5. 진행되고 있다면 성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6. 발달장애 학생 대상의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나요? 만약 학교 주관이 아니라면, 위탁으로라도 진행되고 있나요?
(시행되고 있다면)발달장애 학생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유지취업률 조사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만약 유지취업률이 낮다면 왜 낮은가요? 만약 높다면 어떤 점 때문에 높은지?
7. 장애학생들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진들의 역량도 중요하다 보시나요?

〈그림 3〉 인터뷰 질문 목록

인터뷰는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 항목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질문 항목들은 각 학교 특수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부족하게 보이는 점, 타 일반 학생들과의 관계, 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성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 교육 진행 방식, 특수교사의 역량이 프로그램 진행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연구 진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정보를 얻기 위해 구성되었다. 유

지취업률의 경우 정확한 통계 자료를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추가하였으나 인터뷰를 진행한 특수 교사들은 공통으로 이러한 방면의 통계 조사는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인터뷰는 단순히 질문지 내에 있는 내용에 국한되어서만 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담당자의 첨언과 추가로 궁금하다고 여겨진 것들, 그리고 본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 역시 같이 수집하였다. 수집한 문헌 연구 자료 및 인터뷰를 통한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 중인 본 정책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를 파악하였다.

Ⅲ. 제안 정책 내용

제안 정책의 내용으로서는 우선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설정한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서울시 내 발달장애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1.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본 ‘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대상 사회성 및 진로교육’정책은 서울시 소재지 내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8,848명, 그중에서도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의 학생들(이하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인터뷰는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 항목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질문 항목들은 각 학교 특수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부족하게 보이는 점, 타 일반 학생들과의 관계, 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성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 교육 진행 방식, 특수교사의 역량이 프로그램 진행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연구 진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정보를 얻기 위해 구성되었다. 유 지취업률의 경우 정확한 통계 자료를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추가하였으나 인터뷰를 진행한 특수 교사들은 공통으로 이러한 방면의 통계 조사는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인터뷰는 단순히 질문지 내에 있는 내용에 국한되어서만 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담당자의 첨언과 추가로 궁금하다고 여겨진 것들, 그리고 본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 역시 같이 수집하였다. 수집한 문헌 연구 자료 및 인터뷰를 통한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 중인 본 정책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를 파악하였다.

Ⅲ. 제안 정책 내용

제안 정책의 내용으로서는 우선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설정한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서울시 내 발달장애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1.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본 ‘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대상 사회성 및 진로교육’정책은 서울시 소재지 내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8,848명, 그중에서도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의 학생들(이하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 ‘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대상 사회성 및 진로교육’적용 내용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 사이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일반 학생들과 특수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진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참여한 시간만큼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IEP 방식을 가미한 사회성 교육을 시행하며 진로교육,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희망진로에 부합하는 직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 사회성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1~2학년 학생들에게 실시될 사회성 교육은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직장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예절과 태도(자존감), 소통 능력 등을 위주로 진행된다. 대화의 방식은 특수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므로 IEP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예절교육은 이론을 중심으로, 자존감과 의사소통 능력은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1) 기본 예절: 예절은 비단 직장에서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성에도 직접적인 연결 비중이 매우 크다. 특수학생들의 경우 타 학생에 대한 태도나 언행으로 인해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매우 잦다. 이러한 충격은 일반 학생들에게 특수 학생에 대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인식만을 심어주는 원인이 된다. 즉 특수학생들의 예절 함양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직장 내에서 상하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람 간의 인사 예절, 업무 중에 하면 안 되는 행동, 기본적 옷차림을 포함한 청결 등 특수학생들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거라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계획이다. 서울 문화고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청결은 직장 내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인의 성실함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교에서는 비중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각 특수학생 별로 청소구역을 배정하고 본인 들끼리 업무 수행률을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끼리 수행 가능한 활동들을 가미함으로써 함께 잘 해내고자 하는 단합심을 기르고 본인이 지켜야 하는 바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2) 자존감: 자존감은 상대를 대함에 있어 특수학생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본인이 타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부정적 관념에 사로잡혀 주어진 교육과정이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게다가 장애인의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해도 노력을 지속하게 되고 이는 곧 직무 능력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와 소득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최희철, 2020). 교육의 일환으로 불편한 몸으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름을 알린 사람들에게 관한 영화, 드라마 등의 시청각 자료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반드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맡은 일만 충실하게 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꾸준히 일깨워주도록 한다. 그리고 봉사나 기부와 같은 자선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닌, 엄연히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경기고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특수학생들이 교내 카페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만든 음료를 팔아 학생들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정기 기부한다고 한다. 이 같은 사회 기여 활동을 통해 특수학생들은 본인들 역시 바람직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3) 의사소통: 예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줄어들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교육 방식은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화 내용을 통해 상황극 등과 같이 실제상황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2) 3학년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각자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업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1)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문서작업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포함하여 각자 희망하는 직종마다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배치할 계획이다. 비단 자격증 뿐 아니라 바리스타, 각종 공예 등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요구되는 직종들을 위한 교육 역시 별도로 마련될 것이다. 취업 면접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특수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면접 때 어떠한 질문들을 할지, 그리고 해당 질문들에 대해 면접관들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일지 등 자료를 취합한다. 해당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모의면접을 자주 시행하여 교육받은 면접 방식을 실전에서 무리 없이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한다.

(2)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특수학생들의 경우는 일반 교사들, 그중에서도 주로 담임 교사들의 업무 쪽으로 좀 더 비중이 맞춰질 예정이다. 맞춤형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별도로 특강을 진행한다.

상기 교육들은 각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교내 사회복지사들의 주 업무로써 진행될 계획이다. 학교 내의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만으로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관련 직종 전문가나 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고, 일반 대학생 자원봉사 모집을 통해 인력을 충원할 것이다. 정보나 프로그램에 있어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은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기관과의 연계가 각 학교 특수교사들의 역량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웬만한 학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제도를 수용한 학교 수부터 매우 소수이기에 이러한 측면이 더 부각된다. 특수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재학 중 한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사회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파악해야 특수학생들의 탈시설 효과가 제대로 분석될 수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실속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 복지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특수학생 관리 네트워크인 “SELC(Special Education Local Connection) net”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 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특수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특별히 개설된 인트라넷에 따로 보관해 놓는다면 특수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은 특수교사 및 지역 사회복지사, 그리고 특수학생의 학부모로 제한한다.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으로 각 학교 별 졸업한 특수학생들끼리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등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만약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특수

학생이 있다면 다른 직종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가에 대한 여부를 파악, 장애인고용공단에서의 위탁을 통해 해당 학생의 적성에 대한 검수를 마친 후 이직 혹은 타 분야 교육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도록 한다.

3. 재원의 조달방법

본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조달하고자 한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 중인 서울 내 5곳의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해당 학교들의 특수교사들이 사회성 프로그램 및 직업 관련 교육 등 계획을 잡고 진행하려 해도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재원이 부족해서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수교사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복지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따로 요청하여 필요 재원을 충당하는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본 인터뷰 내용에 의거하여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장애인 관련 업무 및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지원센터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마련하도록 한다.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 결과, 재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장애학생 전담교사와 진로지도 선생의 부족으로 인력 보충에 필요한 비용, 두 번째는 사회성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 구성·진행에 필요한 자금이다. 각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충당한다.

1) 특수교사 및 지도교사 인력 보충은 우선 교육부의 특수교육인력 지원을 이용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의거하여 특수학생에게 진행하는 교육, 신변처리 등의 교내외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보조 인력 운영을 통해 특수학생 대상의 교육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특수교사 대상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교사에게 할당되는 금액은 교육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추후 공개가 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통해 특수교육 전문인력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해당 장애인재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한국장애인개발원 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기준표

(단위: 월, 원)

구분	호봉	근무기간	지급금액
인건비	1	1년 미만	2,285,180
	3	2년 이상 3년 미만	2,399,240
	5	4년 이상 5년 미만	2,495,470
	7	6년 이상 7년 미만	2,669,320
	9	8년 이상 9년 미만	2,777,750
	11	10년 이상 11년 미만	2,884,710
	13	12년 이상 13년 미만	2,988,900
	15	14년 이상 15년 미만	3,092,870
	17	16년 이상 17년 미만	3,198,320
	19	18년 이상 19년 미만	3,312,470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중증장애인재활지원사업 예산지급기준

본 지원사업을 통해 교사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본 재단에서 책정한 지급 기준표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교육청이 발행한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을 다니는 특수교사의 수는 295명이다. 따라서 순회교육을 다니는 교사들 각자의 연차에 비례하여 본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다. 또한 교육부 연차보고서는 광역시 별로 특수교사를 증원하는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확한 인원 수가 아직 명시되지 않았으나 다른 광역시들이 평균적으로 20-30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구 수가 더 많은 서울의 특성상 40명을 최소 보충 인원으로 잡아 40(명) X 2,285,180(원) = 91,407,200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 인건비로 상정한다.

2) 사회성 및 직무지도 프로그램 구성비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 사업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채용 마련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산하의 능력개발원, 그리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교육을 수행 중인 장애인들에게 지급된다. 한국장애

인고용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까지 참여시 장애학생당 받을 수 있는 추가 지급액이 있으므로 해당 패키지 사업 신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면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서도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본 정책의 사회성 교육과 직무지도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 내 복지관들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의 연계 하에 구성될 계획이므로 고용공단 지역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위그림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각 학교의 통합학급에서 따로 수행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현재 처해있는 환경, 생애주기, 욕구, 강점 등을 기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맞춤형 지원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센터와의 논의를 통해 각 학교 별 특수학생 수에 맞춰서 책정하고 본인 부담과 기관 부담 비율은 각 지역 기관장한테서 정확한 수치 통보가 올 시에 상정한다.

4. 정책제안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현 정책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3가지 있다. 첫 번째는 기수행하고 있는 교내 프로그램과의 충돌, 두 번째는 교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중복,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특수교육 전담 교원의 인력 부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자료 분석과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특수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1) 기수행되고 있는 서울시 학교 내 프로그램과의 충돌

현재 서울시 내 고등학교 몇몇은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거나 있다면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탁교육으로 실시되는 만큼 후속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학생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거점학교 중 하나인 경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점학교 입에도 불구하고 교내 인력으로 특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경기도 특수교사에게 위임을 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거점학교 입에도 불구하고 타학교와 마찬가지로

지로 타학교 교사의 순회교육에 교육을 맡기고 있다보니,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성 교육이 기수행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 수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국한되며, 거점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교육이 수행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충동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체계성 있는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학습환경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교내에서의 행정업무도 어느정도 간소화 될 것이라 판단된다.

2) 교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중복

많은 사회복지기관 및 장애인복지기관 등에서 발달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현실에서 각 시도별 교육청 주관으로 비용을 할애하여 사회성 증진 및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석 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인터뷰를 하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인력문제와 재화보다는 교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직무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은 학교보다는 지역사회 내 복지관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특수학교가 아닌 이상 교내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직무교육 시설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 일반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10%도 안 되기 때문에 교내에 그런 시설을 짓는 것이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청구하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하기 보다는 교외에 이미 마련된 시설을 구비한 지역사회 복지관들의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본 정책이 시행되는데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사회성 및 직업교육이 실시되는 학교가 위치한 주변의 복지기관들과 연계하여 교육 및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연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만 교육청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연계가 가능한 학교는 최소의 지원금만을 할애한다면, 많은 비용 투자가 없이도 해당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행중에 있다한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프로그램 존재여부를 모르는 발달장애학생 및 가정들이 많다.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학생과 매칭시켜 준다면 개인 부담 및 시도별 교육청이 부담해야할 교육비 절감이 됨과 동시에 학생이 받는 혜택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배 이상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된다면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에 집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IEP를 봐주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고 판단한다.

3) 특수교육 전담 교원 수 부족

경기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분만 하더라도, 서울시 내 5개의 구를 담당하여 순회교육을 돌고 있다. 만약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사회성 및 진로교육을 확충하게 된다면 이를 소화할 특수교원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책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정책안에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수교원을 더 채용하는 것 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 경력을 쌓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연계한다면 더 좋은 교육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내용 중 다수의 교원들이 사회복지사분들과 복지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받고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특수교원의 인력문제 해결과 더불어 특수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언급한 대책들이 시행된다면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회성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유아기이다. 늦어도 초등 과정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 교육과정에 편입시키기에는 자원 및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직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게 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발달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서울시 내의 발달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성 및 직무교육을 통해 발달장애학생들의 취업 후 직장환경에 대한 적응도와 만족도가 증진한다면 정책에 대한 효과입증에 따라 전 교육과정에 사회성 및 진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IV. 기대효과

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특수학생들의 사회성을 증진한 덕분에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수월할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장애인들도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타 장애인들은 사회로 진출한 특수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직업 환경이 어렵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듯,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임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장애를 수용하고 본인들 역시 사회참여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장애인들은 자존감 향상을 통해 사회적 유능 감을 발달시키며 사회참여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향상한다. 이렇게 향상된 사회적 유능 감은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의 원동력으로써 작용한다(김도희, 2019). 사회에 진출한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된다. 장애인들이 단순 사회활동 인력을 넘어 엄연히 경제력을 갖춘 중요 인력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동이 지속될수록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점차 달라져 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일반인들 간에 부정적 감정 없이 화합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시행은 학교 현장 내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교육을 같이 하는 교육이기에, 일반 학생들은 통합교육을 통해 특수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발전을 직접 지켜보고 장애인들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키워갈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된 이전 연구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효과들이다. 단순 통합교육뿐 아니라 직무교육 및 사회성교육을 병행하는 발달장애학생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들과의 상호 유대감은 증진될 것이다. 이 일반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보았던 장애인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타인들에게 언급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 본 정책의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다른 지역들 역시 이 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교육 &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춘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민. 2021. 장애인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탐색 -통합교육 여부에 따른 사회연결망 분석-. 발달장애연구 제25권 제2호. pp. 191~212.
- 김도희. 2019.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 사회참여, 차별경험의 매개 및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7호. pp. 377-386
- 김민영, 홍성두. 2016. 발달장애 고교 졸업생의 성인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평생학습사회 제12권 제7호. pp. 79~100
- 김예성, 하용용. 2021. 지역사회 주민들의 발달장애인 접촉경험과 인식 연구. 발달장애연구 제25권 제2호. pp. 137~159.
- 서화자. 2014.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실태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3권 제4호. pp. 287~316.
- 서희. 2010.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에 대한 장애학생 학부모의 인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화. 2012. 통합교육 문제점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pp. 91~113.
- 천안인애학교. 2001. 흥미교과별 통합교육을 통한 정인지체학생의 사회적응능력 신장. Vol.2001. pp. 83~95.
- 최희철. 2020. 지체장애인의 자존감과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교차지연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제63권 제2호. pp. 27-44
- 황인선, 임경원. 2019. 통합학급 중학생에게 들어본 통합교육 경험과 그 의미. 통합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pp. 27~57.
- 황윤의, 유애란. 2016. 각 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실태 및 만족도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7권 제1호. pp. 209~238.
- Lukes. S. 1973. Individualism. Oxford: Basil Blackwell.

부록

〈부록 1〉 고용노동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비 지급표

구분		훈련생 1인당 지급 기준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취성패 참여자 월 28.4만원)	
	훈련장려금	교통비	월 5만원
		식비	월 6.6만원
교사수당(공공훈련기관에 한함)		훈련생 1인당 2만원(최고 10만원 한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상자별 정책: 장애인

〈부록 2〉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단계별 프로그램)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문 상담 (최소 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 ·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용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수립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시 (5만원 또는 10만원) 추가지급
↓		
2단계	직업능력 향상	
12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 직업훈련 · 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등 장애특화과정 훈련 ·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내일배움카드 발급연계 	훈련참여수당 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3개월 ~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직무분석 및 적합일자리 동행 면접 · 2유형(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 	취업 후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일정요건 충족시)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장애인지원

〈부록 3〉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신청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

1. 작성자 정보

작성일	년 월 일	작성기관	
작성자		연락처	

2. 복지서비스 제공(연계) 계획 및 기관 정보

1) 바우처 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비용 (단가*횟수)	본인 부담금	제공기관	담당자	연락처

2) 공적 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출처: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발달센터사업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초등, 중등교육 개편을 통한 장애인 인권 및 역량 강화
결과	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대상 사회성 및 진로교육

2. 연구방법

계획	2가지의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정책 내용 및 방안 도출 1) 문헌조사 2) 인터뷰를 통한 실무자 의견 종합
결과	2가지의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정책 내용 및 방안 도출 1) 문헌조사 2) 서울특별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학교 내 특수교사 대상 인터뷰 실시 (질적연구)

3. 정책내용

계획	사회성 교육과 직무 역량 교육을 초·중등 교육기간 동안 실시하여 인권 및 직무역량 강화 1) 초등 : 사회성 교육 위주의 교육 2) 중등 : 사회성 교육과 더불어 진로교육을 병행
결과	사회성 교육과 직무 역량 교육을 고등학교 내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1) 고등 1~2학년 : 사회성 교육 2) 고등 3학년 : 지역사회 연계 및 교내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직무역량 교육

4. 적용방안

계획	<p>초등 과정 (사회성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내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대상 사회성 교육 실시 - 시도교육청의 투자로 사회성 교육을 체계화하여 일관성 있는 사회성 교육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음 <p>중등 과정 (사회성 교육 및 진로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교육(IEP)을 통해 부족한 부분 위주의 사회성 교육 실시 - 개인이 선호하는 직무에 맞는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
결과	<p>고등학교 1~2학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 교육 실시. 기본예절, 자존감, 의사소통 3분야의 교육이 공통적으로 실시되며, 부족한 부분은 IEP 교육을 통해 보완 <p>고등학교 3학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에 따라 직무교육 혹은 대학진학에 필요한 맞춤 교과교육 및 특강 실시

5. 기대효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얻음 <p>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에 준하는 경제능력 및 사회성을 가진다면, 장애를 단순한 차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을 수 있음</p>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얻음 <p>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에 준하는 경제능력 및 사회성을 가진다면, 장애를 단순한 차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을 수 있음</p>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 및 보호자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정책
: MYC(Mind Yourself Connect)

정책제안 발표자료

MYC : Mind Yourself Connect

※ 본 게시물은 한국장애인재단의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에 참여한 제안팀의 저작물로 무단 수정, 복제, 공유 및 배포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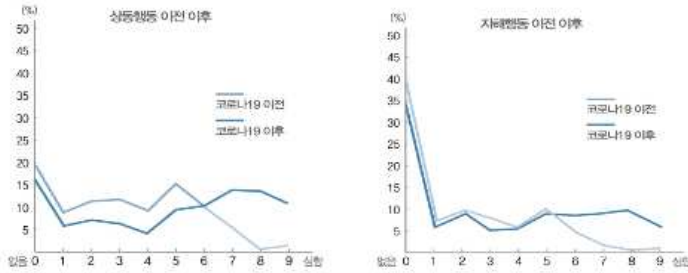
목 차



- ① 정책배경
- ② MYC란?
- ③ 웹사이트 설정배경
- ④ 정책 대상
- ⑤ MYC 단계
- ⑥ 해외사례
- ⑦ 홍보방안
- ⑧ 자원조달방법
- ⑨ 기대되는 효과

1. 정책배경

- 장애인 대상 멘탈 헬스케어 서비스 부족
- 코로나19이후 발달장애인의 상동 및 자해행동 증가
-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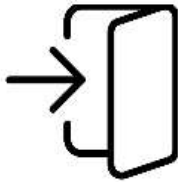
2. MYC 란?



-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과 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탈 헬스케어 웹 사이트

3. 웹사이트 설정 배경

✓ 접근 용이성



✓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

✓ 상시성



✓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4. 정책 대상 - ①

✓ CHARACTER



학령기 발달장애아동
(만7~18세 아동)

✓ PAINPOINT

- 감염에 대한 공포가 심해 쉽게 외출이 어려움
- 코로나19 이후 시설폐쇄로 서비스 욕구충족 어려움
- 코로나19 이후 상동 및 자해행동 증가

✓ BACKGROUND

- 발달장애아동 A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
- 이전처럼 복지기관에 자유롭게 갈 수 없고, 적절한 재활치로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립감으로 인해 불안정.
- A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로 쉽게 집밖을 나서지 못함

✓ NEEDS

- 항상 가던 복지시설에 갈 수 없어 답답
- 전염병에 감염될까 두려움
- 나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해 화가남

4. 정책 대상 - ②

✓ CHARACTER



- 주양육자(최대2명)
- 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인 주 양육자도 서비스 대상

✓ BACKGROUND

- 보호자B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시간 증가로 부담이 커짐
- 이상행동의 증가로 압박감과 스트레스증가
- 방역지침으로 바로 해결이 불가능

✓ PAINPOINT

- 코로나19 이후 복지시설 폐쇄로 양육부담 가중
- 우울감 증가
- 장애아동의 이상행동에 대한 정보부족

✓ NEEDS

- 24시간 동안 아이 돌봄이 막막
- 이상행동 시 대처 불가
- 개인 시간 부재로 우울

MYC

I. 자가진단

II. 상담지원

III. 오프라인 연계

I 단계 - 자가진단

발달장애아동 이상행동 자가 검진표

환자 이름: _____

성별: _____

번호	차별 항목	a. 심각도					b. 빈도			
		매일 1회	1주 1회	2주 1회	3주 1회	4주 1회	매주 1회	매주 2회	매일 3회	매시간 4회
1	자신의 신체를 깨우는 행동(이빨자국이 얼마간 보일 정도로 세게 깨울거나, 피멍이나 피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2	머리를 손 또는 다른 신체부위로 때리거나, 벽에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이마를 무릎에 갖다 박음; 사물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혹은 사물에 갖다 박는 행동 (예컨대 벽에 머리를 할 박거나,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림)									
3	[머리를 제외함] 자신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손 또는 다른 신체부위로 때리거나(예컨대 스스로를 발로 차거나, 밟 또는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림, 사물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혹은 사물에 갖다 박는 행동)에, 목대기로 다리를 때린다거나 주먹으로 벽을 세게 칠									

- 발달장애의 문제행동의 빈도와 심각성을 측정
- 영역별 점수 비교를 통해 자해, 상동행동, 공격적/파괴적 행동 중 어느 영역에서 두드러지는지 파악

I 단계 - 자가진단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의 멘탈헬스 자가검진표

✎ 점서관련 질문지

우울증판

지난 2주일 동안 당신은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습니까?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	매일동안 방해받았다	7일 이상 방해받았다	거의 매일 방해받았다
1 일 또는 여기 활동을 하는데 힘이 나 줄거움을 느끼지 못함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3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음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3
3 잠이 없거나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움,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잘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3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음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3
5 입맛이 없거나 과식함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3

- 1차 검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신체 증상, 자살 위험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검진
- 2차 검진: 1차 증상이 심각할 경우 심층적인 검진 진행, 공황장애, 우울증, 범불안장애, 외상 후 장애, 불면증 등 구체적인 정신 스트레스질환에 대한 검진

II 단계 - 상담지원

✓ 개인상담



- 전문가와 1:1 심리상담 치료, 비대면 미술 심리치료 등
- 돌봄 부담을 경험하는 보호자들에게 맞춤형 상담제공

✓ 집단 상담



- 전문가와 1대 다수 심리상담치료
- 보호자들의 공감 형성
-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향상을위한 상담

III 단계 - 오프라인 연계



- ✓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 아동 및 보호자

→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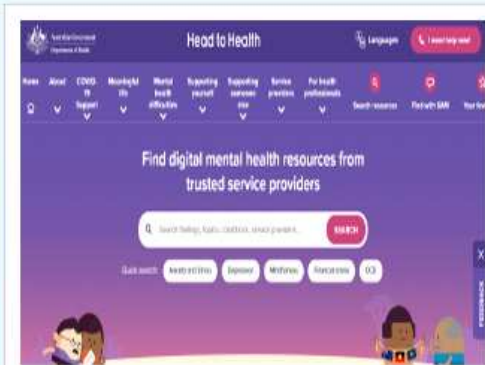


- ✓ 2단계의 비대면 심리 상담 중 심각한 우울증, 자살 고위험군 내담자

→ 즉시 전문병원 및 상담 기관의 오프라인 연계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과 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 MYC(Mind Yourself Connect)

5. 해외사례



✓ 호주 - Head to Health 웹사이트



✓ 일본 - Elmosaka 웹사이트

6. 홍보방안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과 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 MYC(Mind Yourself Connect)

7. 재원조달 방법

1) 정부지원

〈표 7-1〉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및 장애인복지 예산

(단위: 억 원, %)

구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지출(A)	825,269	901,536	76,267	9.2	
사회복지(B)	695,618	761,317	65,699	9.4	
장애인복지	금액(C)	32,474	36,662	4,188	12.9
	비중	C/A	3.9	4.1	
		C/B	4.7	4.8	

※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 1,536억 원 편성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 자료

6. 재원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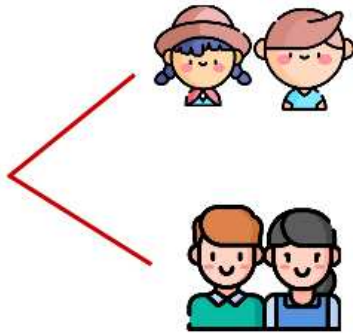
2) 민간기업과의 협업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 기대되는 효과



- 비대면 상담 서비스 효과를 알리는 역할
- 발달장애 아동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 정신건강 증진 도모



- 대한민국 멘탈헬스 케어를 대표하는 웹사이트로 자리매김

감사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과 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 MYC(Mind Yourself Connect)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정책제안 발표회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과 아동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 MYC(Mind Yourself Connect)**

제안 3팀

〈제안 개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정신건강 관리에 취약한 발달장애 아동과 그들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이용 가능한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정책을 제안함.

I.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학교 수업을 비롯하여 모든 대면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사람과 사람이 마주할 일이 줄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색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생활로 인한 물리적 변화로 정신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 무기력증을 뜻한다.⁶⁾

팬데믹 상황은 장애 아동 당사자의 심리적 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7) 자폐성 장애 아동의 경우 범유형으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및 기저 질환에 더 많이 시달릴 수 있고, 등교 제한 및 폐쇄된 공간에서의 머무름 등 일상생활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코로나19 이후 도전적 행동에 해당하는 자해 행동, 상동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수면 패턴의 문제, 퇴행 등이 조사되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 집착, 우울, 사회적 단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으로 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이 폐쇄되며 발달장애 아동의 양육 및 케어는 고스란히 보호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장기간 돌봄에 따른 심리적 소진’이 53.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양육 스트레스가 이전보다 높다는 자료를 통해 보호자들이 현 상황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지난해 3월과 6월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보호자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낮은 생활 만족도를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멘탈 헬스케어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작년 6월, 정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으나 심리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주변 사람과 문자, 전화를 하는 등 일반적인 권고사항만 실렸을 뿐 구체적인 지침 및 지원 서비스는 없었다.⁹⁾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립되어있는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은 팬데믹 상황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역

6) 코로나 블루,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7)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14쪽.

8) 이경아 외 3인,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온라인 공동체 상호작용과 성장과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6, No. 4, 2014. 11, pp. 181-205.

9) 반기웅, 온통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 어디까지 왔나, 경향신문,]

2021.01.10.,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53140>.

시 그에 맞는 적절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 접촉이 줄고, 디지털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10)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건강 서비스 중 정신건강 영역에 속한 서비스 전반을 가리키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이용가능성이 크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에 의하면 50%가 넘는 발달장애인이 코로나19 감염위험 때문에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다. 11) 실제 장애인의 경우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코로나19 치명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일부 발달장애인의 경우 감염 위험이 더욱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집 밖을 나서기 두려워하는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들에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거리가 멀어 대면 상담 진행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도 부담 없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대면 서비스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 여러 가지 편견으로 인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적절한 멘탈 헬스케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는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들의 거부감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의 효과는 어떨까? 12) 연구마다 효과의 유무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미 10년 전 우울, 불안과 같은 경증 질환에 온라인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있음이 다수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심리치료사의 원격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원격 심리치료의 방식과 향후 지속적 실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13) 국내 연구 역시 원격 심리치료(인터넷 웹사이트, 화상상담, 가상현실 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가 사회불안, 상태 불안 등의 하위 요인에서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14) 15)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대면 진료 시 입을 다물던 당사자가 비대면 상황에서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인

10) 어유경,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봄호 Vol. 16, pp. 5~15.

11) 문예성, 안호균, 장애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사각지대... 부모들은 '한숨', 뉴시스, 2021.05.2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0_0001447435.

12) 어유경,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봄호 Vol. 16, pp. 5~15.

13) 최설, 코로나 시대의 건강심리 서비스: 원격 심리치료의 효과와 이슈,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1. Vol. 26, No. 1, 1-20 .

14) 위와 같음.

15) 김양균, “정신과 비대면 진료 효과적일 수 있다”, ZDNet Korea, 2021.05.27.,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223258>.

다. 비대면 상황에서 더 친근함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한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본 팀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블랙’¹⁶⁾을 경험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대면 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 서비스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팀은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비대면 멘탈 헬스 케어 프로그램 구축(MYC)’을 제안한다. 해당 정책은 하나의 웹사이트 안에서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에서는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자가검진을 제공하여 상시적으로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에서 본격적인 멘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2단계를 다시 아래 세 가지 종류의 지원 서비스로 나누어 제공한다.

- ①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는 심리 정서 지원
- ② 사회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는 자조 모임 지원
- ③ 팬데믹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 지원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및 시설 맵 서비스,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은 더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가 안정된 이후에는 우리의 정신건강 관리가 코로나19 상황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팀의 해당 정책이 현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장애인과 그들의 보호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체제 구축을 이루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6) 한 토론회에서 장애인 당사자 A씨는 코로나 19 상황을 모든 것이 암담해진 ‘코로나 블랙’이라고 정의하였음.

II.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의 대상

본 정책은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멘탈 헬스케어 온라인 프로그램 웹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은 중앙장애 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정의한 만 7-18세 아동을 의미한다. 학령기는 아동의 신체, 정서, 사회적 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서비스의 주 대상자의 연령대를 학령기(만 7-18세)로 설정하였다. 또한 보호자는 발달장애 아동의 주 양육자를 의미한다. 보호자는 최대 2명으로 제한하며,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인 주 양육자도 서비스의 대상에 해당한다.

2. 플랫폼을 웹사이트로 설정한 배경

본 정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웹사이트(Website)로 설정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웹사이트로 설정한 이유는 접근 용이성과 상시성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도에 발표한 우리나라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률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은 명실상부 웹사이트일 것이다. 웹사이트의 주소나 이름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접근 용이성이 높고,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플리케이션보다 웹사이트가 본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멘탈 헬스케어 서비스는 한 시라도 빨리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서비스보다도 빠르고 쉬운 접근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과 그 보호자의 멘탈 헬스케어를 주 서비스로 설정한 본 정책은 접근 용이성이 가장 좋고 상시성을 특성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주요 플랫폼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3. 웹사이트 주요 기능

1) 1단계 - 자가 진단 서비스

(1) 발달장애 아동 이상행동 자가검진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발간한 '팬데믹(코로나19)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¹⁷⁾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이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전적 행동은 상동행동, 자해 행동, 타해 행동, 충동적 행동, 정서불안 행동, 폭식증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행동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고, 발달장애 아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김민경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은 “자폐 성향이 클수록 일상의 패턴이 무너지면서 심리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게 되며 자해 및 타해 행동 같은 도전적 행동이 심해진다.”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통학 중지, 복지관 휴관, 활동 지원사 방문 중단 등의 조치가 반복되다 보니 자해 및 타해 행동이 심화되었다.”라고 언급했다.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은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검진 및 치료하기 때문에 본 정책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이상행동을 쉽고 빠르게 자가검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감염병 발생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타인과 접촉 없이 쉽고 빠르게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을 검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발달장애 아동의 이상행동 자가 검진표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행한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치료 가이드라인¹⁸⁾을 사용한다. 검진표는 발달장애의 문제행동 측정에 특화된 측정 도구로, 빈도와 심각도 두 차원에서 문제행동을 각각 평가할 수 있다. 총점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문제행동의 심각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도 가정에서 쉽고 빠르게 이상행동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의 멘탈헬스 자가검진표 18)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발간한 ‘팬데믹(코로나19)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¹⁹⁾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74.8%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게 달라진 감정은 ‘답답함’, ‘분노’, ‘무기력’, ‘불안’, ‘두려움’, ‘외로움’, ‘흥분’, ‘슬픔’, ‘절망’ 순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정서 불안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 역시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적으로 더 많이 소진되었고, 외출과 치료 등 필수 활동마저 제한되어 보호자의 정신적인 건

17) 김봉년 외(2018).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치료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18) 김환영 외(2017). 정신건강 자가검진 앱 개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19) 조향숙 외(2021). 팬데믹 시대(COVID-19)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이 더욱 나빠졌다. 실제 발달장애인 보호자 중 27.2%가 장기간 돌봄에 따른 휴식 부족,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의 양육 스트레스(5점 척도)는 평균 3.08점에서 3.31점으로, 우울(4점 척도)은 평균 1.66점에서 2.13점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정책은 발달장애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쉽고 빠르게 멘탈헬스를 자가 검진하도록 유도하고, 상담 및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자가검진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자가검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염병 발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타인과의 접촉 없이 검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자가검진은 1차 자가검진과 2차 자가검진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 자가검진에 사용되는 척도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였다. 해당 자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신체 증상, 자살 위험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정신건강 전반에 대해 위험 영역 선별을 목표로 한다.

2차 검진은 국가 정신건강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질환별 자가검진 척도를 참고하였다. 2차 검진에서는 공황장애, 우울증, 범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등 구체적인 정신 질환에 대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중증의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즉시 의료기관과 연결해주는 연계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2) 2단계 - 상담 지원 서비스

(1) 심리 정서 지원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 아동들은 물론, 그들의 보호자도 심리적으로 지치고 있다. 학교와 장애인복지시설은 무기한 임시 폐쇄 상태에 놓여있어 발달장애 아동들은 적절한 재활, 치료, 및 교육을 받지 못하며 고립되어있는 실상이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코로나 19 경험과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정신 질환에 가장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는 66.3%가 우울감을, 74.1%가 불안감을 느끼고, 지적장애인들은 49.2%가 우울감을, 그리고 65%가 불안감을 호소하고있다²⁰⁾. 장애인 보호자의 경우, 돌봄노동 시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했고,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점점 커져 가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매우 많이 걱정한다”고 답한 장애인

20)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 장애유형별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았고, 감염위험의 불안감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중단한 비율은 44.1%나 된다. 이에 발달장애 아동과 그의 보호자를 위해 지속적 상담 제공이 필요하며 본 정책은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① 개인 상담

본 프로그램은 크게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개인 상담은 전문가와 1 대 1로 심리상담 치료가 진행되며, 보호자의 경우,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 보호자들에게 대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팬데믹 상황에 필요한 비대면 원격 상담 서비스는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는 보호자 개인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 해소와, 보호자로서 마주하는 곤란함, 갈등, 스트레스 등을 완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개인 심리상담은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상담이 제공된다.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전문가의 얼굴과 행동을 보며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상담을 진행하는 데 중요하지만, 현재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는 즉각적인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비대면 화상 원격진료로 상담 치료를 진행할 경우, 전문가는 발달장애 아동의 표정과 행동을 포함한 비언어적 표현들을 관찰할 수 있고 더 나은 수준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인 'MySigns'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장애인의 심리적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아 손쉽게 업로드하고, 전문가는 언제나 열람가능 하다. 전문가는 장애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상담을 준비한다. 이 사례를 기반으로 본 팀은 장애인 대상의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보았고, 원격프로그램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대면에서만 이루어졌던 미술치료와 같은 특수치료도 시도해볼 수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겪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디지털 미술 심리치료가 진행된 선례가 있다. 이 경험을 참고하여 장애인 대상의 비대면 미술 심리치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집단 상담

집단 상담 서비스의 경우, 전문가의 지도하에 보호자에게 소규모 집단 상담을 제공한다. 집단 상담은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더 발현되는 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증재 방법, 권

리주장과 같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위한 상담도 이루어진다. 집단 상담은 심리적으로 지친 보호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장애인 가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내 마음 테라피’를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 보호자는 “자신의 아이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성향을 찾아보고 내면을 돌아보며 자아 존중감을 찾게 되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여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자들에게 집단상담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자조 모임 지원

자조 모임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끼리 모여 본인의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장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21)

현재 복지관, 단체 등 기관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자조 모임이 활동 중이다. 22)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맘카페 등을 통한 자생형 자조 모임도 활동하고 있다. 그 예시로 영, 유아 발달장애 엄마 모임 ‘무지개 모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조 모임의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과 홍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약 19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있는 맘카페인 ‘거북맘 vs 토끼맘’에서 ‘자조 모임’과 ‘모임’을 검색해보았을 때 지역별로 자조 모임을 구하는 글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p>일산.. ad, 경계선아이 자조모임 (마감할게요) 21.09.01. 조회 262</p>	<p>틱있는 아이들은 친구모임있나요? [7]</p>
<p>낙성대나 서울대입구쪽 토끼맘 부모님들 자조모임 있을까요? 21.03.26. 조회 91</p>	<p>혹시경기지역느린맘모임?이런게있나요? [24]</p>
<p>경기북부지역 자조모임 있나요? 21.01.29. 조회 230</p>	<p>아이가 말이 느린데 엄마들 모임 [11]</p>
<p>인천에 자조모임 없나요???? 19.11.15. 조회 415</p>	<p>서로를 보듬고 성장할 수 있는 모임 [5]</p>
<p>토끼아이를 둔 부모들의 자조모임이나 집단상담같은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19.05.24. 조회 421</p>	

〈그림 1〉 ‘거북맘 vs 토끼맘’ 카페 내 ‘자조 모임’검색 결과

- 21) 황현민,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자조모임 활동과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7, 52쪽.
22)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2p.

따라서 본 팀은 현재 활동 중인 장애 아동 및 보호자 자조 모임을 범주화하여 자조 모임을 홍보하고, 해당 모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활동 중인 자조 모임 현황을 파악하여 전산화하고, 웹 페이지를 통해 자조 모임 소개를 담은 브로셔를 배포한다면 자조 모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독일은 독일 전역의 자조 지원센터와 자조 홍보,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NAKOS를 운영 중이다. NAKOS에서는 색깔별로 자조 모임의 주제, 찾고 싶은 지역, 자조 지원센터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 자조 모임 단체도 링크되어 있다.²³⁾ 또한 자조 지원을 위해 지방 정부와 건강보험, 의료보험사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조 모임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확산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법으로서 자조 모임 지원을 보장하여 자조 모임이 유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정보 지원

① 복지기관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맵 서비스

발달장애 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 욕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가족 지원 서비스 세부 항목 중 '장애 자녀 활동 지원, 돌봄 지원 또는 '양육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장애 자녀를 위한 여가문화체육 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 계절학교 등 장애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²⁴⁾

이에 집 주변 비대면 여가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지관이나 시설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맵 구축을 제안한다. 실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질병관리청과 '네이버'는 협업을 통하여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할 수 있는 '네이버 우리 동네 백신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잔여 백신을 보유한 동네 병원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잔여 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맵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의 정보를 발달장애아동과 보호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복지기관이 비대면 체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복지기관과 학교가 축소 운영을 하거나 폐쇄한 상황임에도 몇몇

23) 노승희, “독일, 자조모임 지원 ‘법’으로 명문화 부러워”, 에이블뉴스, 2010.09.02.,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00902161314282384>.

24) 김경숙,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부모의 어려움과 삶의 질 인식 및 욕구 조사」, 통합교육 연구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2016, P.239.

복지기관들은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특히 구리시 장애인 복지관은 꽃놀이 키트를 배송하여 비대면으로 꽃놀이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활동은 복지기관이나 학교에 갈 수 없는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기관들이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맵 서비스가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전염병 서비스 정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적 서비스와 기관, 시설을 통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행 발달장애 서비스 제공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하게 도입된 추가 지원 서비스 4종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3명 중 2명은 몰랐고,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발생하는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초·중·고 발달장애 학생에게 추가로 활동 지원 서비스 특별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명 중 1명(모수 392명)은 지원 사실을 몰랐으며, 알더라도 16.3%는 감염 공포로 인해 사실상 이용하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전염병 관련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팀이 제안한 웹페이지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3단계 -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3단계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해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 아동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단계 심리 정서 서비스인 비대면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심각한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의 내담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전문 병원 및 상담 기관의 오프라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단계는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들을 연계해줄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심리상담 연계 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미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²⁵⁾ 광주광역시의 경우 24시간 상담 전화를 통한 상시 상담과 정신과전문의인 '마음 건강주치의' 심층 상담을 연계 지원하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대상자들의 정신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심층적

25) 황태종, 광주광역시, 코로나19 위기 시민 마음 건강 회복 위해 심리방역 총력, 파이낸셜 뉴스, 2021.09.22.,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12102>.

인 케어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4) 조직 구성

본 정책을 구체화하고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표 3>과 같이 담당업무와 전담 인력이 확충되어 조직화 되어야 한다.

<표3> 조직의 주요 업무내용

구분	업무
정신건강 상담자	클라이언트 상담 및 치료
DB 관리자	웹사이트 DB 관리
	로그 및 백업 관리 체계 수립 및 수행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수행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
	데이터베이스 장애 대응
	보안 및 침해 대응 체계 수립
책임 관리자	검사 문항 관리
	검사 결과 관리
	상담센터 관리
	정신건강 정보 관리
	코드 관리
	공지사항
책임 개발자	신규 및 변경 업무 영향 분석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주요 모듈 개발
	CODE Inspection
	개발 테스트
	관련 문서 현행화
행정인력	예산 관리
	결산 관리
	업무 관리
	서비스 연계
	시설 연계

5) 홍보 전략

본 정책은 클라이언트의 활발한 참여가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홍보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부 기관을 통한 홍보로 이미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 하고있는 보건복지부, 국립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국가 트라우마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 국가 정신건강 정보포털, 정신건강 교육기관 등을 통한 홍보이다.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는 두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통한 홍보이다. 지역사회 복지관 뿐만 아니라 지역 센터 등에 정책 안내 책자를 제공하여 기관을 찾은 사람들에게 더욱 가시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발달 아동 보호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맘카페 등의 커뮤니티는 이슈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서비스 제공이 가장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6) 해외 사례

국내에는 정부의 주도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성화되어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찾아볼 수 없으나 해외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신건강 관련 온라인 웹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1) 호주의 Head to Health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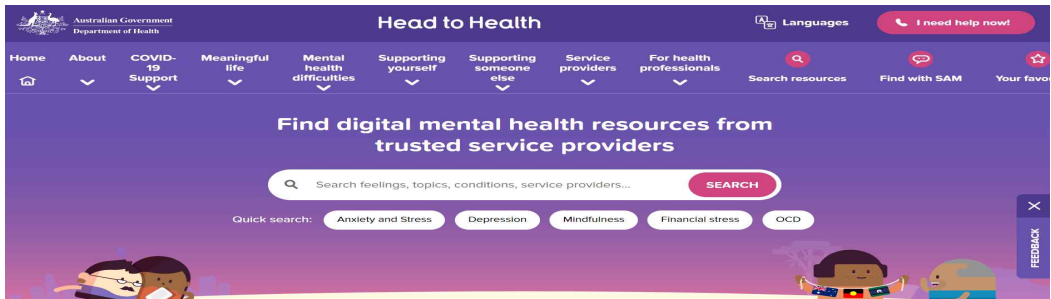
2012년 호주 정부는 디지털 정신건강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E-정신건강 전략을 수립을 통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전문적이면서도 접근이 용이하고 통합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였고, 대표적인 서비스가 디지털 정신건강 포털 사이트인 Head to Health이다.

Head to Health는 호주 보건부가 2017년 개설하여 운영 중인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포털로,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들로 연결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서비스이다. 다양한 집단(연령, 성별, 인종, 직업 등)에 최적화된 정신건강 콘텐츠와 관련

26) 어유경.(2021).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과 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 MYC(Mind Yourself Connect)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1년 2월 현재 호주 내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635개의 디지털 정신건강 리소스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2〉 Head to Health 온라인 웹사이트

(2) 일본의 Elmosaka²⁷⁾

일본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치료교육이나 취업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Elmosaka'를 운영 중이다. Elmosaka는 오사카에 거주하며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LD(학습장애), ADHA(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등의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면담을 제공한다. Elmosaka를 통해 상담 전화와 출장 면담을 신청하도록 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취업을 지원해주며 발달 노트를 작성 및 배포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종합적 시책을 시행 중이다.



〈그림 3〉 Elmosaka 온라인 웹사이트

27) 권용수, '치료에서 취업까지 종합시책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일본 오사카)', 2018.6.20., <https://www.si.re.kr/node/59698>, 접속일 2021.9.16.

7) 적용방안

예시 1.

발달장애 아동 A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변화를 많이 겪었다. 이전처럼 복지 기관에 자유롭게 갈 수 없고, 적절한 재활치료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어 심리적 고립감도 생겨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다. 복지기관에서 전문가 선생님과 만나 적절한 활동량을 채우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지만, A는 비장애인보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 쉽게 밖에 나가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A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온라인 멘탈 헬스케어를 이용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어떤지, 점심때의 기분 등 상태를 간단하고 손쉽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체크를 하면, 전문가가 바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도움으로 A는 자신의 기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올릴 수 있다. A는 약속된 시간에 전문 심리상담가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상담 전까지 A의 심리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A는 코로나19 이후로 친구들과 거의 교류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A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해 전문가가 함께하는 소그룹 온라인 소통의 장을 통해 A와 친구들은 서로 일상을 나눌 수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고립감과 압박감을 줄일 수 있다.

예시 2.

A의 보호자 B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A의 발달 상태가 걱정되고, 이상행동이 증가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하는 B는 굉장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때, B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가 검진표를 다운받아 스스로 작성하고, 자신의 심리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집단 상담에도 참여하여, 다른 발달장애 아동 보호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A의 문제행동이 걱정되지만 마땅한 중재 방법을 교육받은 적이 없어 곤란한 B와 같은 처지에 놓인 보호자들을 위해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에게 코칭받을 수 있다. B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지만 제공되는 사용법을 참고할 수 있으며, 손쉽게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 신청, 필요한 정보 다운로드 등 전보다 쉽게 필요한 항목들을 찾고 활용할 수 있다.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매칭된 다른 보호자들과 온라인 자조 모임도 주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집단 상담에서 터득한 문제행동 중재법에 대해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알기 전에는 혼자 모든 정보를 찾아봐야 했고, 팬데믹 상황으로 심리

적 여유도 없어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놓였던 B지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공감하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만나 힘을 얻고 외롭게 싸우지 않아도 된다.

8) 재원 조달 방법

(1) 정부 지원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은 크게 정부 및 민간의 협력, 그리고 각 지역 시설과의 협업이 있다. 먼저 정부 소속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돌봄 지원, 소득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총예산은 약 3조 7천억 정도로, 3대 사업 (소득보장 사업, 장애인 선택적 복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이 지출되며, 본 팀의 제안 정책은 장애인의 선택적 복지에 '장애아동 가족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에 쓰이는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발달장애인의 부모 또는 보호자 대상의 상담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해당 상담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주어진 예산 6,079억 원 중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예산이 약 23억 원이 편성되었다. 해당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의 말벗이 되어주고 인지기능을 돕는 AI 스피커와 신체리듬을 측정하는 사물인터넷 센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진 경향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보인다²⁸⁾. 따라서 디지털 돌봄 사업과 유사한 본 팀의 정책 제안은 장애인복지시설 범주에서 정부지원을 받고자 한다.

(2) 민간기업과의 협업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대상 복지 또는 사업에 지원을 한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대상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직업 탐색 및 직무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²⁹⁾. LG그룹 4개 계열사에서는 LG상남 도서관과 2006년부터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함께해, 현재

28) 남찬섭,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장애인 복지 분야, 복지동향', 2020.11.01.,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42826> 접속일 2021.09.22.

29)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위해 '발달장애인직무교육 공동 업무 협약' 체결', SKInno News, 2018.07.26., <https://skinnonews.com/archives/34202> 접속일 2021.09.11.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과 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 MYC(Mind Yourself Connect)

2,000여 대의 음성도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스피커를 기부했다³⁰⁾. 이처럼 본 팀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민간기업들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 또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국민 모두의 기관이다³¹⁾. 해당 기관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첫 번째 목표인 경제적 빈곤퇴치를 위한 저소득 시민 지원, 냉난방기기 설치 등의 사업부터 16번째 목표인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지원한다. 본 팀의 정책은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항목의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항목으로 심리 상담치료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9) 시행 및 협력 기관

기업들은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지원, 봉사활동, 기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MYC 멘탈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앞서 자원 조달 방법에서 언급했던 멘탈 헬스케어, 비대면 상담 서비스, 장애인 복지 등과 같은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

(1) 민간 기업과의 협력

본 팀의 정책인 멘탈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LG화학을 생각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LG화학은 자사 직원들을 위한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LG화학의 경우, 비대면 심리상담 프로그램 '더 좋은 마음 그린'을 총 50여 개 사업장을 통해 운영하며 직원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제주항공

30) 이승재, 'LGU+ 임직원들, 시각장애인 '기업 사회적 책임 광고'제작 참여', 인더뉴스, 2021.06.18., <https://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36319> 접속일 2021.09.22.

31)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s://chest.or.kr/lf/intrcn/initBranchintrcn.do> 접속일 2021.09.22.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과 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 MYC(Mind Yourself Connect)

역시 직원들의 멘탈 헬스를 위해 온·오프라인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있다³²⁾.

(2) 멘탈 헬스케어 기업과의 협력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멘탈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과 협업도 기대할 수 있다. 직원들의 멘탈 헬스를 챙기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 마련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도 생겨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휴마트 컴퍼니로, 모바일 심리상담 플랫폼인 '트로스트'를 선보여 LG화학과 제주항공의 직원들에게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명상 플랫폼 업체인 '마보'는 현대차그룹,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제휴를 통해 비대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3) 장애인지원센터와의 협력

장애 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중점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 장애 아동·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활동,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사업 등이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 대상 보수 교육과정 운영, 민간자격 판단업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면에서 협력하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장애 아동·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활동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제공, 통합정보제공사이트 운영 등이 있다. 해당 사업에서는 알기 쉬운 정보 제공, 특히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을 할 때, 각 지역의 시설 정보 제공 맵 서비스를 구축할 때 협력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사업에서는 권리구제 상담, 권리구제사업 홍보 및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MYC 멘탈 헬스케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자조 모임과 연계하여 권리구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필요시 즉각적 상담이 가능한 협력을 이룰 수 있다.

(4) 각 지역 문화예술센터, 장애인지원센터와의 협업

발달장애 아동들의 재능을 통한 비대면 연주회, 음악 페스티벌, 전시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티켓 수익금을 낼 수 있다. 하트-하트재단에서는 발달장애 연주자의 리사이틀 <워드 콘서트>를 열어 발달장애인들의 음악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의 문화예술센터, 발달

32) 김은경, '제주항공, 직원 '마음건강 챙기기' 심리상담 도입', 데일리안, 2021.09.22., <https://m.dailian.co.kr/news/view/1035012> 접속일 2021.09.23.

장애인 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연주회를 통해 지원금을 창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발달장애인 예술작품 기획전시 <무엇보다 빛나는 우리>를 개최했다. 울산시와 같이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아동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의 작품들로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고립감에 힘들어하는 장애 아동들에게 자존감 확립 및 활기를 줄 수 있다.

10)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³³⁾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 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³⁴⁾

제2장 권리의 보장

33)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 접속일 2021.09.03.

3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접속일 2021.09.03.

제11조(자조 단체의 결성 등)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 팀은 위의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멘탈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Ⅲ. 기대되는 효과

COVID-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인관계는 물론 재택근무,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우리는 일상 속 디지털 사용에 적응하고 있다. 혼란스러웠던 COVID-19 전염 초기 상황과 비교하여 우리는 이러한 삶에 꽤 익숙해진 것처럼 보인다. ‘COVID-19로 인해 화상 매체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뜻하는 ‘virtual happy hour’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교수는 “정보화 사회가 오면서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는 인터넷 환경을 통해 제공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COVID-19가 종식되더라도 사회서비스에서 디지털 활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일부 서비스의 경우 활동 키트를 제공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개별 맞춤 지원이 확대되기도 했기 때문에 향후 비대면 서비스 활용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포용 전략’을 시행하고 있고, 2017년에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포괄하는 ‘디지털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교육, 온라인 건강관리 지원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 대상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팀이 제안한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 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발달장애 아동과 보호자들이 일상속에서도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모할 수 있다. 정신건강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신체 건강에 비해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 프로그램(MYC)’정책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시적인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정책이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이 입증된다면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보다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비대면 상담 서비스 효과를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비대면 심리상담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비대면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35)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상담은 아직 청각, 언어장애인에 국한된다. MYC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과 그 보호자들에게도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알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들의 디지털 환경 적응을 도울 수 있다. 비대면 상담 과정에서 아동들의 의사소통 문제, 웹사이트 활용 기술 문제 등 초반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 특성상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앞에 오래 앉아있거나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웹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여러 논문 결과가 있다. 36)또한 발달장애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인지적, 행동적 지연을 감안할 때,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들의 기능 습득을 촉진시키기 위해 반복 학습, 시뮬레이션 학습, 오감을 활용하는 학습이 효과적인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발달장애 아동들의 반복적인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동들은 디지털 환경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고, 정보화 사회 안에서 비장애 아동과 같이 디지털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35) 이승덕,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 의학신문, 2021.7.5.,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118>.

36) Robust Motion UX based Direction Education System for Developmental Disorder Children, Tami Im 외 2명,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2쪽.

참고문헌

- 권용수, '치료에서 취업까지 종합시책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일본 오사카)', 2018.6.20., <https://www.si.re.kr/node/59698>, 접속일 2021.9.16.
- 김경숙(2016). 「발달장애 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부모의 어려움과 삶의 질 인식 및 욕구 조사」, 통합교육 연구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 김봉년 외(2018).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치료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김양균, “정신과 비대면 진료 효과적일 수 있다”, ZDNet Korea, 2021.05.27.,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223258>.
- 김은경, '제주항공, 직원 '마음건강 챙기기' 심리상담 도입', 데일리안, 2021.09.22., <https://m.dailian.co.kr/news/view/1035012>
- 김환영 외(2017). 정신건강 자가검진 앱 개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남찬섭,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장애인 복지 분야, 복지동향', 2020.11.01.,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42826>
- 노승희, “독일, 자조모임 지원 '법'으로 명문화 부러워”, 에이블뉴스, 2010.09.02.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00902161314282384>.
- 문예성, 안호균, 장애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사각지대...부모들은 '한숨', 뉴시스, 2021.05.2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0_0001447435.
- 반기용, 온통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 어디까지 왔나, 경향신문, 2021.01.10.,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53140>.
-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위해 '발달장애인직무교육 공동 업무 협약' 체결', SKInno News, 2018.07.26., <https://skinnonews.com/archives/34202>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s://chest.or.kr/lf/intrcn/initBranchintrcn.do>
- 어유경,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봄호 Vol. 16.
- 어유경.(2021).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과 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 MYC(Mind Yourself Connect)

이경아 외 3인,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온라인 공동체 상호작용과 성장과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6, No. 4, 2014. 11.

이승덕,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 의학신문, 2021.7.5.,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118>.

이승재, 'LGU+ 임직원들, 시각장애인 '기업 사회적 책임 광고'제작 참여', 인터뉴스,
2021.06.18., <https://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36319>

이주연 외.(2020)., 자가검진을 통한 정신증 조기 발견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조기 중재사업 확
산을 위한 기반 연구, 전남대학교병원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 장애유형
별 조사 결과」,

조향숙 외(2021). 팬데믹 시대(COVID-19)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한
국장애인개발원

최설, 「코로나 시대의 건강심리 서비스: 원격 심리치료의 효과와 이슈」,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1. Vol. 26, No. 1, 1-20 .

황태중, 광주광역시, 코로나19 위기 시민 마음건강 회복 위해 심리방역 총력, 파이낸셜뉴스,
2021.09.22.,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12102>.

황현민, 「장애아녀를 둔 부모의 자조모임 활동과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7.

Tami Im, In-ho Yun, Sang-Youn Kim, 「Robust Motion UX based Direction Education
System for Developmental Disorder Children」,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네이버 시사상식 사진.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과 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 MYC(Mind Yourself Connect)
결과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과 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 MYC(Mind Yourself Connect)

2. 연구방법

계획	문헌조사, 교수님 인터뷰 및 자문
결과	문헌조사, 교수님 인터뷰 및 자문

3. 정책내용

계획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추가 웹사이트 홍보 전략 구성 추가 해외 사례 추가 자원 조달 방법 추가
결과	정신건강 상담자, DB 관리자, 책임 관리자, 책임 개발자, 행정인력 카테고리 나누어 구성 정부기관, 지역사회 복지기관,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구상 호주의 Head to Health, 일본의 Elmosaka 등 국외 사례 추가 정부 지원, 민간 기업과의 협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나누어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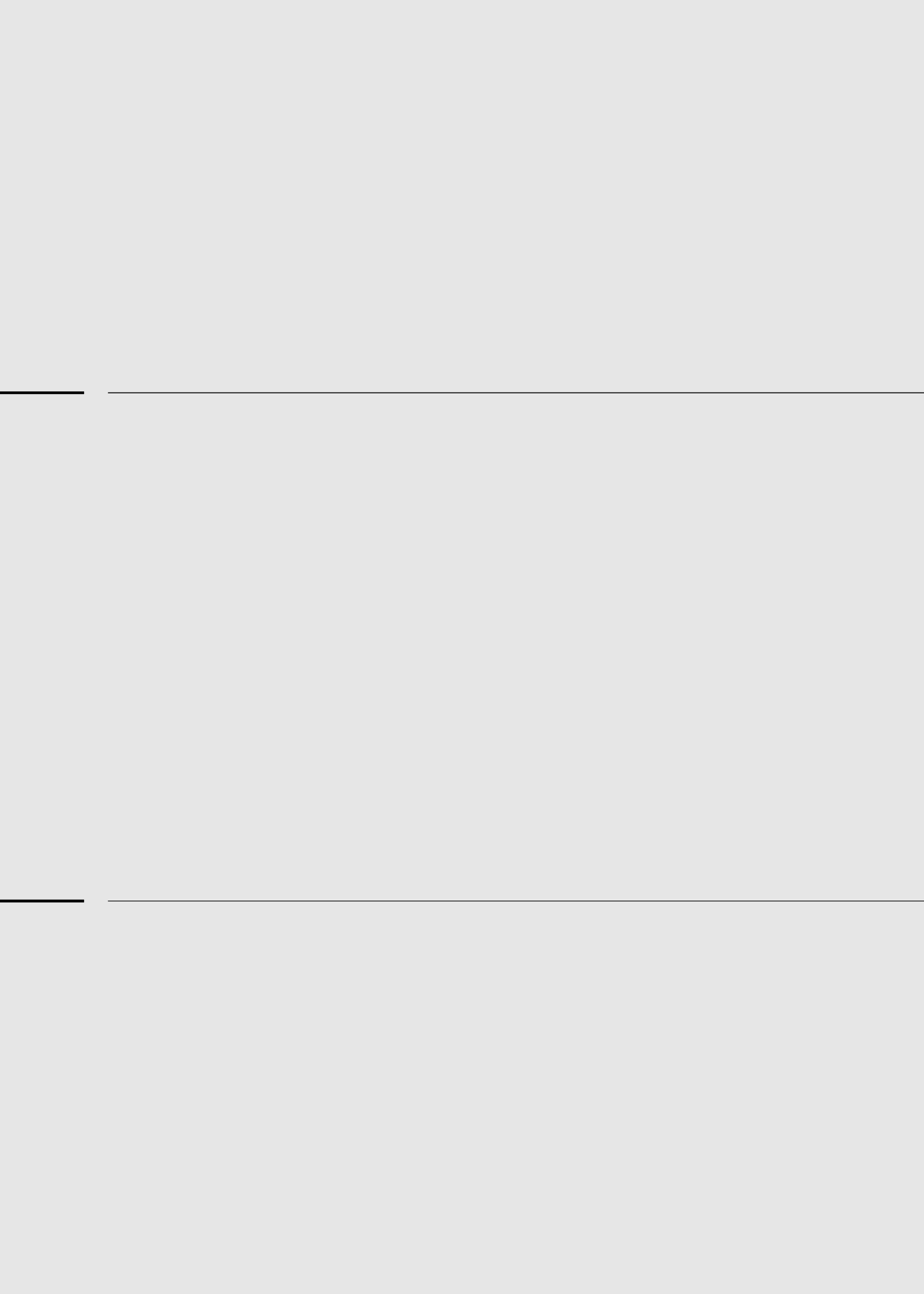
4. 적용방안

계획	MYC 웹사이트를 이용한 멘탈헬스케어 서비스 진행 과정 및 효과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
결과	MYC 웹사이트를 이용한 멘탈헬스케어 서비스 진행 과정 및 효과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

감염병 발생 시 발달장애 아동과 아동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멘탈 헬스케어 웹사이트 구축
 : MYC(Mind Yourself Connect)

5. 기대효과

<p>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아동과 보호자들이 일상 속에서도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모할 수 있음 -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비대면 상담 서비스 효과를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들의 디지털 환경 적응을 도울 수 있음
<p>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아동과 보호자들이 일상 속에서도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모할 수 있음 -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비대면 상담 서비스 효과를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들의 디지털 환경 적응을 도울 수 있음



장애인 보호자의
비장애인 자녀
통합 지원 서비스

정책제안 발표자료

장애인 보호자의 비장애인 자녀 통합 지원 서비스

※ 본 게시물은 한국장애인재단의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에 참여한 제안팀의 제작물로 무단 수정, 복제, 공유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NTENTS



01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 1) 장애인 모성권
- 2) 장애인 보호자 양육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 3) 동거커플 포함의 필요성
- 4) 장애인 보호자와 아동의 심리적 지원 확대 필요성

02

제안 정책 내용

- 1) NPRD
- 2) 돌봄지원
- 3) 학습지원
- 4) 심리지원
- 5) 정보지원

03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01

정책제안배경 및 필요성



정책제안배경 및 필요성 01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장애인 가구
24.6%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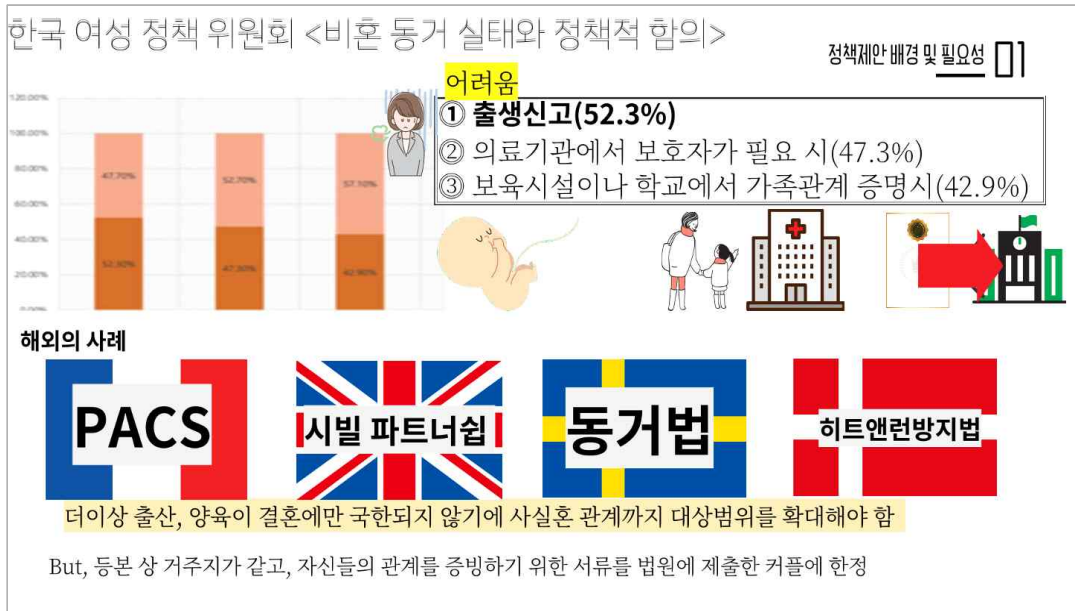
장애인 모성권?

장애인은 육체적인 한계로 인한 좌절, 장애인 차별주의로 인한 심리적 고통,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 등 모성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모성 경험은 여성 장애인의 자기 성장의 계기로 적용하게 된다.

모성 내용
자녀 출산 및 양육, 교육



정책 확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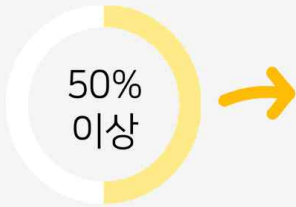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01



장애인 보호자와 아동의 심리적 지원 확대 필요성

가족 기능에 문제



장애인 부모의 비장애인 자녀

부모의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힘들고 또래의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

↓
가족 불화 발생

장애인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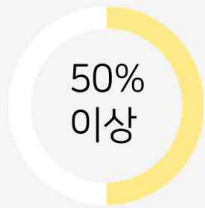
재활 상담만 이루어지고 장애와 무관한 분야 심리상담 이루어지지 않음.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01



장애인 보호자와 아동의 심리적 지원 확대 필요성-가족 내 여성장애인

한국 전체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수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80% 이상 가정폭력 수반

상담소 단 4곳 보호시설 단 2곳.

가정폭력실태조사: 장애 여부는 파악X

02

제안 정책 내용



제안 정책 내용 02

NPRD(National Policy of Raising the Disabled) 장애인 양육 통합지원 서비스



NDIS

65세 이하 장애인의 일반적인 실명
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
가 수준의 보험제도 또는 장애인 정책



60부터

장수문화

고령화 시대에 기술만을 강조하는 스
마트 에이징이 아닌 지역사회문화 조
성을 구축하는 스마트웰 에이징으로
전환하는 것

제안 정책 내용 02

NPRD(National Policy of Raising the Disabled) 장애인 양육 통합지원 서비스



NDIS

65세이하 장애인의 일반적인 삶 영
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
가수준의 보험제도 또는 장애인 정책



60부터

장수문화

고령화 시대에 기술만을 강조하는 스
마트에이징이 아닌 지역사회문화조
성을 구축하는 스마트웰 에이징으로
전환하는 것

NPRD

제안 정책 내용 02

돌봄 지원

학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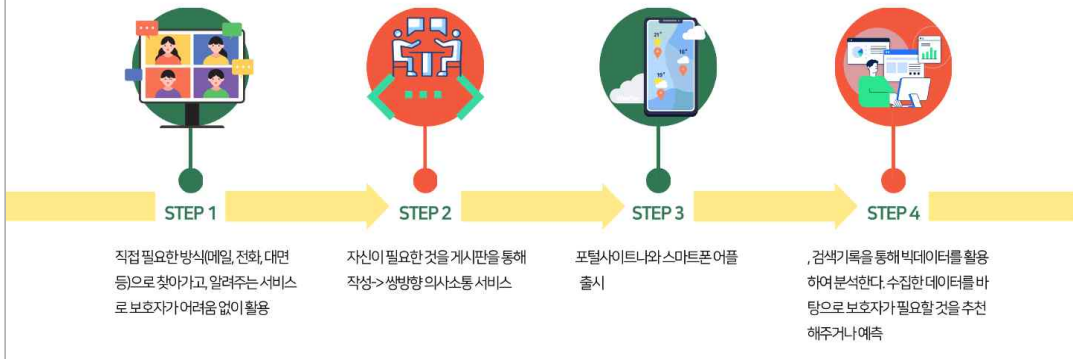
심리지원

정보지원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양육 통합지원 서비스**

NPDR의 활용



NPDR 지원대상 아이를 양육을 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법적 보호자



돌봄지원 1) 긴급 도움 정책

일상적인 양육의 어려움 외에도 아이가 보호자를 필요로 할 때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

" 아이와 긴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지만 아이를 동반한 독립적인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동상의 제약이 없는 청각장애인이지만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긴급상황을 타인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

- 교육 지원 서비스 정책개발 연구

시민 찾동이

장애인 가정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찾동인들이 일정 간격으로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긴급 연락망 형성



24시간 어린이집

장시간의 양육 공백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24시간 어린이집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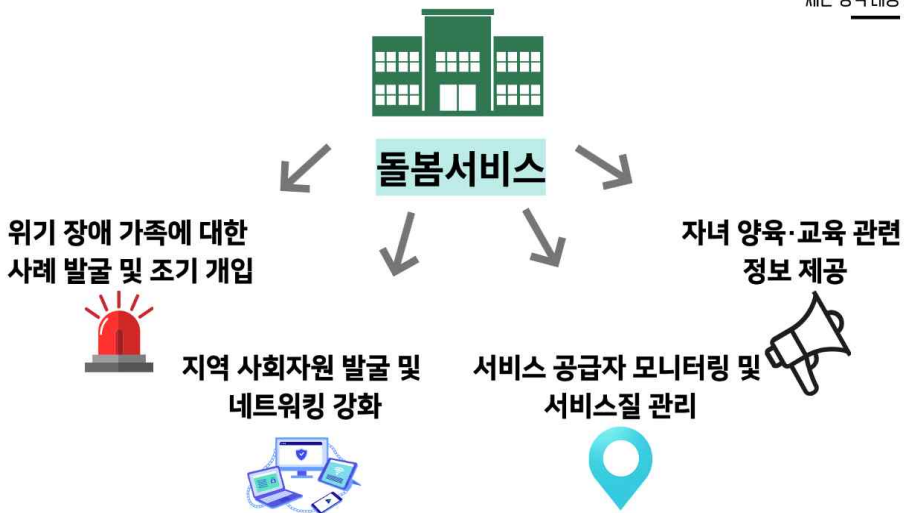
2) 보호자 참여 정책

현실적으로도 장애인 보호자도 보호자 역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준비하면 상당 부분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다.



장애 유형별 모유 수유, 목욕시키기 등 일상적인 자녀 돌봄 방법 및 도구 사용 방법, 자녀 학습 및 놀이 지도 방법, 의사소통 방법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현행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에 교육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 지원



STEP 1

학습 공백이 누적된
지원 대상의 규모를
파악



STEP 2

원인 진단



STEP 3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 학습 동기 강화, 학습 방법과 콘텐츠 추천
-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필요에 맞는 지원인력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구축

학습 지원 -연령별



영유아기

- 학습 환경 제공
- 담당 아동 전문
선생님 배치



초등학생

- 학습 장려 비용 20만원
- 장애 정도에 따라 담당
선생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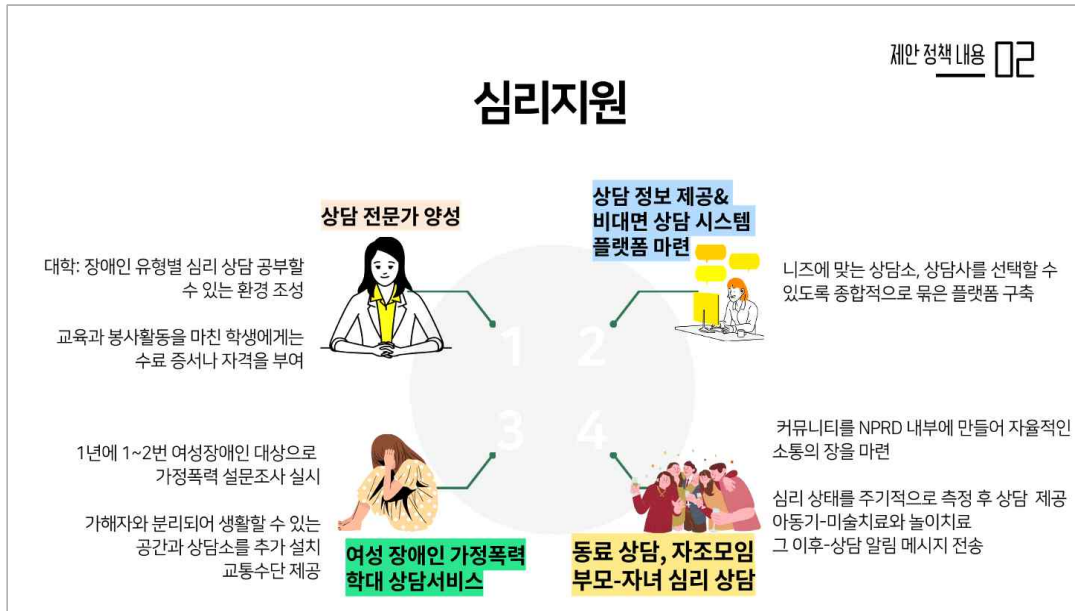
중/고등학생(청소년기)

- 전문가와의 진로 상담
- 학습비 지원



대학생

- 등록금 및 학습 비용 지원
- 생활비 지원



정보지원

정부 주도하에 장애인 전용 정보공유 앱,
e 알리미, 스쿨맘에서 장애인 전용 기능 등을 개발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습득

NEW



청소년기에는 입시 전문컨설팅 업체와 연계
상담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며 불편을 최소화



장애 유형별 정보지원



시각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소리 알람으로 안내
이후 정보를 확인하길 원하면 음성메세지로 확인



**시청각
중복**

가정에 닷 워치(dot watch)를 보급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핵심 내용을 닷 워치로 안내



**뇌 중추
신경**

전담 관리 인력을 배정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신청을 대리함
아동의 보호자 모두에게 정보 공유
친인척에게도 관련된 정보 공유



플랫폼 제작
-> 수백~구백억까지
다양한 목적!
앱 개발 프로젝트(5674건)의
금액이 200만원~5억으로 분포

상담전문가
입시/학습 전문가
찾동아
->사회복지 공무원
돌봄 선생님

NPRD **인적자원**

재원의 규모

재화

영유아기에 교육지원은 점자 책
(권당 만원~삼만원)
, 음성기기
(개당 만원~십만원)
가상현실(50만원~300만원)을
유형에 맞게 대여형식 지원

교육 지원 금액
평균 청소년기->3,312만원
평균 대학교 4년->2,652만원

맞춰치 보급비용을 최대
(개당 299000원/시청각 중복 장애인 5천명~만명)
14억 9500만원~29억 9000만원이고,
실제로 보호자 인구만 측정하면, 10억 전후로 추정

자조모임 공식행사마다 경제적으로
직접 다과비나 행사 진행비용 매년 규모 조절

제안 정책내용 02

재원조달방안

기업

장애인 센터와 제휴하여 제품 판매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굿즈제작

디자이너와 장애인 협업
편딩 사업 나아가 공식 판매사이트
장애인 인권 의식 제고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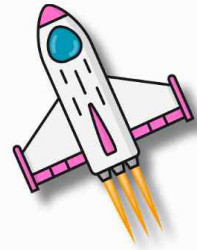
장애인 관련 법안 위반 과태료

지역 내 자원봉사단

장애인 육아나 학습지원 시에
전문 양육인 보조
인력 부족 충당

03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03

기대효과

돌봄지원

긴급한 상황 대처 가능
찾동아: 장애인 돌봄 문제 빠르게 발견 후 해결
24시간 어린이집: 부모 양육 부담 감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 증대
장애인의 모성권을 존중
->보호자의 정서적 박탈감 감소

학습지원

자녀의 정상적인 학습발달 보장
자녀의 목표의식 제고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연령별 맞춤형 교육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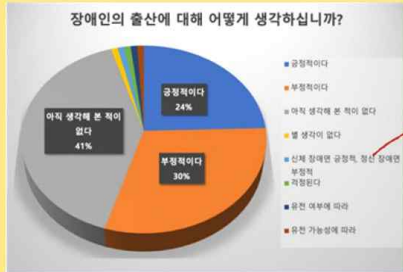
심리지원

상담에 대한 접근성 높아짐
정보 전달의 효과성 상승
자아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
장애인 가족 행복도 향상

정보지원

보호자의 자녀 관심도 향상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향후과제



장애인의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24%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 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올리기 위해서
전반적인 장애인의 인식을 올리는 것이 필요



장애인의 날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개최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SNS 홍보,
카드뉴스 만들기 등 실천

Thank you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정책제안 발표회

장애인 보호자의 비장애인 자녀 통합지원 서비스

제안 4팀

〈제안 개요〉

장애인은 육체적인 한계, 장애인 차별주의로 인한 심리적 고통, 경제적 문제 등 모성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경험하지만, 모성 경험을 통해 본인의 존재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동거와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가 생겨나며, 더는 양육 및 출산이 결혼이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사회적 편견, 비장애인인 아동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정폭력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호주의 NDIS와 장수문화를 벤치마킹한 NPRD 서비스가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 지원, 학습지원, 심리지원, 정보지원에 대해 직접 필요한 방식(메일, 전화, 대면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보호자가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동이 보호자를 긴급하게 필요로 하거나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장애인 가정과 시민 찾동이 및 24시간 어린이집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민 찾동이가 일정 간격으로 가정에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별로 긴급 연락망을 형성한다. 세 번째로, 보호자 참여형 양육·교육 지원이다. 보호자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참여를 위해 일상적인 자녀 돌봄 방법 및 도구 사용 방법, 의사소통 방법 등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네 번째로, 나이에 따른 학습적 지원이다. 영유아 기부터 대학생까지의 학습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다섯 번째로, 가족 간 갈등,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는 심리적 상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있다. 내면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가 양성,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상담 시스템 플랫폼의 마련,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학대 상담 서비스, 동료 상담이 이루어지는 자조 모임, 장애인 부모의 비장애인 자녀 간의 심리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호자와 아동에게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 아동의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보지원 서비스가 있다. 시각 장애인, 시청각 중복 장애인, 뇌 증추신경과 관련된 증증 장애인으로 장애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위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의 대처가 용이해질 것이며, 보호자와 아동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학습지원을 통해 아동의 정상적인 학습발달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목표 의식 제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관심도를 향상과 디지털 정보 격차의 해소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I.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장애인 모성권

2021년 기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장애인 가구는 24.6%이며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96.4%가 자녀가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볼 때 자녀 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부부+미혼 자녀'가구의 비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³⁷⁾ 장애인은 육체적인 한계로 인한 좌절, 장애인 차별주의로 인한 심리적 고통,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 등 모성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경험하지만, 모성 경험을 통해 본인의 존재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며,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는 등 자기 성장의 계기로 적용하게 된다. 이처럼 모성은 자녀 출산 및 양육,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오늘날의 모성은 자의(字意) 그대로 어머니, 특히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모성은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집단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며, 나아가 국가와 사회 차원의 책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모성 경험이 그들의 심리·사회적 문제 극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자녀 출산 및 양육,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장애인 부모는 장애로 인하여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 장애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편견, 장애인 부모의 빈곤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부모가 되는데 현실적인 제약 받게 된다.³⁸⁾ 실제로 많은 여성장애인이 임신하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부모 되기를 (parenthood) 선택하지 않도록 강요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혹은 부모가 되었다더라도 이러한 주변 편견들로 인하여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녀로부터 분리될까 두려워하고 있다.³⁹⁾ 이에 장애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부모와 교육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취동기, 사회 적응력, 생활 습관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 태도 여하에 따라 교육의 성패와 좌우되기도 한다.⁴⁰⁾ 이에 장애인 보호자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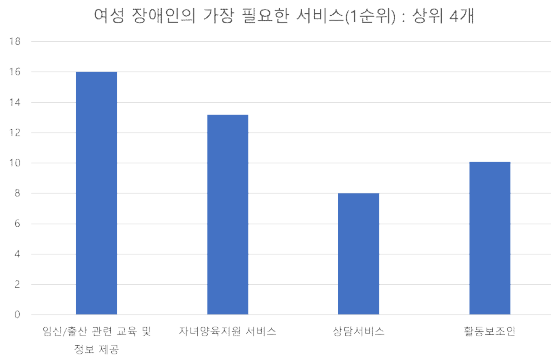
37) 900만 명 넘어서 1인 가구, 장애인의 결혼과 자녀 출산은?(Koddi 리포트)

38) 장애인 부모 자녀 양육, 교육 지원 서비스 정책개발 연구(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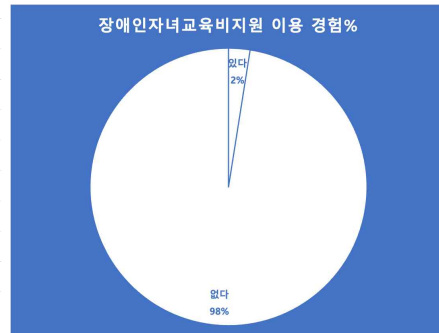
39)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지원방안 연구(홍승아, 이상원, 이영미, 2007)

40) 가족 탄력성 성향에 따른 가족 유형이 청각 장애 아동의 적응 행동과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김민영, 2007)

2. 장애인 보호자 양육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그림 1〉



〈그림 2〉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상당 부분이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가 차지했다. 이외에도 육아용품 대여, 자녀교육 도우미 등을 필요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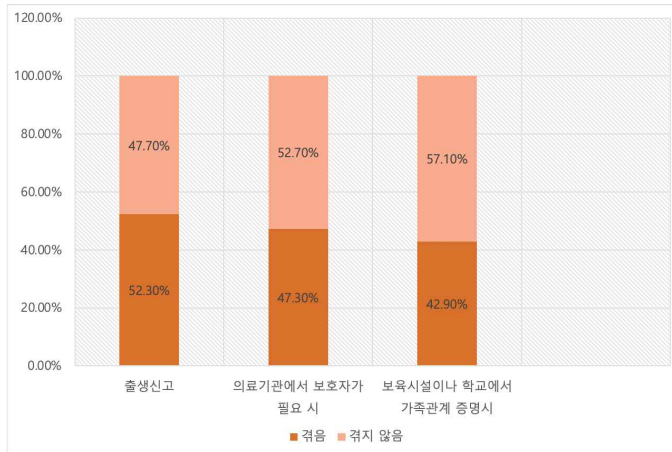
그중에서도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든 이후부터는 교육비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이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된다. (30.2%) 그러나, 오른쪽 지표를 보다시피 실질적으로 이를 경험한 사람은 극소수이다.⁴¹⁾ 또한, 상담 서비스가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자조 모임이나 전문가의 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3. 지원 범위 확대- 동거 연인 포함 필요성

‘장애와 편견을 넘어 엄마가 된 여성장애인들’이란 기사에서 두 집안 모두 동거를 반대하여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어려움을 겪었음을 볼 수 있다. ⁴²⁾ 이는 15년 전에 방영되었지만, 동거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4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09-04(최복천 외, 2011: 124-126)

42) 장애와 편견을 넘어 엄마가 된 여성장애인들, <https://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116056.html>, 한겨레(강종훈, 2006)



〈그림 3〉

동거의 인식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동거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한국 여성 정책 위원회에서는 <비혼 동거 실태와 정책적 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동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동거 연인 정책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 조사에서 현재 동거 중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출생신고(52.3%), 의료기관에서 보호자가 필요할 때(47.3%),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할 때(42.9%)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 관계를 따지지 않았을 시에는 세금 납부 시 인적공제나 교육비 혜택이 없다(62.4%)가 1위를 차지했다. 43)

해외에서는 동거 연인을 인정해주는 법안이 이미 많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시민 연대계약을 줄인 말인 팩스를 통해 간단하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국의 시빌 파트너십, 스웨덴의 동거법, 덴마크의 히트 앤드 런 방지법 등이 있다.

양육 또는 출산이 결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동거 연인 즉, 사실혼 관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동거 연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개념을 잡아보자면,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커플이고, 자신들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관계 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한 커플을 말한다.

43)“비혼동거 실태와 정책적 함의” 토론회, 여성가족부(오성미, 202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084

4. 장애인 보호자와 아동의 심리적 지원 확대 필요성

가족에게 생긴 하나의 사건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고(Morgan & Riesen, 2016),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가진 개인적 특성은 다른 구성원의 가족 내 역할이나 책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부모나 형제로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아야 하는 어려움은 개인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 차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과 관련하여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문제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 통제와 같은 가족 기능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석말숙, 2013) 장애인 가족 중 절반 이상은 가족 기능에 문제를 가진다(오혜경, 2005).⁴⁴⁾

비장애인 자녀를 둔 장애인 보호자도 가족끼리의 소통에 있어서 문제를 겪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장애인 보호자를 둔 한 학생에게 인터뷰했는데, 아래는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로서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장애에 대해 자녀인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해서 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 대처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힘든 것 외에도 어렸을 때(초등부터 고등학생 시절) 사회적으로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 내에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 소통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부모로부터 사회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비장애인 자녀는 부모의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기 어렵고, 이는 가족의 불화로 이어진다. 자신 또래의 아이들의 가족과 다르다는 생각에 가족에 대해서 밝히기 어려워하고,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 이르게 성숙해지거나 벗어나갈 수 있다. 가족은 인간이 처음으로 의사소통하는 대상이고, 이 안에서 작은 사회를 경험해 신체, 심리 발달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라는 큰 벽이 있어 가족 기능에 문제를 겪기도 하고,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일반 가족들과 같은 문제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 역시도 가족 내에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 상담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재활 상담(Rehabilitation Counseling) 영역에서만 이루어

44) 국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연구 동향: 가족 삶의 질 척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논총(한민정, 강영심, 박지연, 2021: 121-142)

졌고, 상담심리 분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은진, 2020). 재활 상담의 목적은 장애나 재해 등으로 중증도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적응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Robertson & Brown, 1992), 국내 재활 상담은 직업 및 고용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활 상담과는 별개로 장애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 내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 상담 서비스 역시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류 구성원이 아닌 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차별 및 배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 등을 경험할 때 장애인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는 커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삶의 다양한 장면(대인관계, 연애, 결혼, 취업 등)에서 경험하는 것은 장애로 인해 유발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다(안성희, 2020; 이은진, 2020). 실제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요 호소 문제와 상담 활동에 대한 태도를 탐색한 성경희와 최성열(2020)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상담에서 다루고 싶은 주요 호소문제는 성격 문제, 부부 문제, 자녀 교육 및 양육 문제 등으로 장애와는 무관한 주제들이 대부분이었다.⁴⁵⁾

가족 내에서 여성이 장애인인 경우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한국 여성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 피해자이다. 그런데 이를 보호할 기관이나 전문 상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충북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송규란 소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다 보면 그중 80% 이상이 가정폭력이 수반돼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상담소는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단 4곳뿐이다. 상담시설이 생긴다 해도 이들을 연계해 줄 보호시설도 전국에 두 곳에 불과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매년 3년마다 이뤄지는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도 장애가 있냐 없냐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호소했다.⁴⁶⁾ 이와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 즉,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폭력의 위험에 더 노출되거나(임채영, 배화옥, 2011), 출산이나 양육 등의 경험 등 남성과 다른 고유한 경험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 남성장애인과는 다른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⁴⁷⁾

45) 장애인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박정은, 2021: 581-606)

46) KBS 송국화 기자. 가정폭력 사각지대...여성 장애인 '나홀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tvh&oid=056&aid=0010822741>

47) 장애인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박정은, 2021: 581-606)

II. 제안 정책 내용

1. NPRD(National Policy of Raising the Disabled) 장애인 양육 통합지원 서비스

1) 개념

NPRD는 호주의 NDIS⁴⁸⁾(국가장애보험제도)와 장수문화를 벤치마킹 한 서비스이다. NDIS는 65세 이하 장애인의 일반적인 삶 영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보험제도 또는 장애인 정책이다. 그리고 장수문화는 고령화 시대에 기술만을 강조하는 스마트 에이징이 아닌 지역사회문화 조성을 구축하는 스마트웰에이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⁴⁹⁾ 이 둘을 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양육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2) 활용방법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니즈가 존재한다. 이를 파악하여 정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신청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NPRD를 신청할 시 돌봄지원, 학습지원, 심리지원, 정보지원에 대해 직접 필요한 방식(메일, 전화, 대면 등)으로 찾아가고, 알려주는 서비스로 보호자가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다. NPRD는 기본적으로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게시판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통보 서비스가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 서비스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한다면, NPRD 내부에 자조모임에도 가입하여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쉽게 커넥팅 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하면서 다양한 팁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어플로도 출시하여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빅데이터 활용

포털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때, 검색기록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호자가 필요할 것을 추천해주거나 예측해준다면, 더 편리하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48) [https://www.ndis.gov.au/\(ndis\)](https://www.ndis.gov.au/(ndis))

49) 김태환 외,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 국토연(김태환 외, 2011:56,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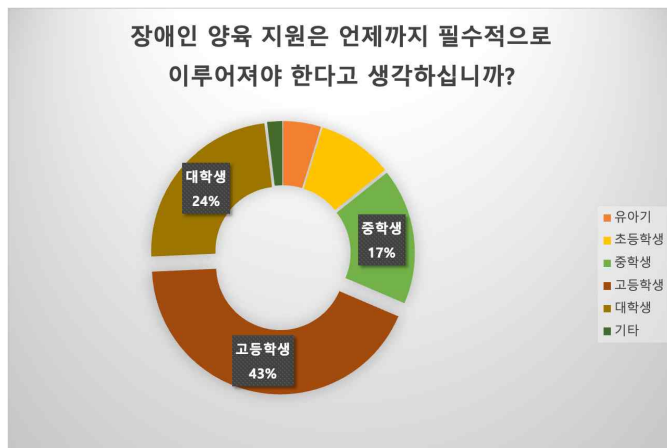
장혜숙, <“고령화 사회, 기술보다는 장수문화 조성해야한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0425>, 탑스타뉴스(장혜숙,2020)

4) 지원대상

아이를 양육을 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법적 보호자가 있다면, 지원 대상으로 한다. 아이가 있는 장애인 부부(동거커플)에 국한하지 않고, 손주를 돌보고 있는 장애인 조손 가정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장애인 여성 중 혼자 아이를 낳은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까지도 지원한다. 모든 지원대상에게 동등한 조건이 아닌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원한다.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의 인터뷰의 답변 중 “고등학생 때 받았던 교재 지원 사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형식적인 복지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양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러한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누어 지원 내용의 차이를 두었다. 또한,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의 전반적인 특성에 따라 나누었고, 중복 장애인이거나 한 분이 장애인일 때보다 두 분다 장애인인 경우가 더 어려움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우선 순위에 두었다.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범위는 위 통계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해주며, 대학교의 진학했을 경우에는 경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은 발달과정인 영유아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청소년기)로 나누어 과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한다.



〈그림 4〉

2. 돌봄지원

1) 긴급 도움 정책

일상적인 양육의 어려움 외에도 아이가 보호자를 긴급히 필요로 할 때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장애인 부모 자녀 양육·교육 지원 서비스 정책개발 연구에 의하면 “청각장애로 인해 아이의 울음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여 아이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시각장애로 인해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입에 넣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아이가 다치거나 아파서 긴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동반한 독립적인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동상의 제약이 없는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긴급상황을 타인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p. 10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웃리치 프로그램인 ‘시민 찾동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장애인 가정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찾동이들이 일정 간격으로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별로 긴급 연락망을 형성한다면 위급상황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시간의 양육 공백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24시간 어린이 집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보호자 참여형 정책

장애인이 독자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아이를 자신의 원가족에게 맡겨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원가족은 기본적 안전망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원보호자의 의견이 양육에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밖에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제약은 장애인 보호자의 모성권을 박탈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아이가 원 보호자보다 양육에 가담한 다른 가족에게 더 의지하는 상황이 초래될 때 박탈감은 더 극대화된다. 다른 대안이 없어 실행한 원가족에게의 위탁 양육이 결과적으로 원보호자-아이의 정서적 거리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비장애인 보호자의 경우에도 근무 등의 문제로 원가족에게 아이를 맡겨 키우기도 하지만 비장애인의 경우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장애인의 경우에는 불가피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보호자가 느끼는 모성성의 박탈감과 상실감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다. 50)

50) (국회입법조사처, 2009: 107)

이에 장애인 보호자의 모성권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 참여형 양육·교육 지원 정책을 제안한다. 현실적으로도 장애인 보호자도 보호자 역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준비한다면 상당 부분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다. 시각장애 여성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연구한 나응문(2003)의 연구에 철저한 정보수집과 준비로 장애로 인한 부모 역할 수행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갖는 사례가 잘 나타나 있다.⁵¹⁾ 즉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에게 방울을 달아놓음으로써 위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사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책의 각 장 위쪽에 점자로 라벨을 붙여 실제로는 볼 수 없어도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례, 크레파스에 색깔별로 자신이 아는 표시를 해두고 아이가 요구하는 색깔을 찾아 함께 그림을 그리는 사례 등 시각장애로 인한 부모 역할 수행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나응문, 2003)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기존의 가사도우미나 학습지원도우미는 서비스는 장애인 보호자의 역할이 다소 배제되어 있다. 영유아기의 뇌는 정서적 경험, 사회적 관심, 감각적 경험을 각인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각인된 내용은 성장한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호자 참여형 자녀 양육·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주도자-조력자'로서의 역할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⁵²⁾

보호자의 참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보호자의 자녀 양육·교육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모유 수유, 목욕시키기 등 일상적인 자녀 돌봄 방법 및 도구 사용 방법, 자녀 학습 및 놀이 지도 방법, 의사소통 방법 등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행 바우처 제도 중 보호자 교육 서비스 바우처가 포함되기 적합한 것은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에 교육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육대학생이나, 관련 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유희인력을 활용해보고 뒤 보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⁵³⁾

이 밖에도 장애를 갖고 있는 보호자가 겪게 되는 문제가 다양한 만큼, 이러한 문제 각각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자가 스스로 서비스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형'자녀 양육·교육 지원 서비스 도입 방안은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와의 연계, 보호자의

51) 장애인 부모 자녀 양육,교육 지원 서비스 정책개발 연구(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9)

52) (국회입법조사처, 2009: 112)

53) (국회입법조사처, 2009: 115)

참여, 연속적 지원 보장,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함에 있어서 모든 보호자의 참여 제고, 양질의 놀이와 학습, 아동을 위한 케어 경험지원, 아동건강 및 발달과 가족건강에 대한 지역의료 보호와 안내,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지원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보호자의 아이 양육·교육 지원 서비스의 효율적·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전달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혹은 부서가 필요하다 이 기관 혹은 부서를 통해 위기 장애 가족에 대한 사례 발굴 및 조기 개입, 지역 사회자원 발굴 및 네트워킹 강화, 서비스 공급자 모니터링 및 서비스 질 관리. 자녀 양육·교육 관련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⁵⁴⁾

3) 장애인 가족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심리적, 교육적, 정보의 부재로 구분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학습지원

1) 내용

2017년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5% 정도이지만 소득 하위 30% 가구 중 장애인 가구 비중은 19.1%에 달한다. 또한, 전체 국민 대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3.1%이지만 장애인 수급자의 비율은 16.7%인 것을 통해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보장해주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 부모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학습 지도를 해주거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어렵다. 또래 친구들과의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면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시험과 대학 입시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외에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은 지자체·교육청·학교가 협업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습 공백이 누적된 지원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⁵⁵⁾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체계가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면 이들이 겪고 있는 학습 공백이나 기초학력 미달의 문제를 진단

54) (국회입법조사처, 2009: 117)

55) "서울시장이 사교육업자와 손잡고 저소득층 아이들 학력 높이겠다?"(프레시안)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그에 준하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학습 공백이 발생하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이미 오랫동안 학습에서 소외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습 동기를 강화해주고 실제적인 학습 방법과 어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등과 같이 세심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도움을 원하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학생의 필요에 맞는 지원인력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훨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2) 연령별

(1) 영유아기

영유아기의 대부분 학습은 부모나 또래 집단을 흉내 내면서 시작한다. 이 시기에 자녀와 부모의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향후 안정적인 유대관계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기초적인 학습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학습발달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아동 전문 선생님을 배치하여 매달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보고해주고, 자녀와 함께 학습하고, 활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한다.

〈표 1〉

시각장애인	시청각 중복 장애인	뇌 중추 신경과 관련된 중증 장애인
자녀에게 글자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학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점자 책을 지원. 또는 음성 기기(말하기 버튼, 전자 스마트 로직)를 지원해주어 자녀와 함께 따라하며 이야기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시청각 중복 장애인은 발음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음. 이에 자녀에게 직접 말을 가르치기 보다는 손동작이나 다른 신체 기관을 활용하여 교감할 수 있도록 함. 대화를 할 때는 음성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기의 언어를 발림	거동이 불평하여 직접 자녀와 함께 교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음. 이를 가상현실(VR)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함.

(2) 초등학생

또래 친구들과의 학습이 가장 중요할 시기이다. 이를 돕기 위해서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 장려비용 2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일 때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도록 하고, 자녀와의 소통이 불평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을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함께 대화나 놀이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의 행동이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조치를 취한다.

(3) 중/고등학생(청소년기)

① 진로 탐색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직접 원하는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적성 상담 센터에서 직접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을 접할 수 있는 ‘커리어넷’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② 진로에 맞는 지원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맞는 지원을 해준다. 실제로 대입에 관심이 있던 분은 인터뷰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복지사업이 있었다. 학원비 지원은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밝혔다. 자유롭게 진로와 관련된 학습을 지원을 받게 하되, 소득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준다. 이는 가정 내 매년 평균 월 소득을 측정하여 평균과 비교해 차이의 20%만큼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가정 내 월 평균 소득이 당해에 500만원으로 측정되고, 평균이 1,000만원이었을 경우에 차액의 20%인 100만원을 지원의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4) 대학생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보호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원해준다. 대학생은 이미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서비스가 있어 자녀의 의지라도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성인으로서 보호자의 보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① 등록금 및 학습 관련 비용 지원

대학등록금과 이외의 대학과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까지도 지원해준다. 전공 서적, 필요한 기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입학과 동시에 200만원을 지급해주고, 등록금을 납부할 때마다 30만원씩 지급한다.

② 생활비 지원

등록 한 당학기에 매달 생활비를 50만원 한도로 지원해준다.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기숙사 및 월세와 같은 거주 공간이나 식비, 생활용품 등 이다.

4. 심리지원

아동이 심리적인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편안한 가족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장애인 가족이 만족스러운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가족 구성원 서로가 부딪치는 문제를 극복하도록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 간 갈등, 빈곤, 양육 문제, 친족 갈등, 사회적 차별, 실업 등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는 심리적 상처의 치유, 발생하는 고민을 상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계하고 제공한다.

1) 상담 전문가 양성

장애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삶의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상담 서비스의 종류나 상담자의 전문성도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모나 행동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험은 다를 수 있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경험 및 어려움은 다를 수 있다.⁵⁶⁾ 해당 장애 유형의 특성, 그들이 겪어온 삶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상담사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부터 장애인 유형별 심리 상담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장애인 유형별 특성, 상담 사례, 유형별 장애인들이 통계적으로 선호하는 상담 방식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하고 교육한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주기적으로 가는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그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회 의 장을 마련한다. 일련의 교육과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에게는 수료 증서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담을 진행할 때 상담가는 내담자를 장애인이라는 한 범주로서 파악하지 않고, 한 개인으로서 그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에 다가가야 한다. Olkin(2007)은 상담자가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모두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장애가 각각의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평가해야 하며, 내담자가 지닌 강점, 자원 등을 파악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접근법(Disability Affirmative Therapy)을 제안하기도 했다. Rivas와 Hill (2017)은 장애가 있는 내담자를 상담한 상담자의 경험을 탐색한 질적연구를 수행했는데, 대부분의 참여자가 장애를 하나의 결핍으로 보거나 의학적 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상담자

56) 장애인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박정은, 2021: 581-606)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상담자가 장애를 개인을 구성하는 하나의 문화적, 맥락적(contextual)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⁷⁾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내면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가 양성이 필요하다.

2) 상담 정보 제공 & 비대면 상담 시스템 플랫폼 마련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니즈에 맞는 상담소,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종합적으로 묶은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적으로 GDP가 늘어나고 개인들의 생활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분야의 심리 상담을 요하게 되었다.⁵⁸⁾ 플랫폼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앱으로 분야별 심리 상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 카테고리를 중점적으로 만든다. 장애인 심리 상담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와 유형, 상담 분야, 상담 방식 등의 카테고리를 마련하여 적절한 상담소, 상담사를 추천하고 연결시켜준다. 이미 시중에는 좋은케어, 마인드카페와 같이 심리 상담과 관련한 앱들이 출시되어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 정부가 연계해서 앱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도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상담소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난관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에 비대면 상담 시스템도 구축시키는데, 비대면으로 하는 것에는 앱 자체에서의 연락, 서면, 전화, 화상 채팅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화상 채팅의 경우에는 필요시 전자기기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파견한다. 추가로 심리 관련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원하는 때에 자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학대 상담 서비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과 차별 구조에 놓여있기에 주변인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이 있는 가정에는 필수적으로 가정폭력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1년에 1~2번 개인의 휴대폰 메시지, 메일, 우편, 전화 등의 매체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내용에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 근 1년간 가족 혹은 주변인으로부터 신체적 혹은 정신적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포함한다. 그리고 설문

57) 장애인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박정은, 2021: 581-606)

58)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심리상담사(naver)

조사의 결과를 통해 매년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현황을 통계내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와 간단한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난 후에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돕는 상담소나 여성성폭력상담소에 연계하여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연결고리가 되어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공급이 부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장애인이 가해자와 분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상담소를 추가 설치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해준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역 내 성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여성장애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4) 동료 상담, 자조모임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 가족의 틀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면, 인간관계가 협소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주기적인 소통은 꼭 필요한 일이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일련의 과정은 동료 상담과 자조모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에서는 장애 동료 상담 전문가를 자립 생활센터의 주요 인력으로 규정하여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에 1인 이상의 장애 동료 상담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제40조의 2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동료 상담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립 생활 지원의 핵심인력을 동료 상담 전문가로 정하고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현재 동료 상담은 자립 생활센터의 주축이 되어 중증장애인에게 중요한 상담 활동으로 자리하였다. 그러나 동료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동료장애인 사이의 감정적 충돌 사례를 들 수 있다. 동료 상담가의 지시적 태도와 언어폭력, 성급한 실천요구 등은 자립 생활에 대한 비현실적 방향 제시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담 진행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점들이 다양한 변수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직면한 상담의 경우가 증가하면서 동료장애인에게 적절하지 못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⁵⁹⁾ 동료 상담 전문가의 경우에는 실제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담자와 사전에 상담 규칙을 확실히 정해두고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동료상담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상담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한다.

자조 모임은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인 비전문적 활동을 함으로써 집단 성원 개개인이 도움을 얻는 모임을 말하며, 전문적 관계에서 잘 표출되지

59) 인간중심 상담과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의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7), (주은선, 이서미, 2019: 22-35)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자조 모임 구성원들은 동료애를 발휘하여 사회적 고립이나 낙인에 의한 은둔을 방지할 수 있고 주거, 보건, 고용 기회 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⁶⁰⁾ 한국의 장애인 관련 연구와 지원이 장애아동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왔기에 비장애인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 커뮤니티는 거의 없다. 장애인 부모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를 NPRD 내부에 만들어 자율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5) 장애인 부모의 비장애인 자녀 심리 지원

장애인 가족은 다른 일반 가족과 달리 장애라는 큰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로 그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제때 대처하기 힘들다. 장애인 부모의 비장애인 자녀의 심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서 언급한 플랫폼에서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 필요 유무와 필요한 분야의 상담을 추천해준다. 그리고 아동기와 청소년기 등 자라나는 과정에서 심리상태의 불안정함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2년에 한 번씩 국가 차원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아동기에는 미술치료와 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자녀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는 심리 상태 측정 빈도를 줄이되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담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고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이외에도 가족 상담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평온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한다.

5. 정보지원

1) 내용

장애가 있는 부모는 자신과 자녀에게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 자녀의 학교생활 등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정부 주도하에 장애인 전용 정보공유 앱, e 알리미, 스쿨맘(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해당 학교의 정보를 공유해주는 앱)에서 장애인 전용 기능 등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때 장애의 유형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도 구분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입시와 관련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 업체와 연계하여 직접적으로 전달해줌으로써 정보의 격차로 인하여 자녀가 입시나 성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준다. 상담 방법에 있어서는 불편

60) 자조 모임 [self-help group](네이버 지식백과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중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 유형

〈표 2〉

시각 장애인	시청각 중복 장애인	뇌 중추신경과 관련된 중증장애인
우선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을 때, 소리 알람으로 알려줌. 이후 정보를 읽어달라고 말하면 음성메시지 화 되어 읽어줌.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가정에 닷 워치(Dot Watch)를 보급함. 스마트폰과 연동해놓은 다음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 닷 워치를 통해 핵심 내용을 알려줌.	정보 확인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전담 관리 인력을 배정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신청을 대리함. 또한, 자녀의 부모 모두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친인척(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에게도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어 조치를 원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6.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법

1) NPRD

(1) 플랫폼 구축 및 앱 론칭 비용

IT컨설턴트 전문가에 따르면, 플랫폼 제작 시 수백만에서 수백억까지의 다양한 견적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⁶¹⁾ 또한, 앱 론칭 비용위시켓에 등록된 앱 개발 프로젝트(5674건)의 금액이 200만원~5억으로 분포하고 있다.⁶²⁾ NPRD는 빅데이터 활용과 다양한 항목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이고, 유형별로 분류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고해야 하기에 이전에 사용하던 있던 틀을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처음부터 창작해야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예상 비용은 5000만원~억 대로 본다.

(2) 플랫폼 및 앱 운영과 유지비용

운영비용은 이용자 수나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지만, ‘숨고’에서는 평균적으로 20만원이라고 한다.⁶³⁾

61) 온라인 플랫폼 만드는데 얼마정도 필요하나요?, https://totb.kr/site_j/blog/blog_list.asp?smenu=1&sword=&a_idx=&b_idx=&idx=2625&search_text=&page=3(IT컨설턴트 온라인상담)

62) 앱개발비용 얼마나 드나, <https://inonavi.tistory.com/632>(인포나비 세계경제 금융, 2021)

2) 돌봄 지원

찾동이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접 나서는데 있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한다. 또한, 24시간 어린이집의 규모와 지원에 있어 자본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돌봄 안내를 위해 직접 해당 전문 인력을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습지원

영유아기에 교육지원은 점자 책(권당 만원~삼만원)과 음성기기(개당 만원~십만원), 가상현실(50만원~300만원)을 유형에 맞게 지원해주고, 이는 재사용이 가능하기에 대여형식으로 진행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아동 전문 선생님을 배치해주기 위해 인력모집이 필요하고, 발달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한 개선에 필요한 비용도 든다. 초등학생에게는 영유아기 담당 전문인력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담당 선생님을 붙여주는데, 관리 직원이 필요하다. 매달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비용 월 2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20세이상 장애인구(2020년 기준) 2,542,851명) 약 월 5,000만원 1년에 최대 6억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는 진로상담을 안내해주는 진로담당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지원금은 대략 계산해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7년 기준으로 242만 1천 원이다. 이는 전체 소득(약 475만)와 233만원의 차이가 나기에 약 46만원을 상한선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자녀 한 명당 청소년기 교육비를 평균 상한선 약 3,312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대학생(4년제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에 국가장학금(올해 평균 등록금 673만원-국가장학금 580만원)제외하고, 4년 등록금 평균 612만원과 생활비 각종 장려금(240+200+1,600)인 1인당 평균 2,652만원을 지원해준다.

4) 심리지원

해당장애 유형별 특성, 상담 사례, 유형별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상담사 양성이 필요하고, 장애 유형별 심리 상담사 자격증 확대를 한다. 플랫폼은 NPRD를 활용하여 이를 세분화하고, 피드백에 따라 점검하는데, 앱/플랫폼 유지비용인 20~100만원의 지출이 있다. 비대면 전화 또는 화상 채팅 서비스에 답변을 줄 수 있는 상담사도 필요로 한다. 심리 관련 설문조사 비용은 필요한 심리 테스트에 따라 다양하다. 지역 내 상담소를 추가 설치하는데, 재화가 필요하다. 자조모임에는 공식행사마다 경제적으로 직접 지원해주어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한다. 지원은 다과비

63) <https://soomgo.com/> 숨고

나 행사 진행비용으로 매년 규모를 반응에 따라 조절하는 방향으로 한다.

5) 정보지원

구축된 NPRD와 기존의 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앱 보수비용으로 100~1000만원을 예상하고, 닷워치 보급비용을 최대로 잡았을 때, (개당 299000원/시청각 중복 장애인 5천명~만명) 14억 9500만원~29억 9000만원이고, 실제로 보호자 인구만 측정하면, 10억 전후로 추정된다.

6) 조달방안

(1) 기업에서부터 조달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로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 관련 센터에 기부를 한다면, 기업의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고함과 동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이 장애인 관련 시설과 제휴를 맺어 제품을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을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 쓰인다고 홍보를 함으로써 기업의 인식개선을 이뤄낼 수 있고, 기부금을 모아 장애인 정책 관련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굿즈 제작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장애인들이 실제로 참여, 제작한 굿즈를 NPRD에서 초기에 기부형 펀딩 사업을 실시한다. 인권비와 원재료 값을 제외한 이윤을 장애인 정책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 굿즈를 홍보, 판매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장애인 인권 의식을 제고할 수 있고, 굿즈 제작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미술치료의 일환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펀딩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후에 장애인 굿즈 파는 사이트를 만들어 정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3) 장애인 관련 법안 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 등의 장애인 관련 법률 위반 시에 발생한 과태료를 정책 자금으로 조달하여 활용한다.

(4) 지역 내 자원봉사단

장애인 육아나 학습지원 시에 전문 양육인을 보조해주는 자원봉사단을 창단함으로써 인력 부족을 충당하고, 우수단원에게 표창을 해준다.

Ⅲ. 기대효과

1. 정책 실행시의 변화 및 기대효과

1) 돌봄 지원 정책

(1) 긴급한 상황 대처 가능

‘찾동이’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 장애인의 돌봄에 있어 문제상황을 빠르게 발견 또는 해결해줌으로써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다. 또는 돌봄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는 24시간 어린이집을 통해 자녀를 맡김으로써 보호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 증대

무조건적으로 시설이나 센터를 빌려 양육하는 것보다 장애인의 모성권을 존중해줌으로써 보호자의 정서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고, 보호자가 참여형 양육을 하면서 자녀와 함께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

2) 학습지원 정책

(1) 자녀의 정상적인 학습발달 보장

담당 전문가가 직접 학습발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발달상황을 확인해줄 수 있다. 이에 부족함이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방안을 제시해주거나 직접 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정상적인 학습발달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목표의식 제고

진로와 관련된 비용 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의 다양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목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고, 원하는 분야를 국한하지 않고,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다채롭게 지원받을 수 있기에 진로를 제약 없이 수립함으로써 자녀의 목표의식을 끌어올려 준다.

(3) 학교생활 적응

학령기에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에게 차이가 보였을 때,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⁶⁴⁾ 이러한 차별은 차이를 줄여나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에 학습지원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필요에 따라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자녀는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4) 연령별 맞춤형 교육

자녀의 발달과정에 따라 맞춤형 교육지원을 해줌으로써 명목상의 지원을 줄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심리지원 정책

장애 정도와 유형별로 내담자가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가를 대학교육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장애인 가족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심리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 내담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담소, 상담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고, 내담자의 성향과 특성을 잘 파악하여 더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플랫폼 내에서 마련함으로써 상담 방식의 폭을 넓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면 상담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상담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오를 수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해

64) 권길여, <부모님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왕따' 당해 '죽음'까지 생각한 18살 딸>, <https://www.insight.co.kr/news/333191>, 엔터테이먼트(권길여, 2021)

좁으로써 이중적인 차별 구조에서 여성장애인이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다.

동료 상담, 자조모임을 확대 구축하면 큰 비용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꾀할 수 있고, 활발한 정보 공유의 장으로써 기능하여 정보 전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장애인 부모의 비장애인 자녀 심리 상담을 지원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통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유년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이는 자아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성장 과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성장애인, 장애인 부모의 비장애인 자녀와 같이 간과되어왔던 대상들에게 구체적인 상담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상담 전문가 양성, 심리 상담 플랫폼 마련, 동료모임, 자조모임의 구축을 통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일상생활 만족도와 행복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4) 정보지원 정책

(1) 보호자의 관심도 향상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보호자에게 자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 자녀와 대화도 함으로써 자녀와 가까워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정보 알림 앱에 장애인 전용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관심이 있음에도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자녀, 학교와의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파급효과

1) 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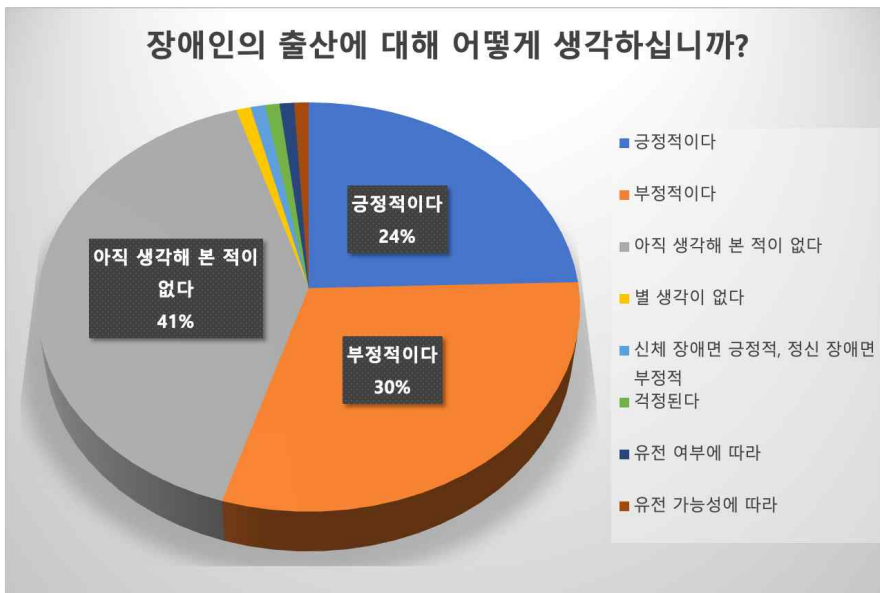
장애인 보호자의 돌봄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전에 장애인 보호자의 돌봄은 오히려, 자녀가 역으로 돌봄을 해주거나 배우자 등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지만, 어려움을 개선해줌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부담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주어 양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장애인 보호자가 확대될 것

이다. 이에 장애인 보호자가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 함으로써 걱정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될 것이다.

2) 학령인구 증가

장애인 보호자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짐으로써 여성 장애인의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나아가 국가적 인재 양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3. 향후 과제



〈그림 5〉

1) 여성 장애인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양육은 출산의 연장선 상에 있기에 이 둘은 떼어 놓을 수는 없다. 그런데, 위 그래프를 보면, 장애인의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24%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부정적이거나 대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거나 여성 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2) 부정적인 원인 : 유전 가능성

부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장애가 유전 될 가능성이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 유형별 태아의 유전가능성> 조사에 따르면, 척수장애는 대부분이 사고로 인한 중도 장애이고, 뇌성마비도 대부분이 유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시각 장애 중 80-90%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청각 장애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고도 난청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0.1%로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⁶⁵⁾ 또한, 지적 장애인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전적인 이유로만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적 장애의 요인은 유전을 제외하고도 약 2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⁶⁶⁾

이처럼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유전 가능성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는 유전이라는 지나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인식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 여성이 사회가 주는 부정적인 시선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보호자가 양육하는 것에 도움을 줌으로써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후천적인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개선을 위한 제안 : 참여형 교육의 필요와 작은 노력

여성 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장애인의 인식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를 필수적으로 시청하도록 하고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열심히 시청하는 학생은 주변에서 봤을 때, 10명 중 1명이었다. 그러나, 독도의 날이나 한글날에는 영상 시청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자연스럽게 지식을 얻는 경험을 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의 날에도 공공기관이나 학교가 협력하여 장애인의 날에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다. 행사 내용은 비장애인/장애인 배리어 프리 아이디어 그리기 대회, 장애인 관련 토론 대회, 유형별 장애인 체험하기 등 다채롭게 구성하여 매년 하는 행사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SNS 홍보, 카드뉴스 만들기 등을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부터 알려줄 것이다.

65) 장애유형별 태아의 유전가능성, 장애인 건강 및 개활 정보포털,
http://www.nrc.go.kr/portal/html/content.do?depth=dw&menu_cd=05_02_07(보건복지부)

66) 지적 장애는 유전이다?“지나친편견”...원인 약200가지, 퀸,
<https://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424>(유정은)

참고문헌

- 김만영, 〈가족탄력성 성향에 따른 가족유형이 청각장애아동의 적응행동과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석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30-31.
- 김태환 외,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현황과 과제〉, 국토연구원, 2011-56, (2011), 189.
- 한민정, 강영심, 박지연. 〈국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연구 동향: 가족 삶의 질 척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논총〉, 특수교육논총, 37(3), (2021), 121-142.
- 홍승아 외,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8권 1호, (2009), 119-157.
- 최복천 외,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09-04, (2011), 124-126.
- 주은선, 이성미, 〈인간중심 상담과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의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7), (2019), 22-35.
- 홍성대, 김철주, 〈장애인 부모 자녀 양육, 교육 지원 서비스 정책개발 연구〉,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9), 49-58.
- 박정은. 〈장애인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21), 581-606.
- 코코디, 〈900만 명 넘어선 1인 가구, 장애인의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 송국화, 〈가정폭력 사각지대...여성 장애인 '나홀로'〉, KBS NEWS, (202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tvh&oid=056&aid=0010822741>.
- 장혜숙, 〈“고령화 사회, 기술보다는 장수문화 조성해야한다”〉, 탑스타뉴스, (2020),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0425>.
- 권길여, 〈부모님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왕따' 당해 '죽음'까지 생각한 18살 딸〉, 엔터테이먼트, 2021, <https://www.insight.co.kr/news/333191>.
- 오성미, 〈“비혼동거 실태와 정책적 함의” 토론회 개최〉, 여성가족부, (202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084.
- 프레시안, 〈“서울시장이 사교육업자와 손잡고 저소득층 아이들 학력 높이겠다?”〉, (202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1208442670335>.

비전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심리상담사〉, 네이버 블로그, 쉐러던트 안내서, (2019).

숨고, <https://soomgo.com/>

〈온라인 플랫폼 만드는데 얼마정도 필요하나요?〉, IT컨설턴트 온라인상담

https://totb.kr/site_j/blog/blog_list.asp?smenu=1&sword=&a_idx=&b_idx=&idx=2625&search_text=&page=3

〈앱개발비용 얼마나 드나〉, 인포나비 세계경제 금융, (2021),

<https://infonavi.tistory.com/632>.

네이버 지식백과] 자조 모임 [self-help group]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보건복지부, 〈장애유형별 태아의 유전가능성,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

http://www.nrc.go.kr/portal/html/content.do?depth=dw&menu_cd=05_02_07

강종훈, 〈장애와 편견을 넘어 엄마가 된 여성당애인들〉, 한겨레, (2006),

<https://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116056.html>.

유정은, 〈지적 장애는 유전이다?“지나친편견”...원인 약200가지〉, 퀸, (2020),

<https://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424>

ndis, <https://www.ndis.gov.au/>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장애인의 결혼 안정성 향상 및 출산·양육 보조 정책
결과	장애인 보호자의 비장애인 자녀 통합 지원 서비스

2. 연구방법

계획	설문조사, 인터뷰, 논문 참고, 전문가와의 자문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문조사(106명의 답변, '장애인 결혼 안정성', 여성 비율 75.5%, 주요 응답 연령대 : 20대 (88.6%), 질문: 여성 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인식, 장애인 양육, 장애인 양육지원 적절한 시기, 장애인 결혼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결혼생활에 겪을 어려움, 장애인의 결혼생활에 있어 심리적 갈등 해결방안, 장애인의 취업률 높이는 방안, 장애인 부부의 주거) 2. 인터뷰(지적 장애 2급 아버지를 둔 비장애인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로서 겪은 심리적 어려움 및 해결방안, 학업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어려웠던 경험에 관한 서술, 학업 정보에 대한 어려움, 근무 및 고용정책에 대한 도움의 경험) 3. 논문참고, 인터넷 자료, 전문가와의 자문,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과의 자문

3. 정책내용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끼리의 결혼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결혼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결혼 장려 정책을 고안하고자 함. 2. 현금지원이 추가 되었던 기존의 지원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들을 고안하며 신혼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3. 부부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 모두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4. 양육뿐만 아니라 임신 과정 및 출산에서 여성장애인이 장애 별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고자 함.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PRD(장애인 양육 통합지원 서비스) : 장애인 보호자의 양육에 있어 돌봄/학습/심리/정보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또는 앱을 통한 서비스 정책 2. 돌봄 지원 : 긴급 도움 정책과 보호자 참여자 정책으로 나뉨. 찾동이 서비스와 24시간 어린이집을 통한 자녀 케어 서비스와 직접 보호자의 양육을 장려하는 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학습지원 : 영유아기/초등학생/청소년기/대학생으로 발달과정을 나는 맞춤형 학습 지원정책임. 단순히,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진로 부분에서도 도움을 줌. 특히, 영유아기에는 장애인 보호자의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을 해줌. 4. 심리지원 :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NPRD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해줌.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따로 학대 상담 서비스도 이용 가능. 또한, 자조 모임 지원과 비장애인 자녀의 심리지원까지도 해줌. 5. 정보지원 : 정보 격차를 해소해주기 위해 장애 유형별로 전달 방법을 나누어 플랫폼을 통한 자녀에 대해 정보전달을 해줌.
--	--

4. 적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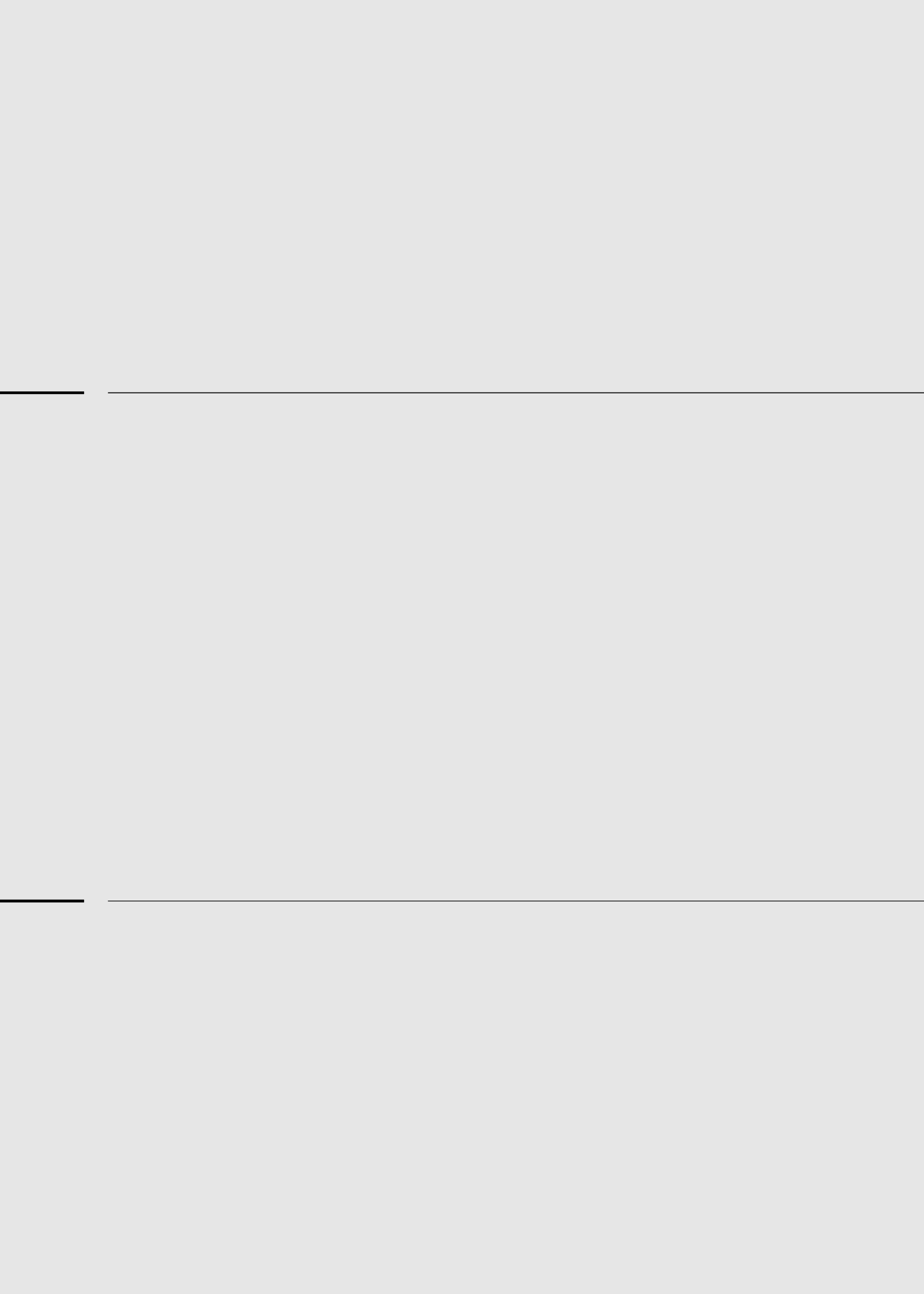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혼 상담 서비스 구축을 통한 지원 2. 올바른 결혼생활 유도를 위한 결혼 심리 상담 서비스 3.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4. 육아 정책 (심리적/신체적/경제적 지원)/맞춤형 알림 서비스/돌봄 서비스) 5. 장애인 신혼부부 주거 지원정책
결과	<p>NPRD(National Policy of Raising the disabled)라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양육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지원정책을 신청, 이용할 수 있다. NPRD를 신청할 시 돌봄 지원, 학습지원, 심리지원, 정보지원에 대해 직접 필요한 방식(메일, 전화, 대면 등)으로 찾아가고, 알려주는 서비스로 보호자가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다. NPRD는 기본적으로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게시판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통보 서비스가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 서비스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한다면, NPRD 내부에 자조 모임에도 가입하여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쉽게 연결 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하면서 다양한 팁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앱으로도 출시하여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p>

5. 기대효과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신혼부부 전용 결혼 상담 서비스를 통해 결혼 준비 과정 전반에 있어서 도움을 줌으로써 장애인 신혼부부에게 결혼 준비 과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회적인 시선에 한계를 느끼지 않고 만족스러운 맞춤형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줌. 장애인 신혼부부 전용 결혼 상담 서비스는 장애인 결혼에 대한 인식을 높여줌으로써 전체 장애인 인권 신장에 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보임. 2. 장애인 부부의 올바른 결혼생활 유도를 위한 결혼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인 부부의 이혼 비율을 줄이고 가정의 행복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3. 장애인도 자연스럽게 경쟁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
-----------	---

장애인 보호자의 비장애인 자녀 통합지원 서비스

	<p>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개인 욕구의 충족을 도와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어 장애인들의 성취감, 참여 의식, 일체감이 증대될 것임.</p> <p>4. 음식으로 인한 아이 발달 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음.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며, 국가적 인재 양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학생의 필요에 맞는 추가적 교육을 통해 자녀의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학습 부분을 해소해줌. 학교와의 소통을 원활히 함.</p> <p>5. 신혼부부 장애인에게 주거에 대해 지원을 해줌으로써 더욱더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끌어낼 수 있음. (1) 주택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계속 상승하는 집값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됨.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줌. 미래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릴 수 있음. (2) 장애인 부부가 주변 주택 매매 가격보다 청약률 통해 주택을 얻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음.</p>
<p>결과</p>	<p>장애인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학령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남. 장애인 보호자의 돌봄에 있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음, 장애인 보호자의 모성권을 존중해줌으로써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증대함, 장애인 보호자의 자녀의 진로 목표 의식 제고,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줌, 나이별 맞춤형 교육을 정상적인 학습발달 보장, 여성장애인 권리 신장, 비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사이의 소통의 간극을 좁힘, 장애인 보호자의 자녀 자아정체성 형성에 도움, 효과적 가족 상담으로 인한 가족 내 화합 증대 정보를 받음으로써 보호자의 관심도 향상, 장애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p>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정책제안 발표자료

2021 장애인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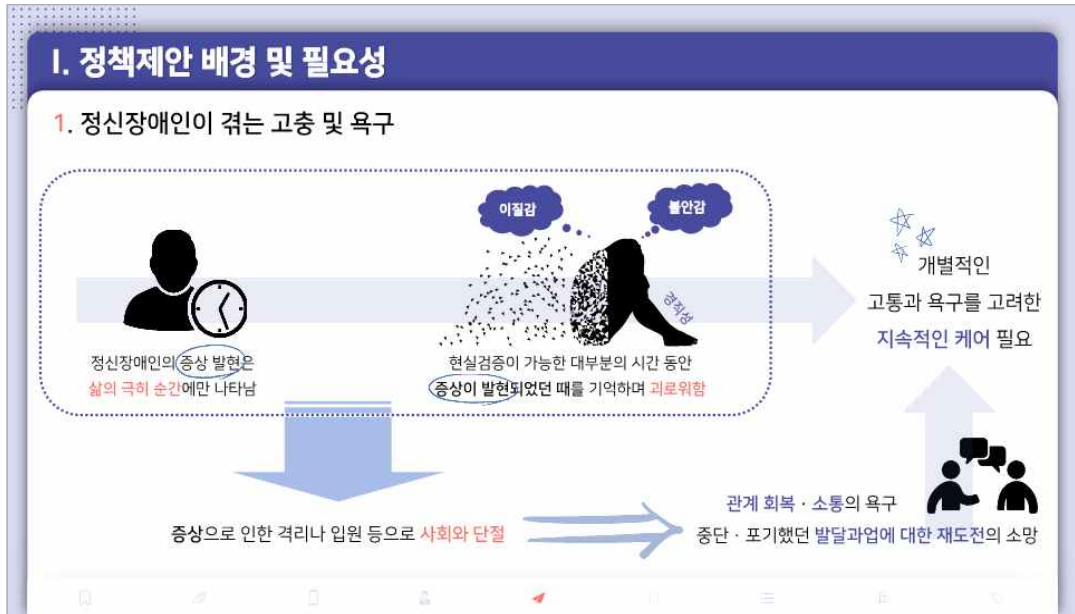
※ 본 게시물은 한국장애인재단의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에 참여한 제안팀의 제작물로 무단 수정, 복제, 공유 및 배포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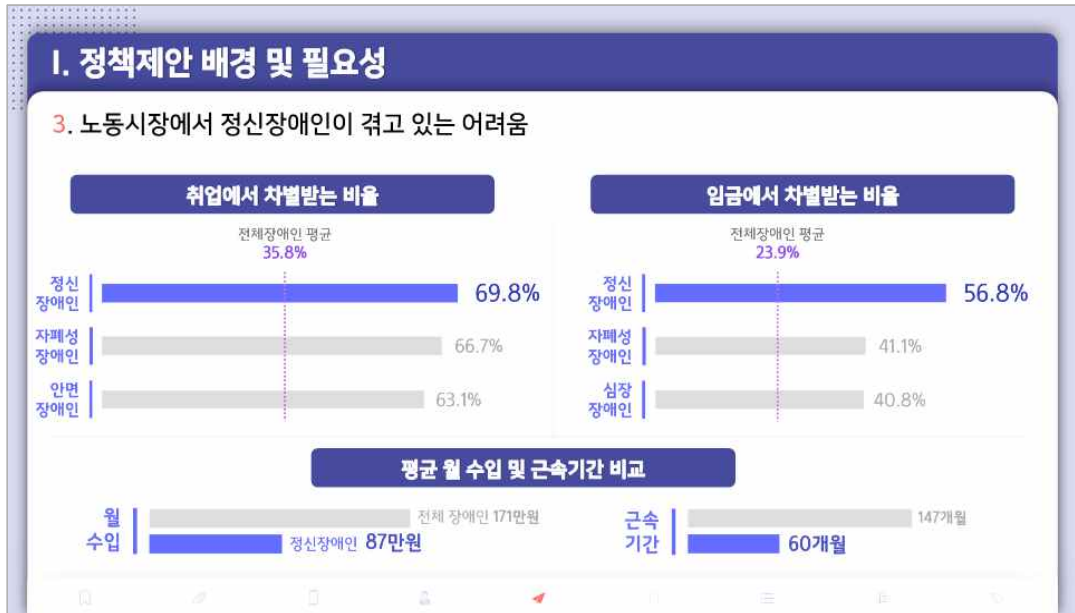
목 차

- I.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II. 정책 내용
- III. 기대효과
- IV. 제언
- V. 참고문헌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1.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3. 노동시장에서 정신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상태가 악화되면,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수치심**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사례제공 서비스** 제공,
동료들 간 **지지 체계** 구축 노력 필요



김문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은
정신장애인은 '위험'하고 '능력이 없고',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편견을 지니고 있을 경우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무모한 일일 것이다.

사회적 편견 개선 노력과 정신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필요

1.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4. 정신장애인 관련 현행 제도 검토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울시 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으로 고용의무 대상을 규정한 일반과는 달리 장애유형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부재 • 장애유형이 아닌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고용 장려금의 단가가 다르게 설정 • 생산성, 통합 용이성의 특징을 보이는 장애 유형을 선호하기에 정신장애인은 본 제도를 통한 고용 기회가 드문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극히 적음 • 장애유형별 할당제(발달장애-그 외의 장애)를 적용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율은 규정되지 않음 • 기존 동료지원가의 직무는 사회복지사나 전문요원의 업무와 중복되며, 업무량 과중과 실적 압박이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동료지원가의 업무는 기존 정신건강 전문직들의 보조자 역할 • 현장에서 동료지원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실무자와 동료지원가 간의 갈등이 발생 • 양성교육은 개념과 역할, 자원에 관한 지식·정보 위주로 실습 과정 없이 상당히 짧은 시간으로 구성됨

➔ **현행 제도만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안정적-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함**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1.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5.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활성화 필요성

1) 정신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서 동료상담가

❖ 스트레스 상황과 위기 상황 경감 가능

“한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백업하고 보듬어줘서
스트레스 상황, 재발 징후 등 촉발 요인들을 완화시키면서
결국은 병원으로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 송영애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좌절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한채민, 김영근, 「장애동료상담을 경험한 상담자와 내담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중

❖ 열악한 노동시장 한계의 극복

정신장애인 상시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0.02%에 불과하며, 단순노동에 집중



교육·실무를 연계하고 고용을 통한 생계 해결을 충족시킴으로써
그간 정신장애인의 제한된 취업 영역을 극복하고 취업률을 제고하여
노동시장의 한계를 극복

1.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5.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활성화 필요성

2) 동료상담가(서비스 제공자) - 정신장애인(서비스 이용자) 모두 긍정적 효과 경험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서비스 제공자)

- ✓ 의료적 측면
정신건강의 회복, 정신과적 증상의 긍정적 변화
- ✓ 정서적 측면
긍정적 감정·사고, 자존감·자신감 향상, 무력감 탈피
- ✓ 영적 측면
삶의 관점 긍정적 변화, 성장 경험, 잠재력에 대한 희망
- ✓ 사회적 측면
사회적 관계 기술 향상, 낙인에 대한 감소
- ✓ 직업적 측면
기술과 역량 강화, 문제해결 기술 향상, 동료상담가로서 의미있는 정체감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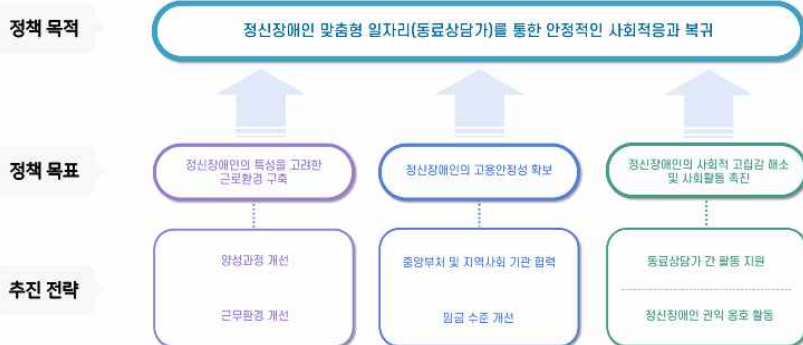
정신장애인 (서비스 이용자)

- ✓ 의료적 측면
병원 이용 빈도와 증상 감소, 재입원을 감소,
위기 서비스의 이용도 감소
- ✓ 정서적 측면
자아존중감의 향상, 자신감 증가, 자기낙인 감소
- ✓ 사회적 측면
자율성 증가
- ✓ 임파워먼트
가치있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 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 획득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II. 정책 내용

1. 정책의 목적 및 목표



II. 정책 내용

2. 적용 방안

1) 사업 수행 모델

1. 동료 상담

같은 정신장애 당사자로서 공감과 수용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 발굴 및 상담 제공

2.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지

- 약 복용,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경험 공유
- 필요시 동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지

동료상담가 직무는...



3. 예비 동료 상담가 멘토링

- 예비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현장실습 지도
- 현장실습 과정에서 적극적인 피드백 제공

4. 정신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참여를 통한 권익 옹호 활동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II. 정책 내용

2. 적용 방안

1) 사업 수행 모델

1. 동료 상담

같은 정신장애 당사자로서 공감과 수용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 발굴 및 상담 제공

2.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지

- 약 복용,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준비에 대한 경험 공유
- 필요시 동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지

동료상담가 직무는...



3. 예비 동료 상담가 멘토링

- 예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현장실습 지도
- 현장실습 과정에서 적극적인 피드백 제공

4. 정신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참여를 통한 권익 옹호 활동

II. 정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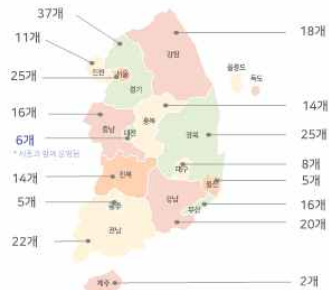
2. 적용 방안

1) 사업 수행 모델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프로그램

동료상담가들 간 슈퍼비전 : 피어넷(Peer-Net)

- 월 1회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슈퍼비전 진행
- 현장 상담활동에 대한 피드백 상호 교환 및 공동 해결
- 동료로서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성

지역별 기초 정신건강센터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수가 많은 지역은 여러 단위로 나누어 피어넷(Peer-Net) 운영할 예정임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II. 정책 내용

2. 적용 방안

1) 사업 수행 모델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프로그램

직원 화합 프로그램
: 소.화.기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관)

<p style="text-align: center;">프렌드십 어워드</p> <p>동료상담가는 실무자를, 실무자는 동료상담가에게 직원 간 화합에 기여한 사람을 추천하여 매달 포상</p>	<p style="text-align: center;">동아리 및 소모임 지원</p> <p>동료상담가와 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동아리/소모임에 6개월마다 50만원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C.C. 게시판 운영 (Center Colleague)</p> <p>자유게시판 형태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 달에 1명씩 인터뷰하여 다른 동료에 대한 이해 및 소통 증진</p>	<p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p> <p>기관 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결하기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 지원</p>

II. 정책 내용

2. 적용 방안

2)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 ▪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료상담가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조건 및 급여 ▪ 월 120시간 → 주 30시간 탄력근무제 운영 ▪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6시간) 제공 ▪ 연간 최대 60일 병가 ▪ 생활임금이상 및 주휴수당 지급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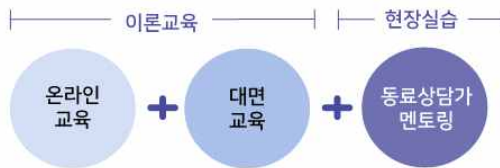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II. 정책 내용

2. 적용 방안

3)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 양성교육과정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5인 이상을 집필진으로 포함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함
- 양성교육은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동료상담가에게 필요한 가치 및 태도, 지식 및 정보, 기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취업한 동료상담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평가와 재보수 교육을 제공함

II. 정책 내용

2. 적용 방안

3)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수료 기준
이론 교육	온라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100% • 온라인시험 평균정답률 80% 이상
	대면 교육	
동료상담 가치와 원칙, 직업적, 법적, 윤리적 개념들 정신건강사업 및 서비스 전달체계 이해,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안내 팀워크, 유관기관 공조, 인권 및 권익 옹호 컴퓨터 및 문서 활용		
동료상담 지식 : 위기관리, 스트레스 관리, 서비스 및 자원, 안전준수 절차, 자해 및 자살예방 절차, 정신질환, 약물 등		
핵심관계 기술 : 회복중심, 인간중심, 회복경험 공유, 순례적 관계, 가족지지, 적극적 감정 및 의사소통, 멘토링 등		
당사자 지원 : 개인회복지지 역량, 사회참여 촉진역량, 위기개입, 문제해결기술 촉진역량, 케어/회복계획 공동수립역량, 서비스 및 지지자원 접근촉진 역량 등		
동료상담가 자기성장 : 셀프케어, 회복계획, 업무에 대한 반영, 슈퍼비전의 효과적 사용 등		
응용기술 : 심리상담접근, 상담기록법, 집단지도, 디지털사용 지원		
현장실습 가정방문 및 현장 업무 * 기존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의 적극적인 피드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90% 이상 • 과제: 과제 평균 B+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90% 이상 • 동료상담가 평가: B+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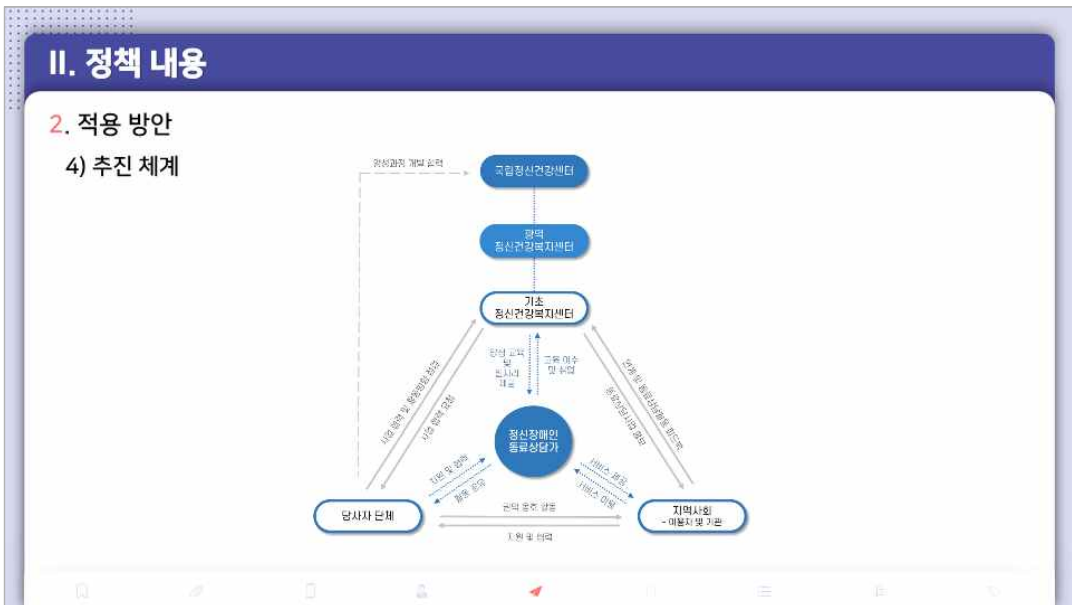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II. 정책 내용

2. 적용 방안

3)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존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p>당사자주의 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당사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의료 패러다임에 입각한 상담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의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집필진으로 포함하여 교육과정 개발 · 동료상담의 지향과 회복 철학에 맞는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 	
<p>양성교육 과정의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된 교육기관으로 인해 교육의 관점과 주제, 기간, 훈련 강도 측면에서 편차가 큼 · 동료지원가로서 실질적 역량을 개발하기에 미흡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양성교육과 매뉴얼로 일원화 	
<p>교육평가 및 재보수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지원가 양성과 재보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주기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함 · 정기적으로 재보수 교육을 제공함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II. 정책 내용

2. 적용 방안

4) 추진 체계

국립정신건강센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당사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총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및 배포 사업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사업 총괄 피어넷(Peer-Net) 운영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업무 환경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수행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시행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업무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협력 양성과정 개발 협력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및 협력

II. 정책 내용

3.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법

인건비			개발비			운영비		합계
보수	법정부담금	소계	사이트 개발비	교육영상 개발비	소계	사업추진비	소계	
4,920	461	5,381	300	70	370	244	244	5,995

인건비

- 임금 기준 : '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주 30H 근무
- 월 급여 = 10,702원 X 157H = 1,680,214원
- 보수액 = 1,680,214원 X 12M X 244개소 X 1명 = 4,916,666,592원
- 법정부담금(4대 보험비) = 461,160,000원
*국민연금 = 221,356,800원 / 건강보험 = 168,740,640원 / 고용보험 = 51,649,92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19,412,640원

개발비

- 사이트 개발비 : 서울시 글로벌센터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 참고 *번역비 1억원 제외한 총사업비 3억원
- 교육영상 개발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참고

운영비

- 사업추진비 (소화기 프로그램 운영비)
 - 동아리 및 소모임 지원 = 50만원 X 2반기 X 244개소 = 244,000,000원
 - 프렌드십 어워드, C.C 게시판 운영 : 기 편성된 정신건강센터 사업추진비 활용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 전문상담기관과의 MOU 통해 소요 예산 절감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III. 기대효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긍정적 효과

- (서비스 제공자) 동료상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가로서의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낙인 및 자기-스티그마 저하 가능
- (서비스 이용자) 회복 과정을 경험한 동료상담가의 도움을 통해 이용자의 회복탄력성을 강화
- (공통) 사회활동을 통한 정신장애 증상의 완화 및 약물 복용의 감소

III. 기대효과

-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필수급과 경제적 안정성 기대 가능
- 안정적인 근로소득 확충을 통한 정신장애인 삶의 질 개선
-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지속성 제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안정적 근로환경 구축

III. 기대효과



상생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디딤돌 역할

-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전제로 한 **지역사회 통합**으로서 일자리 정책
- 동료상담 활동을 통한 당사자의 지지체계로 기능하여 탈시설 후 **안정적 사회복귀와 복귀**에 기여

IV. 제언

1. 장애인 동료상담가 자격기준 향상

- 서비스 인력 제공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이 안정기에 다다르면 자격기준을 향상하고자 함
- 자격기준 향상 전에 양성된 기존 상담 인력들은 보수교육을 통해 인력 간 편차를 줄이고자 함

2. 양성과정 중 현장실습 실천현장 확대

- 기존에 지정된 기관들 외에 현장실습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 동료상담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관련법 제·개정 통한 현장실습 사업비 지급 근거 마련 필요

- 교육훈련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서 규정한 훈련수당 지급 인정기관이 아니기에, 현장실습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법의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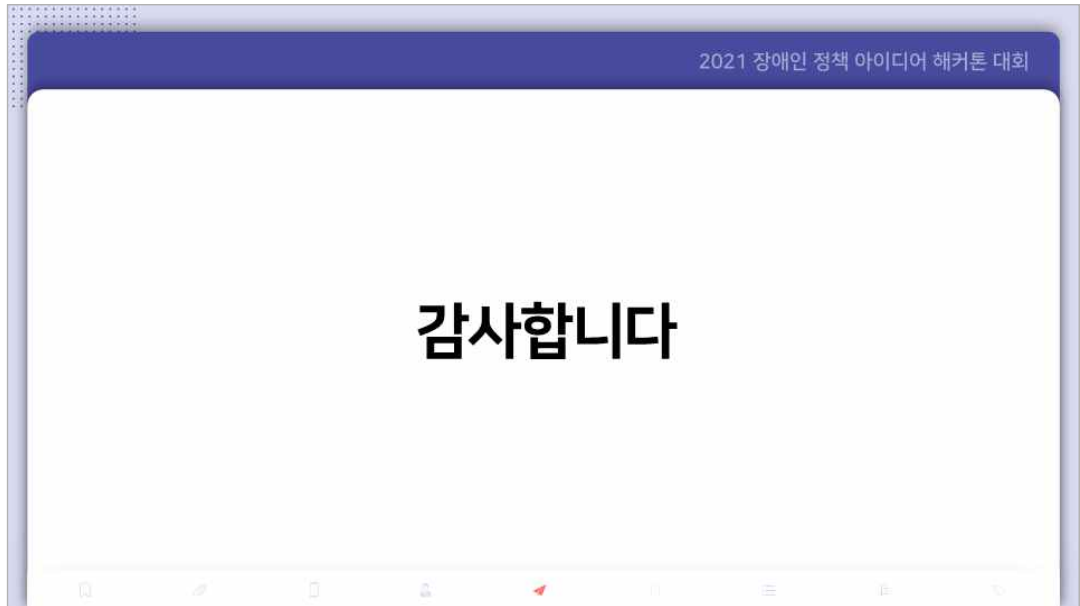
V. 참고문헌

- 강우진, 이향연, 강동욱, 강선진 (2011).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과 정책동향 분석**, 경기복지재단.
- 김민아, 이선혜, 서진환, 송영매, 김정은 (2016). **당사자 렌즈로 바라본 "나의 삶": 정신장애인 포토보이스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0권 제2호: 105-138.
- 김상숙 (2020).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 : Parse의 연구방법 적용**,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0권 제2호: 105-138.
- 김원호 (2019).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실태분석**,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0권 제2호: 105-138.
- 김한별 등 (2018). **정신건강서비스 영역 내 동료지원 활동 비교 연구 - 서울시 동료지원 사업 운영에의 함의 도출을 중심으로 -**, 정신보건 제8권: 40-53.
- 서진환 · 이선혜 (2007). **정신분열병을 가진 사람의 환경에 대한 사회복지사 개입** 사회복지연구, 35(10): 469-497.
- 송승연(Song Seung Yeon) (2021).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제51권 제51호: 61-92.
- 신정하, 신윤재, 이명수 (2013).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가 직업 영역 개발 연구**, 정신보건 제4권: 35-46.
- 우소현 (2020). **동료지원가 활동을 통해 나타난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경험**,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제17권 제1호: 40-48.

V. 참고문헌

- 이가연 (2018). **정신장애인 절반 이상이 '생계급여 수급자'**,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4>).
- 조윤화 등 (2014).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
- 제갈은주 (2021).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표준화 시범교육과정 평가**,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하경희 (2014). **정신장애인 동료지활동 프로그램이 동료지원가의 회복에 미치는 효과 - 활동 유지집단과 중단집단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재활복지 제18권 제1호: 31-52.
- 한채민, 김영근 (2018). **장애동료상담을 경험한 상담자와 내담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5권 제1호: 85-107.
- 기획재정부 (2021).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2021 장애통계연보**.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정책제안 발표회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제안 5팀

〈제안 개요〉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직무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프로그램
- 전달체계 및 협력기관
- 양성 교육과정
- 근로 조건 및 급여

I.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정신장애인이 겪는 고충 및 욕구

1) 정신장애 특성

- 정신장애인의 증상 발현은 삶의 극히 짧은 순간에만 나타나는 임상적 특징이며, 현실검증이 가능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때를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있음.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함(김민아 외 4, 2016).

2)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활동의 욕구

- 정신장애인들은 증상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으로 외부와의 단절을 경험함. 이에 사회로 나아가 단절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남. 또한 발병으로 인해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했던 발달과업들에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냄(김민아 외 4, 2016).

3) 장애유형 중 가장 열악한 생활여건

- 정신장애인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017년 기준 54.7%로 전체장애인의 생계급여 수급률 15% 대비 약 4배 높았음. 특히 전체인구 생계급여 수급률(2.4%) 대비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이가연, 2018).
- 이처럼 정신장애는 15개 장애유형 중 수급률이 가장 높으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률에 있어 중증장애인 대비 약 2배, 전체장애인 대비 약 4배 높은 수치로 나타남. 중앙지원단은 “정신장애가 장애유형 중 가장 열악한 생활여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힘(이가연, 2018).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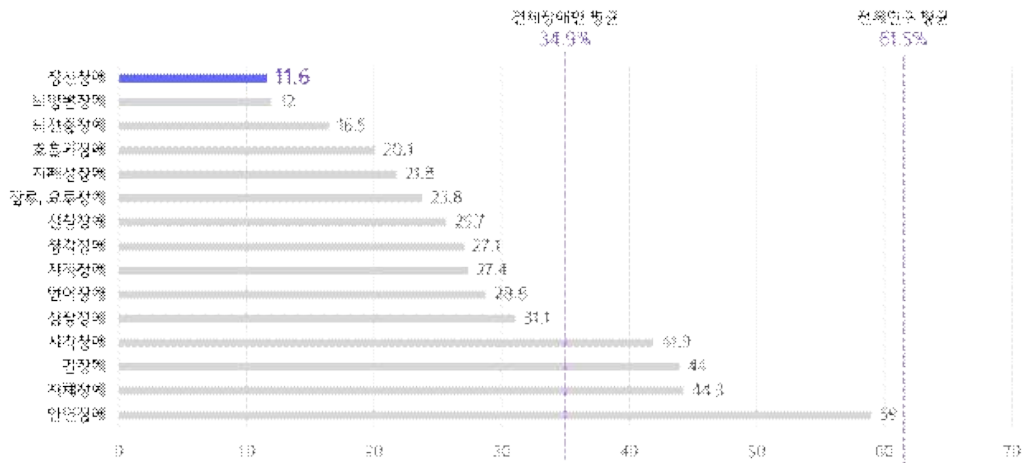


〈그림 1〉 인구 특성별 생계급여 수급률 비교

2. 정신장애인 일자리 현황

1)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낮은 고용률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인구의 15세 이상의 고용률은 61.5%인 데에 반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1.6%로 집계됨.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 순위에서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수치임.



〈그림 2〉 2019년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 비교

- 2018년과 2019년의 고용률을 비교해본 결과, 전체 인구나 전체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소폭 상승한 반면, 정신장애인은 0.7%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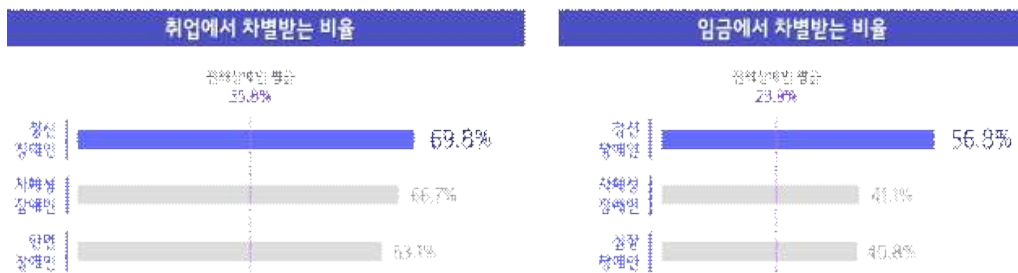
2)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정신장애인

-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취업자 1만 1,855명 중 49%가 임시근로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임시근로자 중 67%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였고,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임시근로자 비중(31%)보다 2배 이상 높음.
- 중증 장애인의 임시근로자 비율인 39%와 비교해도 정신장애인 임시근로자 비중이 더 높음.

3. 노동 시장에서 정신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1) 직종, 승진, 임금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

- 정신장애인은 타 장애유형보다도 사업주들이 고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면에서 제한적임. 정신장애인이 취업에서 차별을 받는 비율은 69.8%로, 자폐성장애(66.7%)와 안면장애(63.1%) 비율보다 높고, 전체 평균 35.8%보다 약 두 배 높음.



〈그림 3〉 노동시장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

- 승진 차별 경험은 48.6%, 임금 차별 경험은 56.8%로 전체 장애인 평균 경험 비율보다 약 두 배 이상 높음.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조사(2021)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월평균 수입은 87만원, 평균 근속기간은 60개월에 그침. 이는 장애인 평균 월수입 171만원, 평균 근속기간이 147개월보다 낮은 수치임.
- 특히, 정신장애인은 최저시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겪고 있음.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사회적 관계 및 지지체계가 취약한 정신장애인

-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직장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수치심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함. 정신장애인의 특성 상 근로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동료들 간의 지지체계가 필요함에도, 그런 환경을 갖춘 일자리가 현재 마땅치 않은 상황임.
- 노동시장에 정신장애인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그런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절실함.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 김문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높은 실업률로 이어진다고 설명함.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은 정신장애인은 ‘위험’하고 ‘능력이 없고’,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편견을 지니고 있을 경우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무모한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에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정신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4. 정신장애인 관련 현행 제도 검토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표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현황 및 한계점

구분	내용
현황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한계점	1.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고용의무 대상을 규정한 일본의 장애인 고용의무법제와 달리 장애유형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음.
	2. 장애유형이 아닌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를 기준으로 고용장려금의 단가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3. 고용주는 생산성이 높고 기존 근로자들과 통합이 용이한 장애유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통한 고용 기회가 드문 편임.

2)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표 2〉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의 현황 및 한계점

구분	내용
현황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
한계점	<p>1. 정신장애인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시범사업 기준 전체 장애인 참여자 1,884명 중 정신장애인 참여자는 77명(약 4.1%)임. 그러나 77명의 참여자는 경북 71명, 부산 6명으로, 타 시도나 수도권에서는 참여자가 전혀 없었음.</p> <p>2. 발달장애와 그 외의 장애로 장애유형별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율은 규정되지 않음.</p> <p>3. 기존 동료지원가의 직무는 그 범위가 방대해 사회복지사나 전문요원의 업무와 중복되며 차별성이 불분명함.</p> <p>4. 방대한 직무로 인해 업무량 과중과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동료지원가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함.</p>

3)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표 3〉 기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의 현황 및 한계점

구분	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회복과정을 경험했던 정신장애인이 다른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의 주요 업무는 동료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교육강사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양성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70%;">교육내용</th> <th style="width: 30%;">교육시간</th> </tr> </thead> <tbody> <tr> <td>오리엔테이션</td> <td>1시간</td> </tr> <tr> <td>동료지원가 자세와 태도</td> <td>3시간</td> </tr> <tr> <td>동료지원가의 의미, 외국의 동료지원가 활동</td> <td>3시간</td> </tr> <tr> <td>프로그램 이해와 운영</td> <td>4시간</td> </tr> <tr> <td>동료지원가와의 만남</td> <td>2시간</td> </tr> <tr> <td>독립주거지원서비스</td> <td>3시간</td> </tr> <tr> <td>자신의 회복계획 세우기</td> <td>3시간</td> </tr> <tr> <td>가정방문지원서비스</td> <td>4시간</td> </tr> <tr> <td>교육강사 활동(상담가의 태도와 인권)</td> <td>3시간</td> </tr> <tr> <td>개별상담의 이해</td> <td>4시간</td> </tr> <tr> <td>직장생활 교육</td> <td>2시간</td> </tr> <tr> <td>서식활용 및 컴퓨터활용</td> <td>4시간</td> </tr> <tr> <td>대기자 상담서비스, 신규회원 멘토링 서비스</td> <td>3시간</td> </tr> <tr> <td>내부평가 및 수료식</td> <td>1시간</td> </tr> <tr> <td>합계</td> <td>40시간</td> </tr> </tbody> </table>	교육내용	교육시간	오리엔테이션	1시간	동료지원가 자세와 태도	3시간	동료지원가의 의미, 외국의 동료지원가 활동	3시간	프로그램 이해와 운영	4시간	동료지원가와의 만남	2시간	독립주거지원서비스	3시간	자신의 회복계획 세우기	3시간	가정방문지원서비스	4시간	교육강사 활동(상담가의 태도와 인권)	3시간	개별상담의 이해	4시간	직장생활 교육	2시간	서식활용 및 컴퓨터활용	4시간	대기자 상담서비스, 신규회원 멘토링 서비스	3시간	내부평가 및 수료식	1시간	합계	40시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오리엔테이션	1시간																															
	동료지원가 자세와 태도	3시간																															
	동료지원가의 의미, 외국의 동료지원가 활동	3시간																															
	프로그램 이해와 운영	4시간																															
	동료지원가와의 만남	2시간																															
	독립주거지원서비스	3시간																															
	자신의 회복계획 세우기	3시간																															
	가정방문지원서비스	4시간																															
	교육강사 활동(상담가의 태도와 인권)	3시간																															
	개별상담의 이해	4시간																															
	직장생활 교육	2시간																															
	서식활용 및 컴퓨터활용	4시간																															
대기자 상담서비스, 신규회원 멘토링 서비스	3시간																																
내부평가 및 수료식	1시간																																
합계	40시간																																
한계점	<p>1.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의 명확하지 않은 업무로 인해, 현장에서 동료지원가의 업무는 기존 정신건강 전문직들의 보조자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함.</p>																																
	<p>2.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동료지원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실무자와 동료지원가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p>																																
	<p>3.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양성교육은 동료지원가 개념과 역할, 자원에 관한 지식·정보 위주로 실습 과정 없이 상당히 짧은 시간으로 구성됨. 이는 '정신장애인의 경험에 기반한 회복'이라는 동료지원가의 역량을 발휘하기에 그 내용과 강도가 미흡함 (이선희 외, 2021).</p>																																

5.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화 필요성

1) 정신장애인 당사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서 동료상담가

(1) 스트레스 상황과 위기 상황 경감 가능

-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동료상담가들)이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연대를 할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략) 한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백업하고 보듬어줘서 스트레스 상황, 재발 징후 등 촉발 요인들을 완화시키면서 결국은 병원으로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송영매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 <서울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설명 중)
- 장애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좌절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성 또한 기대할 수 있음(한채민·김영근, 2018:87)

(2)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노동 시장 한계 극복

- 제한된 취업 직종 타파
- <2019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 상시근로자는 수리 및 개인서비스 환경복원업, 운수업 등(51%), 제조업(31%),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11%) 순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단순 노동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동료상담가 양성 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심리 상담이라는 전문적 노동을 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신장애인은 무능력하다’라는 편견을 지울 수 있을 것임.
- 저조한 취업률의 제고
- <2019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상시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0.02%이며,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1.39%에 불과하여 정신장애인의 고용 촉진이 필요함.
-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특수성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실제로 <서울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17명의 동료상담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동료상담가 및 동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 당사자와 행정직원 등 총 8명이 타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을 시작함.
- 정리하자면, 교육과 실무의 연계 및 고용을 통한 생계 해결을 충족시킴으로써 그간 정신장애인의 제한된 취업 영역을 극복하고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동료상담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2) 동료상담가(서비스 제공자)-정신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모두 긍정적 효과 경험

(1) 동료상담가(동료 상담 서비스 제공자) 측면

〈표 4〉 동료상담활동의 효과 (동료상담가 측면)

의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의 회복 - 정신과적 증상의 긍정적 변화
정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감정 경험 - 자존감과 자신감의 향상 -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 무력감 탈피
영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관점 변화(삶에 대한 책임감 제고) - 성장 경험 - 잠재력에 대한 희망
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기술 향상 - 낙인에 대한 감소
직업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과 역량 강화 - 문제해결 기술 향상 - 전문가·동료상담가로서 의미 있는 정체감 발달

*주: 하경희(2014) 등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표로 재구성함.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2) 정신장애인(동료 상담 서비스 대상자) 측면

〈표 5〉 동료상담활동의 효과 (정신장애인 측면)

의료적 측면	- 병원 이용 빈도와 증상 감소 - 위기 서비스의 이용도 감소 - 재입원율 감소
정서적 측면	- 자아존중감의 향상 - 자신감 증가 - 자기낙인 감소
사회적 측면	- 자율성 증가
임파워먼트	- 가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 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 획득

*주: 제갈은주(2021) 등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표로 재구성함.

II. 정책 내용

1. 정책의 목적 및 목표



〈그림 4〉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의 정책 목적, 목표 및 추진 전략

2.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 만 18세 이상 정신장애인 중 희망하는 자

3. 적용 방안

1)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직무

〈표 8〉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의 주요 직무

구분	내용
동료상담	· 지역사회 내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 발굴 및 상담 제공 * 기존 정신과적 치료와 진단의 목적에서의 상담이 아닌, 같은 정신장애 당사자로서 정신과적 경험에 대한 공감과 수용을 기반으로 함. ** 2019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표준화 교육과정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약물 관리에 중점을 두어 동료들의 실제 경험은 잘 다루지 못함.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지	· 약 복용,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경험 공유 및 조언 · 필요시 동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지
예비 동료 상담가 멘토링	· 예비 정신장애인 동료 상담가 현장실습 지도 · 현장실습 과정에서 적극적인 피드백 제공
정신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 기타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참여를 통한 권익 옹호 활동

2)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프로그램

(1) 동료상담가들 간 슈퍼비전 운영(피어넷, Peer-Net)

- 월 1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슈퍼비전 진행

〈표 9〉 광역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기초	25	16	8	11	5	6	5	37	18	14	16	14	22	25	20	2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가 많은 지역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여러 단위로 나뉘어 슈퍼비전 진행할 예정. (etc. 서울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 현장 상담활동에 대한 피드백 상호 교환 및 공동 해결
 - 전문가주의에서 벗어나 같은 당사자, 나아가 동료로서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성
- 동료상담 활동의 집단적 경험을 매뉴얼화 하여 동료상담 정체성 강화

(2) 직원 화합 프로그램 운영(소.화.기.)

〈표 10〉 직원 화합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직원 화합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명	세부 내용
소.화.기. 프로그램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관)	프렌드십 어워드	동료상담가는 다른 직원을, 다른 직원은 동료상담가에게 직원 간 화합에 기여한 사람을 추천하여 매달 포상.
	동아리 및 소모임 지원	동료상담가와 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동아리 및 소모임에게 6개월마다 50만원 지원.
	C.C. 게시판 운영 (Center Colleague)	다른 동료에 대해 알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자유게시판 형태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 달에 1명씩 인터뷰.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 Employee Assistance Program)	동료상담가를 포함한 기관 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함. 직원들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집단 상담을 지원.

3)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선발 및 교육

(1) 자격 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

(2) 근로 조건 및 급여

- 근로조건
 - 월 120시간(주 30시간 탄력근무제 운영)
 -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6시간) 제공
 - 연간 최대 60일 병가
- 동료상담가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시간은 월 최소 120시간*, 생활임금이상 및 주휴수당 지급**

*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21년 서울형 생활임금, 주 30시간, 월 120시간 근무 기준)

- (근로 30시간 + 주휴 6시간) × 4.345주 = 156.42시간 → 157시간

- 월 급여 = 생활임금 10,702원 × 157시간 = 1,680,214원

** 배정된 동료상담가 인원 내에서 각 정신건강복지센터 실정에 맞게 근무시간 상향조정 가능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3) 양성 교육과정

① 양성교육 개발

- 양성 교육과정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5인 이상을 집필진으로 포함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함.
- 전국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내용 및 운영 방식을 수정·보완할 예정임.

② 양성교육 내용 및 운영 방식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교육은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에게 필요한 가치·태도, 지식·정보, 기술 등의 역량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온라인 및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론 교육'과 이론 교육을 체화하는 '현장실습'으로 구성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되어 있으며, 대면 교육과 현장실습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됨.

- 현장 실습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의 멘토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존 동료상담가의 적극적인 피드백과 평가가 이루어짐.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커리큘럼 예시는 다음과 같음.

<표 11>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방식의 예시

이론 교육	온라인 교육	동료지원의 의미와 배경 직업적, 법적, 윤리적 개념들 - 동료상담 가치와 원칙
		정신건강사업 및 서비스 전달체계 이해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안내
		- 팀워크, 유관기관 공조 인권 및 권익 옹호
		컴퓨터 및 문서 활용
	대면 교육	동료상담 지식 · 위기관리, 안전준수 절차, 스트레스 관리, 서비스 및 자원, 자해 및 자살예방 절차, 정신질환, 약물 등
		핵심관계 기술 · 회복경험 공유, 인간중심, 회복중심, 호혜적 관계, 가족지지, 적극적 경청 및 의사소통, 멘토링 등
		당사자 지원 · 개인회복지지 역량, 사회참여 촉진역량, 위기개입, 문제해결 기술 촉진역량, 케어/회복계획 공동수립역량, 서비스 및지지 자원 접근촉진 역량 등
		동료상담가 자기성장 · 회복계획, 업무에 대한 반영, 셀프케어, 슈퍼비전의 효과적 사용
	옵션기술 · 심리상담접근, 상담기록법. 집단지도, 디지털사용 지원	
현장실습	가정방문 및 현장 업무	

③ 양성교육 수료 기준

④ 취업 후 교육평가 및 재보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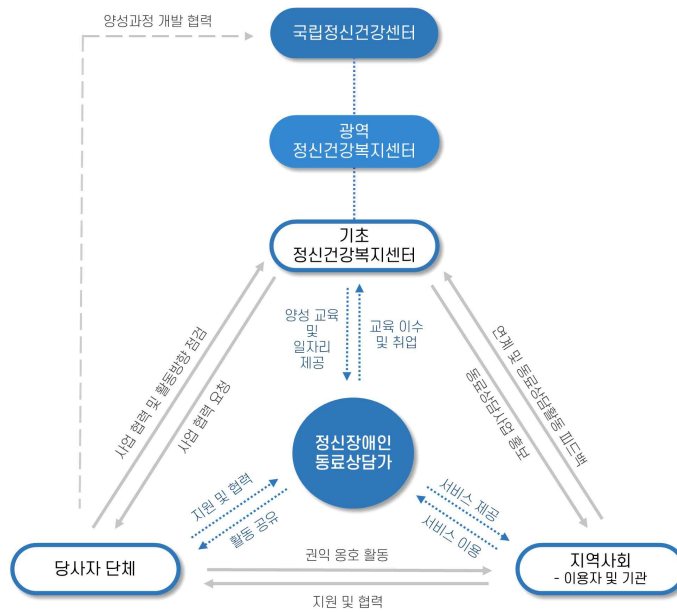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표 12〉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의 수료기준

이론 교육	온라인 교육	- 출석: 100% - 온라인 시험: 평균 정답률 80% 이상
	대면 교육	출석: 90% 이상 과제: 과제 평균 B+ 이상 획득
현장실습		- 출석: 90% 이상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평가: B+ 이상 획득

- 양성교육 수료 이후 취업한 동료상담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평가와 재보수 교육을 제공함.
- 2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실태조사’를 통해 수정·개편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재보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4) 추진 체계 및 주요 업무



〈그림 5〉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추진체계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표 13〉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기관별 주요 업무

국립정신건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총괄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개발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및 배포 • 사업 모니터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총괄 • 피어넷(Peer-Net) 운영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업무 환경 모니터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수행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시행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업무 환경 조성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협력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개발 협력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및 협력

○ 기존 동료지원가 양성 과정과의 차별성

〈표 14〉 기존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의 한계점 및 차별성

기존 동료지원가 양성 과정의 한계점	당사자주의 동료상담가 양성 과정의 차별성	
1) 당사자주의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당사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의료패러다임에 입각한 상담교육은 치료적·전문적 도구로서 동료지원에서 추구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음.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동료지원가 교육과정 중 '동료지원' 영역에서 동료지원의 의미와 배경은 1시간만 배정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정신질환 이해와 올바른 약물 이해, 응급위기 관리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의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교육과정 집필진을 구성하여 당사자 동료상담가로서의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자 함. - 동료상담의 지향과 회복 철학에 맞는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에게 필요한 가치·태도, 지식·정보, 기술 등의 역량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함.
2) 양성교육 과정의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지원가 양성교육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시정신건강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국 약 8개 기관에서 교육 주관기관마다 상이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됨. - 이로 인해 교육의 관점과 주제, 기간, 훈련 강도 면에서 편차가 크고, 동료지원가의 실질적 역할을 개발하기에 미흡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동료상담가 직무와 양성교육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된 양성교육과 매뉴얼로 일원화함. - 표준화된 동료상담가 직무기술서에 따라 그에 맞는 양성교육 과정을 개발함.
3) 취업 후 교육평가 및 재보수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동료지원가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 커리큘럼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동료지원가 양성과 재보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상담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평가와 재보수 교육을 제공함. - 2년 주기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일자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교육과정 검토와 재보수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4.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법

〈표15〉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 관련 산출 예산

(단위: 백만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용	비고
인건비	보수* [110-03목]		4,920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 인건비(상용근로자)
	법정부담금 (4대보험) [320-04목]	국민연금 부담금	221	
		건강보험 부담금	169	
		고용보험 부담금	52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9	
소계				5,381
개발비	사이트 개발비 [320-02목]	개발 용역비	160	
		SW 구매비	90	
		웹 접근성 개발비	50	
	동료상담가 교육 영상 개발비 [320-02목]	기본 개발비	61	스토리보드, 미디어, 표준차시 개발, 품질 관리, 시범/시험 운영, 유지관리 등 전반
		추가 개발비	9	모바일 개발 및 웹 접근성 확보
소계				370
운영비	사업추진비 [240-01목]	소화기 프로그램 운영비	244	동료상담가 & 정신건강센터 직원 간 화합 프로그램 등 공식업무 추진 경비 지원
		소계		
합계				5,995

*주 : 상용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로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산출표의 가시성과 작성의 용이성을 위해 인건비에 포함함.

1) 재원 편성 근거

(1) 보수

- (임금 기준, 근무 시간) '21년 서울형 생활임금, 주 30시간 근무 기준

- (월 급여) 10,702원 × 157시간 = 1,680,214원

* (근로 30시간 + 주휴 6시간) × 4.345주 = 156.42시간 ≈ 157시간

- (최종 산출) 1,680,214원 × 12개월 × 244개소 × 1명 = 4,919,666,592원

* 지역사회 내 기초정신건강센터는 2020년 기준 244개소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2) 4대보험 법정부담금

* 월 보수 금액 1,680,214원을 기준으로 작성 (사업주 부담금)

- (국민연금) 75,600원 × 12개월 × 244개소 × 1명 = 221,356,800원
- (건강보험) 57,630원 × 12개월 × 244개소 × 1명 = 168,740,640원
- (고용보험) 17,640원 × 12개월 × 244개소 × 1명 = 51,649,92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6,630원 × 12개월 × 244개소 × 1명 = 19,412,640원

(3) 사이트 개발비

〈표 16〉 사이트 개발비 세부 예산

(단위 : 천원)

개발용역비	SW 구매비	웹 접근성 개발비	번역비
160,000	90,000	50,000	100,000

*주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2021 「서울시 글로벌센터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 참고

- 국내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를 위한 웹사이트 개발이므로, 번역비 1억 원을 제외한 금액인 3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함.

(4) 동료상담가 교육 영상 개발비

① 교수설계의 유형

- 교수설계는 과정기획, 학습유형, 학습내용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 3수준으로 정의됨.
- ‘정신장애인’ 동료 ‘상담’이 교육 주제인 만큼, 드라마 영상·시뮬레이션 등 특수 제작 기법의 과정기획이 소요되어 과정기획은 3단계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복잡한 제작 기법이 사용되었기에 학습유형 역시 3단계로 설정함. 학습내용은 상담 직무의 기본 과정으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학습내용은 2단계로 설정함.

② 평균 개발 대가 (과정기획 3 수준, 학습유형 3 수준, 학습내용 2 수준 기준)

〈표 17〉 교육 영상 개발비 세부예산

(단위 : 천원)

기본 개발비								
SME 섭외	스토리보 드 작성	미디어 제작	저작물 검색, 협약	표준차시 개발	품질관리	시범운영	유지관리	소계
3,551	6,767	31,914	3,024	8,201	3,409	1,685	1,992	60,543
추가 개발비			특수요구 개발비				개발비 합계	
모바일	웹 접근성	소계	조사 분석	인력 파견	다국어	소계		
3,437	5,122	8,559	10,620	12,376	5,177	28,173	97,275	

*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참고

- 기본 개발(필수)에 교육 영상이 모바일과 웹사이트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추가 개발 항목을 추가한 금액을 산출함.

- (산출액) = (기본 개발비) + (추가 개발비) = 60,543천원 + 8,559천원 ≒ 70백만원

(5) 소화기 프로그램 운영비

- (동아리 및 소모임 지원) 50만원 × 2반기 × 244개소 = 244,000,000원

- ‘프렌드십 어워드’, ‘C.C. 게시판 운영’의 경우 기(既) 편성된 정신건강센터 사업추진비 예산 활용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의 경우 전문상담기관과의 MOU를 통해 소요 예산 절감

2) 재원 조달 방법

(1) 정신건강 증진사업 측면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예산은 약 60억 원으로 추산되며,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 시 전체 예산은 약 1,146억 원으로 증가(기존 2022년도 예산 대비 5.5% 증가)함.

-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이 34.2%('20 → '21), 18.2%('21 → '22)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신규사업 편성 시 예산 증가율 5.5%는 무리없을 것으로 예상됨.

〈표 18〉 기존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조달 규모와의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기 편성 예산		2022년 예산안(B)	증감 (B-A)	(B-A)/A	202X년도 예산안*
	2020년	2021년(A)				
정신건강 증진사업	68,500	91,900	108,600	16,700	18.2	114,555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운영	-	-	-	-	-	5,955 (순증)

*주 : 202X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제안 정책인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운영' 사업안
신규로 추가하여 작성함.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표 19〉 최근 5년간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

(단위: 억 원, %, 백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안)
예산	편성액	957	1,208	1,415	1,596	1,832
	증감률 (전년 대비)	16.4	26.2	17.1	12.8	14.8
일자리 확대 정도	대상 수	173	199	224	249	274
	일자리 증감 (전년 대비)	26	25	25	25	25

*자료 :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재구성

(2) 장애인일자리 사업 측면

-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해 2,500명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2021년 기준 약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평균 219억 원(증감률 평균 17.5%) 상승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예산(약 60억 원 규모)을 포함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함.

(3)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

〈표 2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별 수급률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체 장애인 (2017/2020)	15.0 / 19.0	16.2 / 25.8	14.4 / 14.8	1.4 / 1.8
정신장애인 (2017)	54.7	57.7	53.8	1.9

*자료 : 보건복지부

-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인 유형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매우 높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만을 기준으로 한 비용을 계산했을 때, 연간 최대 약 1.1조원 규모의 복지 지출이 발생함.

*정신장애인 인구(명) : 103,525명 (보건복지부, 2020년 12월 기준)
 · (생계급여) 103,525명 × 54.7% × 548,349원(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31,052,003,133
 · (의료급여) 103,525명 × 57.7% × 731,132원(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 43,673,384,053
 · (주거급여) 103,525명 × 53.8% × 310,000원(주거급여-서울, 1인 최저보장수준) = 17,265,899,500
 · (연간 급여) 12개월 × (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 1,103,895,440,232

- 빈곤층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최대액은 약 159만 원이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할 시 실제 이 금액보다 훨씬 낮게 지급될 가능성이 큼. 동료상담가의 실수령액은 약 152만 원으로, 센터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표 21〉 1인당 복지예산 지출 규모 비교

(단위: 원)

1인당 복지예산 지출 규모 (국비)						
빈곤층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계	보수	4대보험금
1,589,481	548,349	731,132	310,000	1,837,714	1,680,214	157,500

- 정리하자면,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의 보수 수준은 각 급여의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국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민기초생활보장으로 인한 지출 규모를 소폭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 기반으로 서 작용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소결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예산으로 약 60억 원을 산출했지만, 커리큘럼 개정 작업이 매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 증반부부터는 약 56억 원으로 사업 진행 가능.
- 정신건강 증진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 지출 규모 (국민기초생활보장제-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의 단순 차액보다 사회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기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함.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받아 2022년도 이후의 보건복지부 예산에 신규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1항 2호
·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Ⅲ. 기대효과

1.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긍정적 효과

- 서비스 제공자는 동료상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낙인 및 자기-스티그마를 감소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자는 회복 과정을 경험한 동료상담가의 도움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상담 및 사회활동을 통해 정신장애 증상이 완화되고 약물 복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파도손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시범사업 이후 17명의 동료상담가 중 재입원한 사례가 단 1회도 발생하지 않았음.

2. 정신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환경 구축

-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탈수급과 함께 경제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월급제를 통한 안정적인 근로소득 확충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킴.
-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

3. 상생자립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디딤돌 역할

-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는 지역사회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는 다른 정신장애 당사자에게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 탈시설 후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에 기여하게 됨.

IV. 제언

1. 장애인 동료상담가 자격기준 향상

- 자격기준 향상은 서비스 인력 제공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임.
- 하지만 초기 사업 단계에서 자격기준 향상은 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안정기에 다다르면 자격기준을 향상하고자 함.
- 자격기준 향상 전에 양성된 기존 상담 인력들은 추후 보수교육 제공을 통해 인력 간 편차를 해결하고자 함.
-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분기마다 현장의 동료상담가들에게 슈퍼비전과 현업지도를 제공할 예정.

2. 양성 과정 중 현장실습 실천현장 확대

- 기존 지정된 기관들 외에 현장실습 가능한 기관 확대할 예정임.
- 현장실습 실천현장 확대를 통해, 다양한 현장경험으로 동료상담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관련법 제·개정 통한 현장실습 사업비 지급 근거 마련 필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상 훈련수당 지급 가능하나, 훈련수당 지급 인정기관은 시행령, 지원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제안서 상 교육훈련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인정기관이 아니기에,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함. 따라서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시행령, 규정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실 적용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덜 소요되고 어려움도 덜할 것으로 예상됨.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직업적응훈련) 제4항,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3항 등
- 그럼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 복지 실무 현장에서 과도 해석,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해,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 규정된 직업훈련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단순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만을 개정한다고 하여 정책 취지와 목적을 달성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임.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 법률 간의 충돌, 유권해석 등으로 사업추진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하는 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법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시행령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강한 입법 의지가 필요함.

참고문헌

- 강우진, 이향연, 강동욱, 강선진 (2011).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과 정책동향 분석, 경기복지재단.
- 김민아, 이선혜, 서진환, 송영매, 김정은 (2016). 당사자 렌즈로 바라본 “나의 삶”: 정신장애인 포토보이스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0권 제2호: 105-138.
- 김상숙 (2020).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 : Parse의 연구방법 적용,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0권 제2호: 105-138.
- 김원호 (2019).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시범사업 실태분석,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0권 제2호: 105-138.
- 김한별 등 (2018). 정신건강서비스 영역 내 동료지원 활동 비교 연구 - 서울시 동료지원 사업 운영에의 함의 도출을 중심으로 -, 정신보건 제8권: 40-53.
- 서진환·이선혜 (2007). 정신분열병을 가진 사람의 환경에 대한 사회복지사 개입, 『사회복지연구』 35(10): 469-497.
- 송승연(Song Seung Yeon) (2021).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제51권 제51호: 61-92.
- 신정하, 신윤재, 이명수 (2013).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가 직업 영역 개발 연구, 정신보건 제4권: 35-46.
- 우소현 (2020). 동료지원가 활동을 통해 나타난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경험,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제17권 제1호: 40-48.
- 이가연 (2018). 정신장애인 절반 이상이 ‘생계급여 수급자’,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4>).
- 조윤화 등 (2014).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
- 제갈은주 (2021).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표준화 시범교육과정 평가,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하경희 (2014). 정신장애인 동료지지활동 프로그램이 동료지원가의 회복에 미치는 효과 - 활동유지집단과 중단집단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재활복지 제18권 제1호: 31-52.
- 한채민, 김영근 (2018). 장애동료상담을 경험한 상담자와 내담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5권 제1호: 85-107.
- 기획재정부 (2021).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2021 장애통계연보.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복귀를 위한 상생자립 일자리 지원정책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
결과	변동 없음.

2. 연구방법

계획	문헌조사와 현장 라운딩 동시 진행. 정신장애인 사회 적응과 복귀 어려움 탐색 및 현행 정신장애인 관련 제도 검토.
결과	- 코로나19로 현장 방문이 불가하여 동료상담가 당사자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세미나에 참석. - 시범사업 단계의 동료상담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연구함.

3. 정책내용

계획	①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방안 ②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운영 방안
결과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제도의 목적과 대상범위 구체화.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당사자간 지원프로그램 '피어넷(Peer-Net)' 개발. - 동료상담가와 비당사자 직원들간 전체 소통을 위한 화합 프로그램 '소.화.기.' 개발.

4. 적용방안

계획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수행 모델 등 작성.
결과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교육과정 구체화 (대면 교육, 재보수 교육 강화) - 실현 가능한 자원 조달 방법 강구 (재원편성 근거,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 고려)

5. 기대효과

계획	정신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회복 패러다임에 근거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
결과	변동 없음.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 장애인의 일상적 대중교통
이용 보장 정책

정책제안 발표자료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장애인의 일상적 대중교통 이용 보장을 위하여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 본 게시물은 한국장애인재단의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에 참여한 제안팀의 저작물로 무단 수정, 복제, 공유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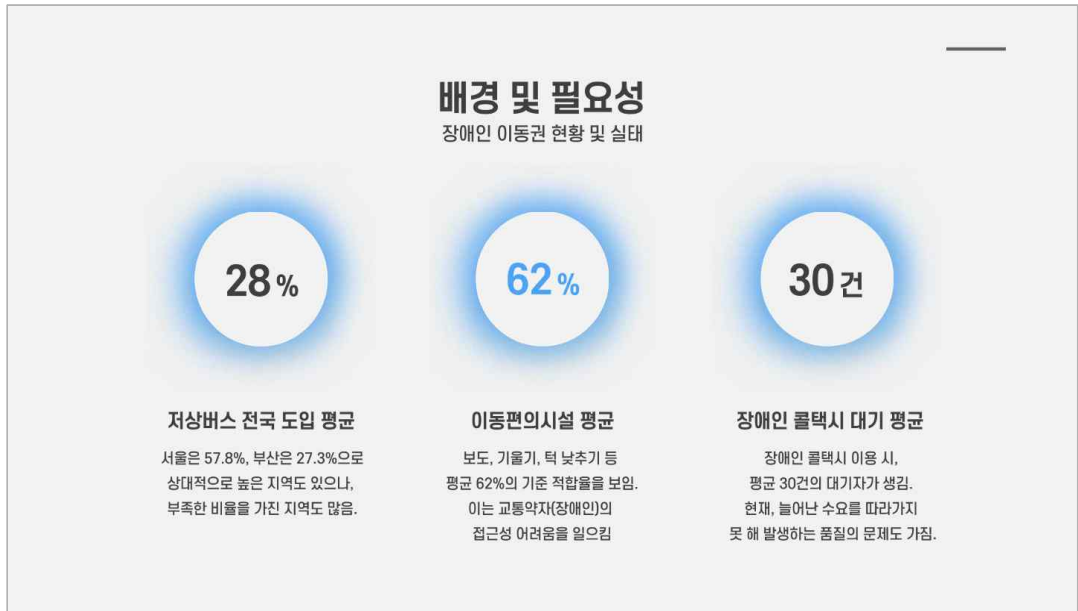
“ Contents ”

- 01 정책 제안배경 및 필요성
- 02 제안 정책 내용
- 03 적용방안
- 04 제안하는 정책
- 05 고려해야 할 사항 (부작용 발생 가능성)
- 06 재원의 조달 방법
- 07 관련 법령
- 08 기존 정책과 적합성
- 09 기대 효과

01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및 필요성
- 정책제안



“의견 청취”

정책 제안

제안 하는 정책은 '의견 청취'에 중점을 두고 있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이기에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고자 함.
지역사회 내의 지역주민(장애인, 비장애인), 전문가,
행정요원 등과 함께 진행하는 '원탁회의 정책'을 제안.

제안 정책 내용

- 정책의 구체적 대상 범위
- 실행방법

02

정책의 구체적 대상, 범위

“ 부산광역시를 범위로 두고, 부산광역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

> 원탁회의 구성원

01

지역주민

02

대중교통
전문가

03

복지 및
정책
전문가

04

시, 구청
공무원

05

자원
봉사자

실행방법

1) 모집 과정 및 사전 역할



지역주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5:5 비율로 총 30명
- 부산광역시 내 시, 구청 및 동사무소를 활용하여 모집
- 자립센터 및 장애인복지관에 공고 게시



행정 위원

- 부산광역시 내 시, 구청을 활용하여 선정
- 공문 통해 시, 구청 내 토론 장소 대관



대중교통 전문가

- 버스, 지하철,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 1365 및 VMS를 통해 모집
-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돕기도 하므로 사전 교육



복지 및 정책분야 전문가

- 부산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에 속해있는 자립센터 활용
- 부산광역시 내 장애인 권리와 관련한 의견을 펼치는 전문가와 연락

실행방법

2) 원탁회의 진행과정

*** 1회기**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되며, 앞으로의 회의 일정 및 안내, 첫 안건을 선정함.

*** 비대면**

코로나 19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경우, 화상 프로그램 중(Zoom)을 활용하여 진행함.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참여자들은 사전의 별도 교육 진행.
(웹 설치, 사용 안내, 전자기기 제공 등)

지역주민의 의견 제시

- 안건에 대해 지역주민(장애인, 비장애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함.
- 정책이나, 사소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도 있음.

전문가의 의견 제시

- 안건에 대해 전문가의 생각을 주장함.
- 지역주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으로 의견을 제시함.

수용 및 이의제기

- 자유롭게 모든 참여자가 의견을 수용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자(사회자)가 발언권을 부여함.
- 행정요원(공무원)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은 시, 구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수결 투표

-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함.
- 다음 회기 안건 선정을 위해, 참여자의 의견을 받고 다수결 투표로 결정함.

정책 제안을 위한 회의가 진행될 땐, 다수결 투표 과정이 생략될 수 있음.

실행방법

3) 원탁회의의 규칙 및 주의사항

01 원탁회의의 시간 및 진행

- 회의 시간은 약 100분을 원칙으로 함.
- 효율적 의견 전달 및 통합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었지만, 안건의 중요성이나 깊이에 따라 길어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음.
- 전반적인 회의는 제안자가 사회자가 되어 진행함.

02 정책 도출 과정

- 이 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몇 전제를 충족해야 함.
- (1) 참석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 (2) 최소 3회기 이상의 회의가 진행되어야 함.
- (3) 기존의 전문가 외에도 행정, 법과 관련된 전문가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

03 지역사회 개선점 과정

- 정책 제안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음.
- ex) 점자블록 보도 추가 설치 등
- 이와 같은 회의는 행정요원(공무원)에게 즉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1회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음.

04 사전 교육

- 회의 시간은 약 100분을 원칙으로 함.
- 효율적 의견 전달 및 통합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었지만, 안건의 중요성이나 깊이에 따라 길어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음.
- 전반적인 회의는 제안자가 사회자가 되어 진행함.

03 적용방안

적용 방안

- 부산시 대중교통(시내버스, 택시) 운전기사 인터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삼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인터뷰
- 부산시 비장애인 시민 장애인 인식 설문조사

03

03 적용방안 - 부산시 대중교통(시내버스, 택시) 운전기사 인터뷰



▲ 대중교통(시내버스) 종사자분 인터뷰

#1 부산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인터뷰

잠시라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려는 운전기사들이 많았고, 겨우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답변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음.

장애인을 승객으로 대위보았다는 질문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답변하였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부산 대중교통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며 이동하기 편리하지 않다**고 하였다.

특히 장애인 버스는 세금 낭비라며 장애인의 실생활과 맞지 않으니 **장애인 택시인 두리발이나 다른 교통수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이도 많았음. 부산시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많고 운전기사들이 중간에서 정부와 승객들의 압박을 받으니 더욱 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했음.

#2 부산시 택시 운전기사 인터뷰

최대한 모든 승객들을 동등하게 탑승시키려 하나 아직은 미신 등의 이유로 **장애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운전기사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배차간격 이유로 승하차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다 보니 장애를 지닌 승객이 비장애인 승객보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 **장애인 택시인 두리발도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임.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승객에게 **친절한 응대를 하고 승차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답변 많았음.

특히 일반 택시를 장애인 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각 택시 회사마다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변. 그런 **제약이 사라진다면 장애인 택시로 전환할 의사를 가진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남.

또한, **1인용 전기자동차가** 현재 보급되고 있는데 정책을 개선하여 저렴한 상품을 많이 생산하게 된다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답변함.



▲ 실제 두리발 인터뷰 및 탑승 모니터링

03 적용방안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터뷰



▲ 송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 인터뷰

부산시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움으로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많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로 인해 버스의 이용 시 불편한 점은 많이 관망하였다고 하였으며, 지하철을 이용 할 때, 각 역마다 엘리베이터가 한 대씩만 운영되어 불편하고 리프트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면 이동 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함.

이외에도 복지택시는 일반 택시와 비슷해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O.

시민들의 인식

- 엘리베이터 이용 시 차별 발언
- 시민들이 버트를 잘못눌러서 리프트 승강장 이용 어려움

이동권 정책

- 특별교통수단 개발
- 장애인 요금 통합
- 엘리베이터와 같은 수단 점검 시 문자로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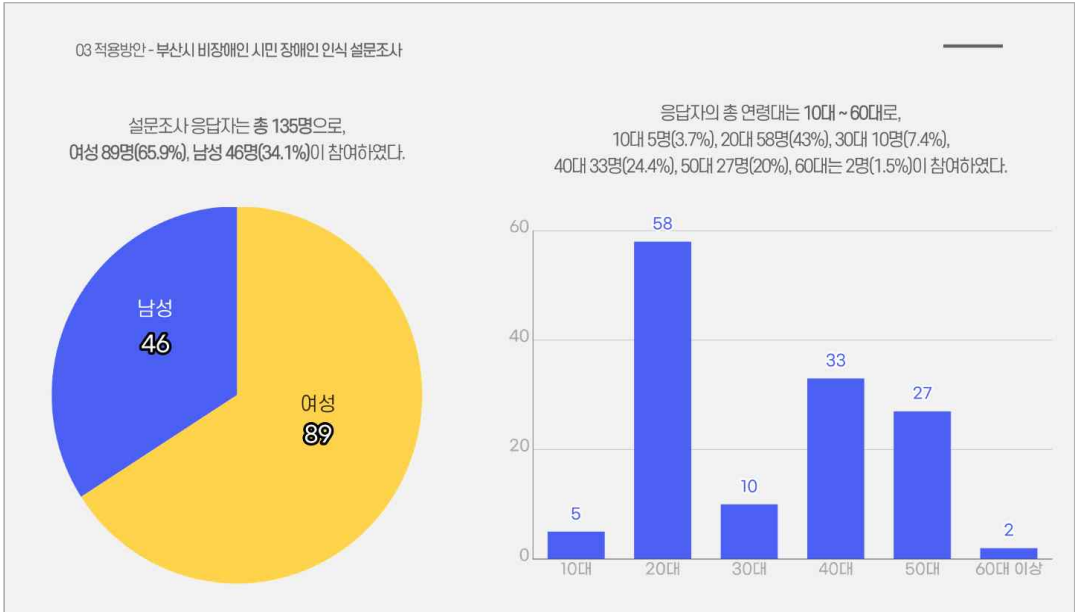
전동휠체어 이용

- 급속 충전기 사용 시 배터리 수명에 무리
- 긴급 휠체어 충전기 비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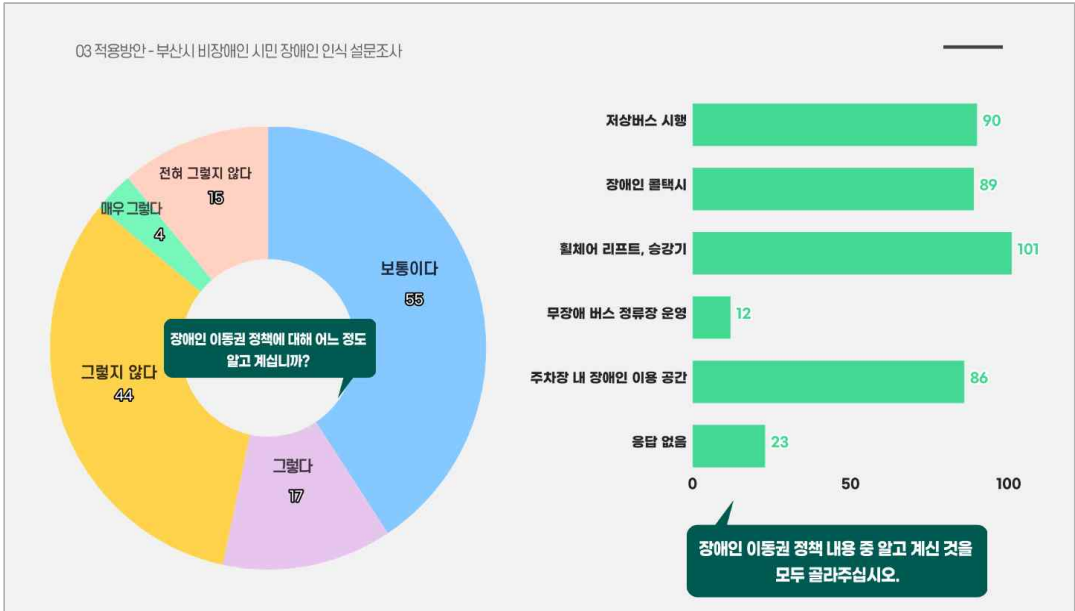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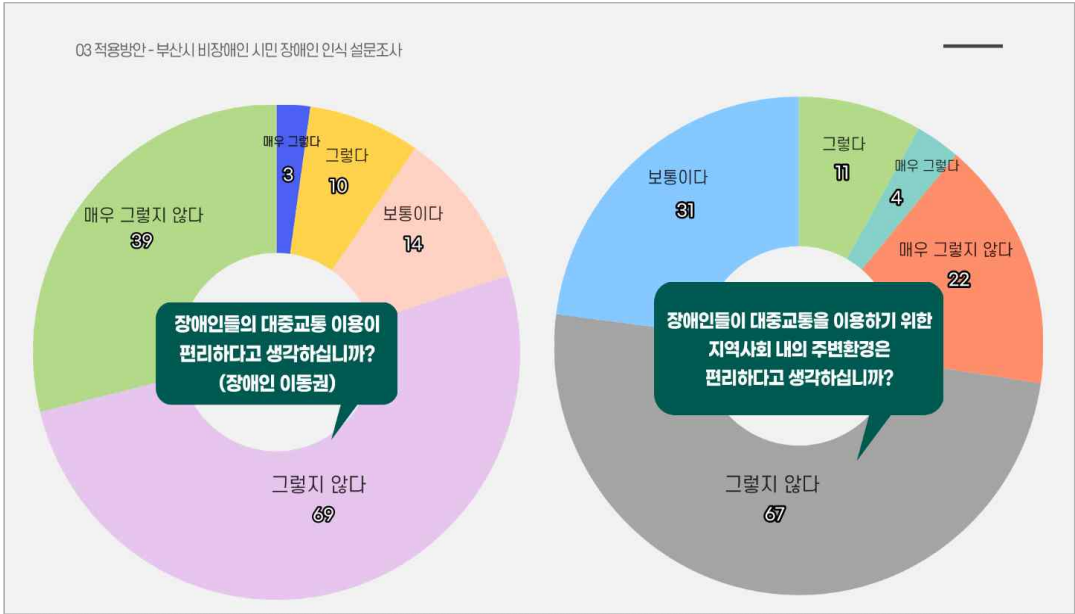
이동수단 개선

- 복지택시 인식 개선
- 부산 지역 두리발 요금 개선
- 장애인 택시 운전기사 교육 (교통사고 위험)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 장애인의 일상적 대중교통 이용 보장을 위하여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 장애인의 일상적 대중교통 이용 보장을 위하여



03 적용방안 - 부산시 비장애인 시민 장애인 인식 설문조사

Step 07

모두의 노력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서술해주시시오.

- 20대의 의견으로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되어야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30대 응답자를 또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당연시하다고 생각함.
- 40대는 정부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해 보이므로 장애인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정책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까지 필요하다고 보았다.
- 50대 의견으로는 대체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며 국민들은 그를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 60대 이상 응답자가 한 명이었으나,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말함.
- 전체 의견으로는 대체로 **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답변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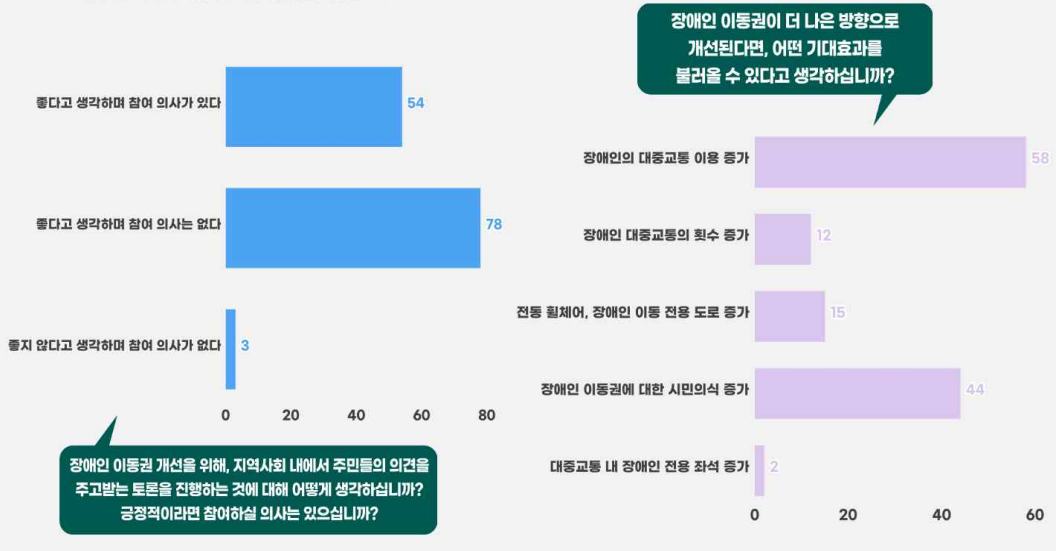
Step 08

비장애인들의 노력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비장애인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유도 함께 서술해 주십시오.

- 20대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비장애인의 노력은 당연함.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함.
- 30대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함.
- 40대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선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그에 따른 사회분위기 변화와 교육과정이 필요함.
- 50대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함. 또한, 이 연령대에는 주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 주로 언급함.
- 60대 이상 응답자는 한 분은 배려심이 중요하다고 응답, 다른 분은 어느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답변.
-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인 답변 '**비장애인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모두 노력해야한다**' 또한, **모두 같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함.

03 적용방안 - 부산시 비장애인 시민 장애인 인식 설문조사



제안하는 정책

- 장애인 콜택시(두리발)의 확대
- 기사의 인식 개선 및 근로환경 변화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민토론 정례화
- 비장애인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해와 홍보 강화

04

제안하는 정책

- 장애인 콜택시(두리발)의 확대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각 기관의 장애인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 하였을 때 공통적인 의견으로 장애인 콜택시(두리발)의 확대를 언급하였다.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의 "2021년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서"의 특별교통수단 현황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콜택시(두리발)의 운행대수는 181대이며 이용대상은 35,922명이고 하루 평균 장애인들은 대략 649회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용 대상은 운행 대수 181대에 비해 약 3.5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장애인 콜택시(두리발)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민토론 정례화

02 / 제안 정책 내용 - 실행 방법 [7 ~ 10 페이지 참고]

- 기사의 인식 개선 및 근로환경 변화

본 정책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본인들은 부산시 버스조합 기사들을 인터뷰하였다. 인식 개선 인터뷰에 대한 답변에서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았다.

기사들은 대부분 한 번도 장애인 승객을 태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 승객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지 않았다. 기사의 근로환경에는 문제가 없고 도로(가파른 인도, 비포장 인도, 저상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사 등)환경에 대한 변화 추구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기사 인식 개선 및 근로환경과 지역 환경 변화에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비장애인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해와 홍보 강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영상 매개체를 보여주거나, 지역사회 환경조사를 하면서 직접 찍은 환경 사진 등을 부산시의 각 구의 시민들에게 보여준 뒤, 장애인들의 이동 환경에 대한 주변 환경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장애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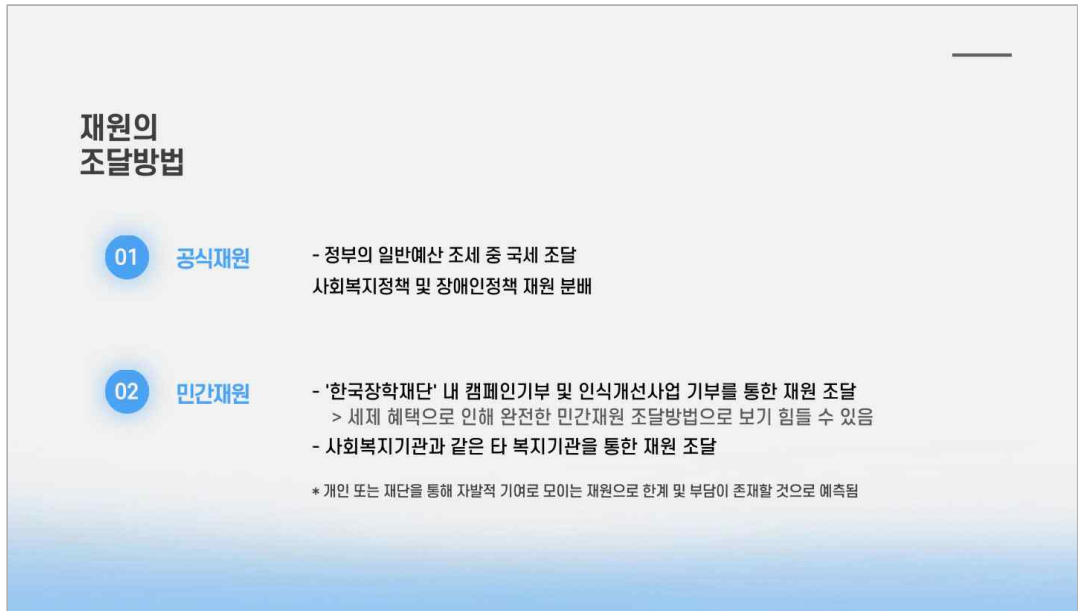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와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사항 (부작용 발생 가능성)

05

고려해야 할 사항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시민들의 비협조적 태도**
자료조사, 의견수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비협조적인 언행으로 인한 시간지체 및 부정확한 정보입수
-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활동 제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활동(원탁회의) 어려움
- **장애인 및 비장애인간의 불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으로 인한 불화 발생
- **원탁회의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
 - 정책 제안 단계에서 이루어질 전문가의 도움을 위한 인력충당 및 매 회기마다 최소 인원수 충당의 어려움
 - 원탁회의 진행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정확한 전달에 대한 문제
 -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들간에 진행되는 원탁회의 내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어려움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대중교통법)

07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5호, 2020. 12. 22.,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편의 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4월에 제정되었다.

제 6조, 9조, 10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확인)
12조, 13조, 14조, 16-2조, 25조, 26조, 보행관련법 - (18조 ~ 24조)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단법개정]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 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조와 관련된 편의 증진 보장, 대중교통과 관련된 내용은 적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에 대해서 필요시설과 편의시설에 관련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대중교통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9호, 2021. 1. 5., 일부개정]

기존 정책과의 적합성

08

“ 기존 정책과의 적합성 ”

#1 기존 정책 고찰

기존 정책과 비교 하였을 때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대중교통 정책이나 장애인 편의 서비스가 정해지는 기준은 복지 대상자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정책을 만들 때마다 비장애인들의 의견들을 취합한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가 대부분인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2 적합성

기존에 유사한 정책에서 언급되는 문제점과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또한 동시에 기존 유사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큰 문제없이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에서 유사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정책과의 적합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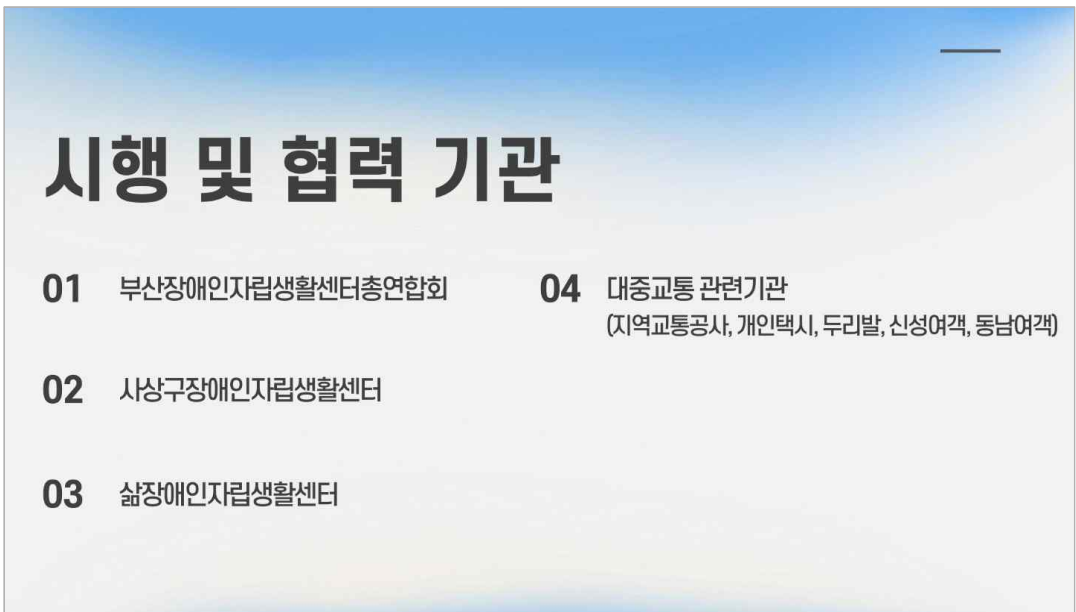


기대효과

시행 및 협력 기관

정책 기대효과 - 정책 실행시의 변화
정책 파급효과 - 장애인 이동권 정책 + a

09



시행 및 협력 기관

01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02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 삼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 대중교통 관련기관
(지역교통공사, 개인택시, 두리발, 신성여객, 동남여객)

기대효과 - 정책 실행시의 변화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기존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의 의견을 대다수로 만들어진 정책이 대부분이다.

현재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 사회 토론을 통해서 함께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특징이 기존의 정책과 큰 차별성을 두고있다.



장애인 이동권 - 모두의 관점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를 장애인, 비장애인 각자의 시선이 아니라 모두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함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토론을 통해 여러 방면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장애인 정책 관련 불만 감소

이전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정책은 장애인의 시선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형성된 정책으로 복지 대상자인 장애인의 불만과 고충이 담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비장애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초점을 맞추므로써 부정적 의견이 감소하는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정책 파급 효과 - 장애인 이동권 정책 + a

현재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장애인 이동권 지역사회 주민 토론을 통해서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형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번 목표를 통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시행 된다면 장애인 이동권뿐만 또 다른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토론을 통해서 함께 해결하고 장애인 이동권 토론 정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광범위한 분야 정책 형성에 큰 파급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장애인 정책과는 큰 차별성을 두는 지역사회 정책으로 지역사회 주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 담당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시하는 정책을 발안하였을 때 기존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점은 점차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책 형성 과정이 더욱더 발전하는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 장애인의 일상적 대중교통 이용 보장을 위하여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장애인의 일상적 대중교통 이용 보장을 위하여

Thank you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 장애인의 일상적 대중교통 이용 보장을 위하여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정책제안 발표회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 장애인의 일상적 대중교통 이용 보장 정책

제안 6팀

〈제안 개요〉

장애인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이동권의 고충과 현 정책의 문제점, 부족한 서비스 및 인식, 인권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I.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나 서비스가 정해지는 기준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많다. 장애인이 당연히 누리는 제도이자 서비스이지만, 비장애인의 의견을 취합한 장애인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시선에서 본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있다.

실제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없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그에 따르는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류장과 버스의 리프트 시설이 맞지 않아 탑승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배차 간격, 탑승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회의 시선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은 버스나 지하철이 아닌 장애인 콜택시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이동수단은 함께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점점 각자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자신의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장애의 여부를 구분 짓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1. 배경

장애인은 현재 버스, 지하철, 장애인 콜택시 등 여러 이동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첫 번째는 현재 장애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동권의 어려움에 대한 현황을 서술하겠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2020년 저상버스 도입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27.8%이다. 서울은 57.8, 부산은 27.3, 경기도는 14.1 등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도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비율을 가진 지역도 많다. 저상버스의 부족은 배차 간격으로 이어지고, 이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 비해 지방에는 저상버스 비율이 낮은 것이 큰 특징인데, 이는 서울시에서는 저상버스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를 교체할 때, 일반 버스보다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은 비용이 약 1억 원 정도 더 들기에 민간 버스 회사에서는 부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폐차 후 새로 구입 하는 버스는 저상버스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곤 있지만, 추진되고 있진 않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상버스 규정은 인센티브 규정뿐이다.

저상버스의 비율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은 존재한다. 현재 저상버스는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

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간혹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도의 턱과 저상버스의 높이가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지역사회 내의 환경의 개선도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잠시 교통수단 주제에서 벗어나, 두 번째는 이동편의시설에 관해 서술하겠다. 2013년 국토교통부의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도의 경우 보도의 유효 폭이 70.8%, 기울기는 85.3%, 턱 낮추기는 72.4%, 음향신호기 도입은 38.0% 등 평균 62.6%의 기준 적합률을 보인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적 참여와 활동의 제한을 경험하고, 교육이나 직업 기회의 불평 등 정보에서의 접근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게 되어 사회생활을 할 때 큰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이를 보면, 이동권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교통수단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행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서울시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의 인도는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면도로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진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 많으며,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한, 보도의 턱이 높은 곳이 많아 연속 보행이 힘들다. 또한 도로나 보행길이 좁고 울퉁불퉁하여 휠체어가 이동하며 바퀴가 빠지거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자전거 도로와 구분되지 않은 보도, 미관상 사라지고 있는 점자블록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이 보행하기에 취약한 지역사회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지하철 및 철도에 관해 언급하겠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가 교통약자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약자 중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자면, 우선 운임 요금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 이동수단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일반인들의 사용률이 높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에 관해 서술하겠다. 버스 및 각종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점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늘어난 수요를 차량 숫자와 서비스 품질이 따라오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택시를 호출했을 때 평균 30명 이상, 많을 땐 70명 이상의 대기자가 밀려있기도 한다. 한 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콜택시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 일찍 집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차 애플리케이션으로 콜택시를 불렀지만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차 한 대가 잡혔다. 이는 장애인 콜택시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 구비된 차량의 종류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전용인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로 나뉜다. 한 기사에 따르면 광주 장애인 콜택시 열 대 중 6대는 휠체어 전용이고, 4대는 일반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자 중 휠체어를 타는 이는 3분의 1에 불과해, 이용자의 수요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

다. 봄비는 시간대에는 이 두 차량을 통합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은 나아진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장애인 콜택시는 늘어나는 이용자의 수만큼 공급이 따라오지 않고 있으며 배차 차량 종류의 비율 또한 적절하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필요성

앞서 말한 장애인이 겪는 이동권의 문제에 관해 설명을 보충하며 필요성을 서술하겠다. 첫 번째로 언급하였던 교통수단은 ‘저상버스’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저상버스에 대한 규정은 국가와 지자체의 인센티브 규정이다. 이 인센티브만으로는 빠른 속도로 저상버스의 수가 증가하기 힘들며, 지자체마다 지원금의 액수가 차이가 남으로 모든 지역에서 동등한 이동권 보장은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예산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법과 제도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진행된다면 빠른 속도로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저상버스는 운행되더라도 높이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탑승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이는 버스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내의 구조물 및 이동 환경의 개선도 따라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보행권에 관해 언급하였다.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곳까지와 교통수단 이용 후 목적지까지의 모든 이동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보행권과 관련된 내용이며 장애인의 보행권은 이동권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비장애인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보도의 턱 높이부터 보도의 폭 규정, 포장된 보도 등 세세한 측면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도 갖도록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 번째는 지하철 및 철도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는 여러 이동수단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지만, 엘리베이터 이용 등 아직 어려움이 남아있기에 주변의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에 관해 서술하였다.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의 이용 어려움으로 장애인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에 맞추어 공급이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 이동수단은 비장애인 중 모르는 사람이 많기에 홍보도 중요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장애인 콜택시의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정책 제안

앞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이 정책은 장애인의 의견 청취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이기에 외부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주민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장애인의 사소한 의견 하나하나를 듣는 시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 지역사회 내의 보행이나 이동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그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잘 알 것이다. 즉, 우리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이동권을 위해 원탁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원탁회의 내에서 작게는 사소한 아이디어 제안부터 더 나아가 정책 제안 및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4. 정책연구 방법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동권에 관련된 어려움에 개입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현재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관하여 양적 및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대중교통 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원탁회의에서의 일반인들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대면 조사가 어려워,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도해보기 위해 장애인 및 관련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참여자 중 토론 참여를 원하는 일반인을 모집하여 비대면으로 '줌(Zoom)'을 사용하여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II. 제안 정책 내용

1.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우선, 정책을 연구한 대상이 부산광역시 내의 지역주민이었기에 추후 이 정책이 진행되게 된다면 먼저 부산광역시 내 지역주민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인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 지역주민(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중교통 관련 전문가, 관련 학과 교수님, 관련 구

청 공무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될 것이다. 정책의 범위는 시작은 부산광역시로 한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시도는 부산광역시부터일 것이나, 가능하다면 점점 넓혀가 여러 시도에서 진행 되었으면 한다.

2. 실행방법(국내외 타 사례 및 아이디어)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당 정책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나아가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탁회의를 통해 정책을 도출해낼 것이라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적·양적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예시로 들 수 있는 국내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겠다.

먼저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장애인 정책 미래 포럼 제1차 공개포럼’을 들 수 있다. 해당 포럼은 장애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정책 비전을 토론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미래 포럼 위원, 복지부 관계자, 장애인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0년 후 중장기 장애인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해 발족하였다. 장애인 권리보장 분야, 장애인 고용소득 보장 분야, 서비스·자립 분야, 장애인 건강 분야 등 미래 포럼의 정책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목표와 과제들을 제안하였고, 그 당시 정책에 대한 검토와 미래 포럼에서 제안된 중장기정책 방향을 참고하여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던 토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였던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로,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이동에 어려움을 가지는 중증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에 있어 편의성 및 접근성에 관한 실태를 밝히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중증장애인이 저상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주는 장벽 요인들과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 및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설정하는 연구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문헌 조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현지 사례조사,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등 질적 연구를 통하여 ‘저상버스’라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례 및 실제 운전원과 공무원들의 인터뷰 까지 진행하면서 저상버스 시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진행되었던 장애인 이동권 관련 국회 토론회를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국회 최초 장애 관련 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이 주최하고,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 장애인 보무 연대,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주관한 장애인의 이동, 노동, 교육 등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넘었으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 이동권을 적절하게 보장한 형태를 제도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이동지원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어떻게 규정되고 관련된 이동지원 서비스의 현황은 어떤 한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이동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적용방안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 방법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3. 적용방안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동권에 관련한 어려움을 개입하기 때문에 비단 한쪽 편에 서서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를 정책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서베이 조사와 인터뷰를 포함한 질적·양적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도출하였다.

1) 부산시 대중교통(시내버스, 택시) 운전기사 인터뷰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모두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대중교통에 대한 현황 및 이용실태, 종사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장애인 버스를 포함한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과 택시 운전기사 총 8명을 인터뷰하였다.

먼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각 버스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고 진행되었으나, 버스 운전기사들의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잠시라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려는 운전기사들이 많아 인터뷰의 어려움을 겪었다. 어렵게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답변은 대부분 긍정적이지 않았다. 장애인을 승객으로 태워보았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부산 대중교통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며 이동하기 편리하지 않다고 하였다. 특히 장애인 버스는 세금 낭비라며 장애인의 실생활과 맞지 않으니 장애인 택시인 두리발이나 다른 교통수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이도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부산시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크고 본인들은 중간에서 정부와 승객들의 압박을 받기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현 대중교통의 부정적인 측면이 재차 등장하였다. 최대한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탑승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정적 담론 등의 이유로 취객 승객을 대하듯 장애를 지닌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운전기사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리발(택시)과 버스들도 배차 간격 등을 이유로 승하차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다 보니 비장애인 승객도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한다. 장애를 지닌 승객은 비장애인 승객보다 더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장애인 택시인 두리발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이기에, 자신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승객에게 친절한 응대를 하고 승차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일반 택시를 장애인 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여 이에 대해 질문하였다. 사회적 약자 분야의 택시를 운영하면 각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한 회사가 보조금을 독점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각 택시 회사마다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 자신이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고 싶어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였고, 그런 제약이 사라진다면 장애인 택시로 전환할 의사를 가진 응답자가 과반수로 나타났다. 또한, 1인용 전기자동차가 현재 보급되고 있는데 그 자동차의 부품이 해외 수입품이다 보니 금액대가 높고 수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정부가 이에 개입하고 정책을 개선하여 저렴한 상품을 많이 생산하게 된다면 장애인의 이동권이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1〉 대중교통(시내버스) 종사자분 인터뷰, 실제 두리발 인터뷰 및 탑승 모니터링

2)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는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삶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움으로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용하면서

겪는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많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로 인해 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마다 엘리베이터가 한 대씩만 운영되어 불편하고 리프트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서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면 이동 시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복지 택시는 일반 택시와 비슷하여 두리발과 같이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애인으로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애인들은 버스 이용 시 사고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두리발이나 지하철 이용 시 다들 이러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두리발은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일반 기사가 아닌 교육을 받은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턴을 하거나 차량이 급하게 돌아간 경우도 있으며, 차선 위반, 속도 위반 등의 위법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두리발 내에 휠체어 안전벨트가 있으나 체계적이지 않고, 차량 내 흔들림 때문에 안전상과 생명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하철은 연산역, 자갈치역 등 특정 정류장은 지하철과 하차 구역 거리가 멀어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또한 지하철 차내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기체가 지하철 양쪽 끝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부분 외에도 시민들의 시선이나 태도에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노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손수레를 왜 끌고 오냐”, “무거운 걸 왜 끌고 오냐” 등 차별 발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영, 덕천 등 환승구간에서 비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사용하며, 장애인이 이용하는 리프트 승강장을 어르신들이 잘못 누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부산시 장애인 이동지원 정책에 관해 물어봤을 때, 장애인 택시와 같이 복지 택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복지 택시는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두리발 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는데, 두리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장애인 택시의 기본요금이 타지역은 대략 1,5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나, 부산은 1,800원으로 조금 더 비싸며 시행되는 차량의 수가 장애인 인구수에 비해 적다 보니 택시 호출을 해도 1시간에서 4시간가량 걸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두리발 택시가 있어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이동이 편리하고 지하철도 비교적 편리한 편이지만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수정한다면 지금보다 편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냐는 물음에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에 있어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이 더 발전되고 안전에 더 주의를 필요로 하며 요금

통합을 언급하였다. 지하철 관련 문제점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리 수단이 점검 시 문자로 통지해 준다면 보다 이동이 편리할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전동휠체어 사용 시 갑작스럽게 배터리가 다 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두리발을 호출하거나 지하철 내 배치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급속 충전기는 배터리 수명에 무리를 주며 심할 경우 방전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런 경우 시민들에게 안전한 곳까지 이동을 부탁하거나 119를 부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며 이러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주변에 충전기 여부를 알 방법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장애인 및 관련 종사자와 정기적으로 원탁회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참여 의사 여부를 물었을 때, 설문에 참여한 모든 장애인이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 인터뷰

3) 부산시 시민 장애인 인식 설문조사

원래 처음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던 과정에서는 직접 부산시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양적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네이버 폼’을 이용한 비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1월 8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나이 및 연령대, 성별,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 및 주변 환경, 정책 등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까지 조사하였다. 이 양적 조사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탁회의의 지역사회 주민들 중 비장애인에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부산광역시 비장애인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가정하였다. 비장애인들의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어 서술하겠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총 135명으로, 여성이 89명(65.9%), 남성이 46명(34.1%)이 참여하였다.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총 연령대는 10대 ~ 60대로, 10대 5명(3.7%), 20대 58명(43%), 30대 10명(7.4%), 40대 33명(24.4%), 50대 27명(20%), 60대는 2명(1.5%)이 분포되어있었고 20대가 가장 많이 설문조사를 참여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3) 평소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모두에게 “평소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렇지 않다.” 항목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로 나누어 보자면 10대 응답자에서는 평소에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과 반대로 ‘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대는 모든 연령대에서 “그렇지 않다.” 항목을 제일 많이 선택한 연령대(28.12%)로 과반수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30대 또한 10명 중 3명은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10명중 5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다. 40대, 50대도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보였고 마지막으로 60대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로 나뉘었다.

(4)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이동권)

응답자 모두에게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렇지 않다.” 항목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로 나누어 보자면 10대들은 대부분 평소에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20대들은 69표 중 과반수 31명(21.39%)이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30대, 40대, 50대 또한 20대와 같이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60대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 의견과 “그렇다” 의견으로 나뉘었다.

(5)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의 주변 환경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모두에게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의 주변 환경은 편리하다

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항목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로 보자면 10대는 대부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다고 생각하였으며, 20대는 58명 중 27명 (46%) 정도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며, 30대 또한 10명 중 6명은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였다. 40대, 50대, 60대도 마찬가지로 과반수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6) 장애인 이동권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응답자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대부분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순서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 조금은 알고는 있으나 그렇게 많이는 알지 못하는 것을 위 6번 문항에서 알 수 있었다.

(6)-1. 장애인 이동권 정책 내용 중 알고 계신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응답자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정책 내용 중 알고 계신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하였을 때, “지하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승강기(56.2%)”, “저상버스 시행(49.6%)”, “장애인 콜택시(48.1%)”, “주차장 내 장애인 이용 공간(49%)”, “무장애 버스 정류장 운영(7.4%)” 순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지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전체 의견으로는 대체로 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그 중 20대의 의견으로는 정부와 국민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되어야 제대로 된 시행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눈에 띄는 의견으로는 비장애인의 시선으로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힘들므로, 장애인의 시선에서 이동권 개선에 대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했다.

30대 응답자들 또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당연시하다고 생각하였고 주로 장애인의 실제 대중교통 현황에 대해 주장하는 답변이 많았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이용할 때 예약을 잡는 데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이들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아서 정부가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선하고 두리발 이용의 확대 및 지하철 휠체어 전용탑승칸 개설, 저상버스 의무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국민의 인식 개선이 아동기부터 이어져야 하며 배려는 선택의 문제인데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모든 이동권을 이용하여 우선 탑승을 하는 등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40대는 대체로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이동에 대한 응답자가 많았다. 정부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해 보이므로 장애인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정책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까지 필요하다고 보았다. 버스기사의 배려도 필요해 보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빠른 문화를 융화시켜 버스 승하차 시 버스 기사 및 승객이 여유있게 기다려주는 배려 등 인식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이한 점은 장애인의 이동으로 인한 비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50대 의견으로는 대체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며 국민들은 그를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의 홍보를 하며, 국민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여 장애인 이동수단 두리발의 활성화를 원하는 응답자도 소수 존재했다.

60대 응답자가 한 명이었기에 모두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었지만,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말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인식 수준과 생각을 파악할 수 있었다.

(8)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비장애인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유도 함께 서술해주시요.

모든 응답자가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비장애인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20대에서는 '권리'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장애인이 이동권 개선을 하기 위해 비장애인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고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0대는 주로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40대는 '인식개선'에 대해 주장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동권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선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에 따른 사회 분위기 변화와 교육과정을 주장하였다. 50대

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많이 주장하며 사회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 연령대에는 주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수가 많지 않아, 한 분은 배려심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다른 분은 어느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은 '비장애인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모두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두 같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9)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이라면 참여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본 설문조사를 참가한 사람 중 '좋다고 생각하며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4명(40%)중 20대 여성이 13명(97.%)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좋다고 생각하며 참여 의사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8명(57.8%)으로 20대 여성이 32명(23.8%)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2.2%)로 나타난다.

(10) 장애인 이동권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어떤 기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총 58명(43%)이었으며, 장애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콜택시)의 횟수 증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총 12명(8.9%)이 응답하였고, 전동 휠체어 및 장애인 이동 전용 도로 증가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15명(11.1%)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민의식(ex. 안내견 감소 등) 증가에 44명(32.6%)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중교통 내 장애인 전용 좌석 증가는 4명(3%)이 응답을 하였고, 기타로 의견을 남겨놓은 사람은 2명(1.5%)이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시 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었으며, 원탁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의지 역시 총 응답자 중 절반 이하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원탁회의

우리가 진행하는 정책은 원탁회의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토론의 진행방식과 같으며,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도해보기 위하여 토론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원탁회의의 모집 방안과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이어 서술하도록 하겠다.

(1) 모집 과정

원탁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지역사회 주민 및 구성원들이 필요하다. 이때 이 지역 주민은 부산광역시 내 각 구의 한 명 이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며 그들의 비율이 5:5로 분포될 수 있도록 하여 총 30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부산시 내 대중교통 관련 전문가를 약 3~4명 모집하고, 사회복지 및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수와 사회복지사를 약 4명 배분한다. 또한, 부산시 관련 행정위원(공무원)을 2명 배치하고 원탁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돕고 평소에 장애인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5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며, 마지막으로 제안자인 우리 5명을 이 정책 참여자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참여자를 모집할 때 먼저 지역사회 주민들은 부산광역시 내 시·구청·동사무소를 활용하여 모집할 것이다. 평소 장애인 정책 및 복지,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이 많았거나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연령·성별 무관 지역사회 주민들을 우선시하며, 만약 예상만큼 참여자가 모이지 않았거나 참여도가 저조할 시 앞서 조사하였던 장애인 이동권 개선 설문조사에 원탁회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다양한 구에 거주하는 참여자로 구성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을 모집할 때는 최대한 각 구의 거주 중인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시 내 자립센터 및 장애인 복지관 등에 공고를 붙여 최대한 자율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을 진행한다. 여기서 외부신체 기능 및 내부기관의 장애를 지닌 신체장애인이 참여할 경우 장애인 택시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을 준비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참여자를 지원하며, 지체 장애 및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이 참여할 경우에는 활동 보조인이 대동하여 참여하는 것과 컨디션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전문가를 모집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 대상 인터뷰를 진행할 당시 도움을 주었던 부산 장애인 자립센터 총연합회에 속해있는 자립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을 섭외할 것이며, 부산 내 장애인 이동권에 의견을 펼치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수진들을 직접 메일 등을 통한 연락망을 활용하여 모집할 수 있다.

공문 및 문의를 통하여 구청 내 대강당 혹은 장소를 대관할 수 있다고 응한 부산시 내 행정위원(공무원)을 선정하며 참여자들을 장소로 안내하고 토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령·성별 무관 자원봉사자를 1365 및 VMS를 통해 모집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주민들이

활동 보조인과 함께 참석하기 어렵다면 자원봉사자가 이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미리 제안자가 사전교육 2회 이상 진행하여 진행이 매끄러울 수 있게끔 할 것이다.

(2) 실행방법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제정하려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대상자들과 함께 원탁회의를 진행한다. 제안자들은 관련 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사전에 연락을 넣어 장소를 대여한다.

원탁회의를 실행할 때는, 제안자가 진행을 하며 토론을 이끌어간다. 첫 회기의 토론은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첫 번째 안건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회기의 토론은 토론을 마무리 짓고 다수결 투표를 통해 안건을 채택한다.

토론 시간은 약 100분이다.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지만, 효율적인 의견 전달과 수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하게 되었다. 회의 안건의 중요성이나 깊이에 따라 연장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첫 번째로 토론은 진행된다. 여러 구에서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안건과 관련된 문제가 자신의 구 내에 있다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개선했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 나눌 수 있다. 의견 주장 후, 전문가 집단은 그 제안에 대한 반론을 시작한다. 제안한 방법에 대한 추진 가능성, 필요성 등 또 다른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주장 및 반론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의견을 두고 모든 참여자는 찬성과 반대로 다수결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찬성의 수가 많을 시, 이 안건은 원탁회의에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안건에 대해 동사무소나 시, 구청의 즉각적인 의견 제출이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과 같은 1회기의 토론 내에 결정되는 안건의 경우 종료하고 안건을 실행에 옮긴다. 그러나, 추가적인 세부적인 추진 계획 및 진행에 대해 의견을 나눠야 할 경우, 다음 토론 회기에 다룰 수 있게 된다.

이 토론은 정책을 제안, 도출하는 것은 목적 중 하나이기에, 해당 회의의 안건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로, 참석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최소 3회기 이상의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책 제안이라는 것의 무게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최소 3회기라는 제한을 두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토론의 주기는 1달에 1번이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이라는 안건을 두고 진행하는 토론에서는 기존의 전

문가 외에도 행정, 법과 관련된 전문가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만 한다. 이는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토도 진행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사회 내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탁회의도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의 점자블록이 사라진 보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토론 과정에서 참여하는 행정위원(공무원)에게 즉각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이동권 개선의 토론토는 1회로도 제안이 가능하기에, 앞서 언급한 정책 제안, 도출과 같은 제한을 두진 않는다.

지금까지 서술한 방식은 비대면 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이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줌(Zoom)과 같은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다. 디지털 사용의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전 교육을 제공한다.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 앱 설치 및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지한다. 기기가 없는 경우 동사무소나 구청의 자원을 활용하여 태블릿 pc 대여 및 인터넷 설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토론토는 디지털 접근이 쉬운 대상자들도 진행하는 방법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에 사전에 안건 및 토론 진행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토론 참여자, 안건, 진행과정 등 세세한 안내를 문자를 통해 제공할 것이며, 앞서 말한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는 사전 교육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4. 제안하는 정책

1) 장애인 콜택시(두리발)의 운영체제 확대

-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각 기관의 장애인들에게“무엇이 제일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 하였을 때 공통적인 의견으로 장애인 콜택시(두리발)의 확대를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의「2021년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시행계획서」중 특별교통수단 현황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콜택시(두리발)의 운행 대수는 181대이며 이용 대상은 35,922명이고 하루 평균 장애인들은 대략 649회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용 대상은 운행 대수 181대에 비해 약 3.5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두리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기사의 인식 개선 및 근로환경 변화

- 본 정책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본인들은 부산시 버스조합 기사들을 인터뷰하였다. 인식 개선 인터뷰에 대한 답변에서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았다. 기사들은 대부분 한 번

도 장애인 승객을 태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 승객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지 않았다. 기사의 근로환경에는 문제가 없었고 도로(가파른 인도, 비포장 인도, 저상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사 등) 환경에 대한 변화 추구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기사 인식 개선 및 근로환경과 지역 환경 변화에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민토론 정례화

- 3. 적용방안: “4)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원탁회의” 참고

4) 비장애인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해와 홍보 강화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영상 매개체를 보여주거나, 지역사회 환경조사를 하면서 직접 찍은 환경 사진 등을 부산시의 각 구의 시민들에게 보여준 뒤, 장애인들의 이동 반경에 대한 주변 환경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장애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와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고려해야 할 사항(부작용 발생 가능성)

실제로 정책을 설립하고자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토대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겠다.

지역사회 내 주민들과의 토론을 진행하기 전, 앞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그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중 부산시 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본인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책임 회피로 인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시간이 지체되는 불편함을 겪었으며 결국은 원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큰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자료조사가 진행되었었다. 또한, 현재 제시한 정책에 맞추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중교통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을 통하였으나, 특히 비장애인의 의견을 얻는 과정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제대로 된 응답을 해주지 않는 등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시작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이후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토론을 모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진

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에 진행자로서 제안자인 우리들이 함께 진행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면으로 진행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높은 연령대는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이러한 정책에 정말 관심이 있고 관련성이 있는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정기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일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불참을 하게 될 경우, 정기적인 인원 충당에 있어 다른 제시 방안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원탁회의를 진행하면서 일반인들을 모집하게 될 경우, 그들의 의견을 과연 지역사회 주민의 대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점도 가져보아야 할 것이며, 원탁회의 진행 과정에서 정책 제안 단계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인력과 자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정기적인 원탁회의 때마다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원탁회의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 제대로 된 전달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방면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주의를 가하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가적인 방안이 제시되거나 정책이 조정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다.

6. 재원의 조달방법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해올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아직 정책의 기반을 다지며 의무화가 되지 않는 이상 정부로서의 많은 지원을 바라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통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우선 민간재원을 알아보자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진행하는 캠페인기부와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기부를 통해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올 수 있으니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것이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캠페인이 종료될 경우, 활동에 대한 자세한 후기를 볼 수 있어, 보다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깃는 정기적인 기부도 포함하고 있어 재원 충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세제 혜택과 카드와 정기 우편물 발송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캠페인이 아닌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1, 2회로 끝나는 단기적인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재화를 충당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다른 민간기관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해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자발적 기여에도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을 혜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순수한 민간 부분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공공재원에는 정부의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중에서 국세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국세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회보장 등에 사용하게 되는 재원으로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달을 받아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정책이나 장애인 정책으로 분배되는 재원을 분배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부문에 있어 지역마다 이용되고 있는 예산이 달라 이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의 재원을 비교해보았을 때 민간재원은 아무래도 개인이나 재단을 통해 자발적인 기여로 모이는 재원이다 보니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가장 좋은 재원은 공공재원을 조달받는 것인데, 이는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조달받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7. 관련 법령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5호, 2020. 12. 22.,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편의 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4월에 제정되었다.

제 6조, 9조, 10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확인) 12조, 13조, 14조, 16-2조, 25조, 26조, 보행관련법 - (18조 ~ 24조)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 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조와 관련된 편의 증진 보장, 대중교통과 관련된 내용은 적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에 대해서 필요시설과 편의시설에 관련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대중교통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9호, 2021. 1. 5., 일부개정]

8.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기존 정책과 비교를 하였을 때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의 제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대중교통 정책이나 장애인 편의 서비스가 정해지는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장애인에게 필요하고, 장애인이 누려야 할 정책이자 서비스인데 이러한 정책을 만들 때마다 항상 장애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의 의견들을 취합한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정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과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기존에 나와 있는 장애인 정책의 허점을 나타낼 수 있는 점에서 기존 정책을 비교 하나 큰 문제 없이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정합성이 괜찮다고 느낀다.

III. 기대 효과

1. 정책 실행시의 변화

지금까지 설명한 지역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 정책 만들기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변화로는 첫 번째로 장애인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장애인 정책 형성 과정 중 정책에 관한 의견은 대부분 비장애인 의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장애인의 의견은 소수 장애인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오는 정책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큰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 사회의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점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함께 문제점을 발견한다. 함께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토론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특징을 통해 기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점과 달리 장애인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전 할 수 있게끔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장애인 정책과 차별성을 두고, 장애인 정책의 복지 대상자인 장애인의 불만과 불편한 점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10월 22일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울역 구간에서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고 알렸다. 2021년 10월 22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이동권에 보장을 구하는 목적으로

승하차 시위를 한 것으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6월 4일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했다”며 기존에 약속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결과와 의지를 볼 수 없어 시위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보면서 장애인들의 시위는 단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와 고충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기존의 비장애인들의 의견으로만 이루어진 정책과 차별성을 두고 있고, 장애인의 목소리와 장애인이 직접 말하는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을 만드는 형성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불만과 불편한 점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장애인이 장애인 정책을 바라볼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관점이 줄어드는 변화를 말할 수 있다.

2. 기대 효과

1) 모두의 관점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 비장애인 주민이 함께하는 장애인 이동권 정책 만들기는 장애인 이동권 주제로 지역사회 토론회를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의 관점을 토대로 정책이 형성되기에 여러 관점에서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이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서 각자가 바라본 문제점뿐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2) 기존 장애인 정책 문제점 해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장애인 정책은 비장애인의 의견으로 이루어진 정책으로 인하여 복지 대상자인 장애인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탐색하고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기존 정책에 대해서 장애인이 생각했던 불만과 부정적인 의견이 아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3) 장애인 이동권 정책 + a

현재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토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 이동권 지역사회 주민토론을 통해서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을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심오한 문제점과 장애인 정책이 아닌 또 다른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나가면서 공평한 지역사회, 또 다른 공평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3. 파급 효과

현재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장애인 정책과 달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주민 토론을 통해서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고 지역사회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기존의 지역사회 주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 담당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주민 토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장애인, 비장애인 주민의 실제 경험담과 각자 자신의 관점을 통해서 토론하고 토론을 통해서 나온 여러 의견으로 정책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와 의견은 또 다른 장애인 복지 정책에도 큰 파급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형성 과정으로 정책을 발안하였을 때 기존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점차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도시철도 교통약자에게 만족도 가장 높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328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2019,
- 김철관, 「2020년 약자의 눈으로 바라본 '장애인 이동권」, 『인천뉴스』,
2020.08.16.,<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71>
- 김태성(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 민소운, 장애인콜택시 직접 불러보니...기다림 '하세월', KBS NEWS, 2021-08-3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7609&ref=A>
- 정영득(2016),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 지혜롬, '대중'교통에 장애인은 없나?...휠체어엔 너무 높은 저상버스 [이슈 탕탕탕], TBS 뉴스,
2 0 2 1 - 0 9 - 1 7 .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48461&seq_800=20441038
- 보건복지부, 장애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정책 비전을 토론, 2016.05.2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1690&SEARCHKEY=TITLE&SEARCHVALUE=%EC%9E%A5%EC%95%A0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결과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 장애인의 일상적 대중교통 이용 보장을 위하여 -

2. 연구방법

계획	자문교수와의 1,2차 회의를 통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 및 지역주민 및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으로 초점을 둠
결과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동권에 관련된 어려움에 개입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현재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관하여 양적 및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대중교통 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원탁회의에서의 일반인들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대면 조사가 어려워,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도해보기 위해 장애인 및 관련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참여자 중 토론 참여를 원하는 일반인을 모집하여 비대면으로 '줌(Zoom)'을 사용하여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3. 정책내용

계획	대중교통 종사자 8인, 장애인 8인의 각각의 인터뷰, 사진 등을 통해 나온 결과 및 문제점 제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토론
결과	최종 제안서에 대중교통 종사자 8인, 장애인 8인의 각각의 인터뷰, 사진 등을 통해 나온 결과 및 문제점 제기하였고 또한 최종 제안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원탁회의에 대한 모집 방안과 진행방식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4. 적용방안

계획	대중교통 종사자 8인 장애인 8인의 인터뷰와 부산시 내 지역사회 중 장애인 인구가 많은 구를 선정하여 그 안에서 장애인 시설과 자립센터의 비중이 큰 읍,면,동을 선정한다. 장애인 센터나 기관에서 장애인 소수 인원을 뽑고 비장애인 중에서는 장애인 정책이나 서비스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비장애인 소수 인원 마지막으로 일반시민 소수 인원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문제점 또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토론
결과	대중교통 종사자 8인 장애인 8인의 인터뷰와 네이버 폼을 이용한 135명의 부산시 시민의 장애인 인식 설문조사를 해보았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동권에 관련한 어려움을 개입하기 때문에 비단 한쪽 편에 서서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를 정책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서베이 조사와 인터뷰를 포함한 질적·양적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도출하였다.

5. 기대효과

계획	지역 주민들이 막연히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개선을 하는 것보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의 시각으로 토론하기에 장애인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음. 또한 지역을 잘 알기에, 일상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지역의 문제들을 더욱 공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식 개선 및 더 나아가 장애인의 어려움을 제안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줌 장애인도 지역사회 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쉽게 토로할 수 있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해결해나갈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게 지지체계가 될 수 있음.
결과	현재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토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 이동권 지역사회 주민토론을 통해서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을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심오한 문제점과 장애인 정책이 아닌 또 다른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나가면서 공평한 지역사회, 또 다른 공평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